2025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매뉴얼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보건복지부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ONTENTS

PART 01

성과관리 총괄

제1장. 연구성과 관리 개요 ····· 1

1. 성과 정의 및 유형 ····· 1
2. 조사항목 ····· 2
3. 성과 수집·검증 ····· 5
4. 성과 등록방법 ····· 6

제2장. 성과조사·분석 ····· 11

1. 성과조사·분석 개요 ····· 11
2. 보건의료 R&D 조사·분석 ····· 12
3. 보건의료 R&D 성과활용조사 ····· 14
4. 성과(성과활용보고) 등록방법 ····· 16

PART 02

성과관리 매뉴얼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 23

제1절 논문 ····· 23

1. 주요 확인사항 ····· 23
2. 성과 증빙자료 ····· 25
3. 검증절차 ····· 30
4. 등록방법 ····· 33

제2절 지식재산권(특허) ····· 35

1. 주요 확인사항 ····· 35
2. 성과 증빙자료 ····· 38
3. 검증절차 ····· 49
4. 등록방법 ····· 54

제3절 지식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프로그램 등) ····· 56

1. 주요 확인사항 ····· 56
2. 성과 증빙자료 ····· 57
3. 검증절차 ····· 58
4. 등록방법 ····· 60

제4절 사업화현황 ····· 63

1. 주요 확인사항 ····· 63
2. 성과 증빙자료 ····· 65
3. 검증절차 ····· 68
4. 등록방법 ····· 70

CONTENTS

제5절 매출실적 ····· 76
1. 주요 확인사항 ····· 76
2. 성과 증빙자료 ····· 77
3. 검증절차 ····· 79
4. 등록방법 ····· 81

제6절 기술실시(이전) ····· 82
1. 주요 확인사항 ····· 82
2. 성과 증빙자료 ····· 83
3. 검증절차 ····· 85
4. 등록방법 ····· 87

제7절 시험제품 제작 ····· 88
1. 주요 확인사항 ····· 88
2. 성과 증빙자료 ····· 89
3. 검증절차 ····· 90
4. 등록방법 ····· 92

제8절 고용창출 ····· 93
1. 주요 확인사항 ····· 93
2. 성과 증빙자료 ····· 94
3. 검증절차 ····· 95
4. 등록방법 ····· 97

제9절 교육훈련/연수/교류 ····· 98
1. 주요 확인사항 ····· 98
2. 성과 증빙자료 ····· 99
3. 검증절차 ····· 100
4. 등록방법 ····· 102

제10절 인력양성 ····· 103
1. 주요 확인사항 ····· 103
2. 성과 증빙자료 ····· 104
3. 검증절차 ····· 106
4. 등록방법 ····· 108

제2장. 보건의료 고유성과 ····· 110

제1절 품목신고/인증/허가 ····· 110
1. 주요 확인사항 ····· 110
2. 성과 증빙자료 ····· 111
3. 검증절차 ····· 113

CONTENTS

제2절 임상시험 ····· 115
1. 주요 확인사항 ····· 115
2. 성과 증빙자료 ····· 119
3. 검증절차 ····· 121

제3절 진료지침개발 ····· 123
1. 주요 확인사항 ····· 123
2. 성과 증빙자료 ····· 124
3. 검증절차 ····· 125

제4절 신의료기술개발 ····· 127
1. 주요 확인사항 ····· 127
2. 성과 증빙자료 ····· 128
3. 검증절차 ····· 129

제3장. 기타성과 ····· 131

제1절 생명자원(생물자원/생명정보) ····· 131
1. 주요 확인사항 ····· 131
2. 성과 증빙자료 ····· 132
3. 검증절차 ····· 134

제2절 화합물 ····· 136
1. 주요 확인사항 ····· 136
2. 성과 증빙자료 ····· 137
3. 검증절차 ····· 138

제3절 저작권(소프트웨어) ····· 140
1. 주요 확인사항 ····· 140
2. 성과 증빙자료 ····· 141
3. 검증절차 ····· 142

부록

1. 주요국 특허번호 체계 ····· 1
2. 개인명의 특허 성과 사후 조치 ····· 4
3.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의 포기 ····· 6
4.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9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PART 01

성과관리 총괄

제1장. 연구성과 관리 개요

제2장. 성과조사·분석

제1장. 연구성과 관리 개요

1. 성과 정의 및 유형

▌연구성과 정의

-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이 외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로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문적 의미로는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가 있는 지식' 등으로 정의되고 있음(Cohen & Levinthal, 1989)

▌연구성과의 유형

- 연구성과는 일반적으로 단기·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차적 성과와 장기·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차적 성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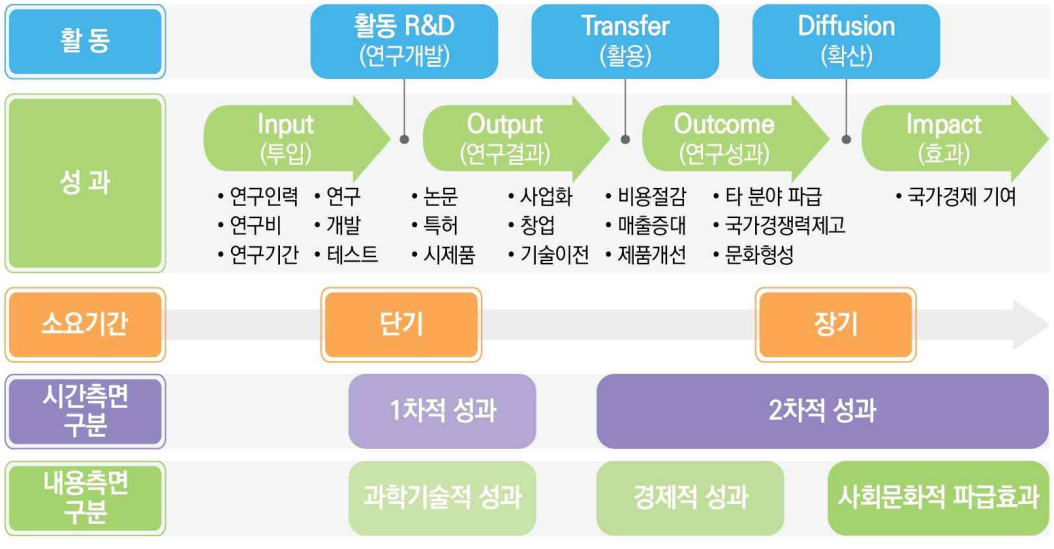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관리 유형

2. 조사항목

▌보건의료 R&D 주요 조사항목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국가 R&D 성과, 등록·기탁 성과, 보건복지부 고유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조사 항목 및 기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Dream)에서 IRIS로 이관된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보건의료 R&D 주요 성과조사 항목▐

구분	성과항목		주요 조사내용
	SIMS	IRIS	
국가 R&D 성과 항목	논문	논문	• 국내/외 SCI/비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지식재산권(특허)	• 국내/외 출원/등록된 특허
	기술료	기술실시(이전)	• (기타기술료)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기술료 징수액 • (정부납부기술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원으로 개발된 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사업화	시험제품 제작	• 제품 출시 및 제품 성능 검증을 위한 시제품 개발 성과
		사업화현황	• 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등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발생한 당해연도 발생매출액 및 생산비용 절감액
		매출실적	
		비용절감	
	인력양성	전문연구인력양성(학위배출)	• 연구참여인력의 박사/석사/학사 학위 취득 성과
	연수지원	교육훈련/연수/교류	• 학술연수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지원된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등록·기탁 성과 항목	생명자원(생물자원/생명정보)		•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생명정보 데이터
	화합물		• 유기합성 또는 조합화학 방법으로 합성된 분자량 1,000 이하의 화합물 및 단일 성분 천연물
	기술요약		• 연차보고, 단계보고,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보고서원문		•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원문
	신품종		• 생물자원 중 국내/외 출원/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 안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 등록 관련 정보
	표준화(국내/국제표준)		• 성문표준/측정표준/참조표준 등 표준화기구를 통해 공식 채택된 표준 정보
	연구시설장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보건복지부 고유성과 항목	품목신고/인증/허가		• 국내외 제조품목(의료기기, 의약품 등) 관련 신고/인증/허가 성과
	임상시험		•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는 IND 및 IDE 성과
	비임상시험		•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시험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진료지침개발		• 해당 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된 진료지침 개발 또는 기존 진료지침 개정 성과
	신의료기술개발		•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증받은 의료기술

▌보건의료 R&D 주요 성과 이관 정보(HTDream→IRIS)▐

HTDream		
성과항목		
논문	국외	SCIE
		비SCIE
	국내	SCIE
		비SCIE
생명연구자원 기탁	임상연구자원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자원	
	생명자원 실물	
화합물		
특허	해외	출원
		등록
	국내	출원
		등록
소프트웨어		
국제학술회의개최		
학술대회	국내	구두
		포스터
	국외	구두
		포스터
지식재산권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상품화출시	
사업화		
기술이전	국외	
	국내	
신규고용창출		
기술무역성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고용창출	
학술 및 기술 연수지원	장기	
	단기	
인력	학사	
	석사	

➔

IRIS				
성과유형		성과항목		
등록·기탁	과학적 성과	논문	국외	SCIE
				비SCIE
			국내	SCIE
				비SCIE
		생명자원(생물자원·생명정보)/화합물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해외	출원
				등록
			국내	출원
				등록
		저작권(소프트웨어)		
특성 반영	과학적 성과	학술대회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프로그램 등)		
	경제적 성과	시험제품 제작		
		사업화현황 & 매출실적		
		기술실시(이전)		
		고용창출 / 고용효과		
		기술무역		
		경제적파급효과		
	사회적 성과	교육훈련/연수/교류		
		전문연구인력양성 (학위배출)		

HTDream	
성과항목	
	박사
	기타
산업기술인력양성	
인력교류	외국연구자 유치
	해외파견
국제협력기반	MOU
	수요조사
	공동연구
	기타
품목승인	신고
	허가
	인증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신의료기술개발
	기존의료기술개발
공정개발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IRIS		
성과유형		성과항목
		산업기술인력양성
		교육훈련/연수/교류
		국제화협력성과
	기술적 성과	기술 및 제품인증
고유성과	기술적 성과	품목신고/인증/허가(의료기기)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경제적 성과	제품 및 공정
*사후관리	기술료-기술실시결과	정부납부기술료

3. 성과 수집·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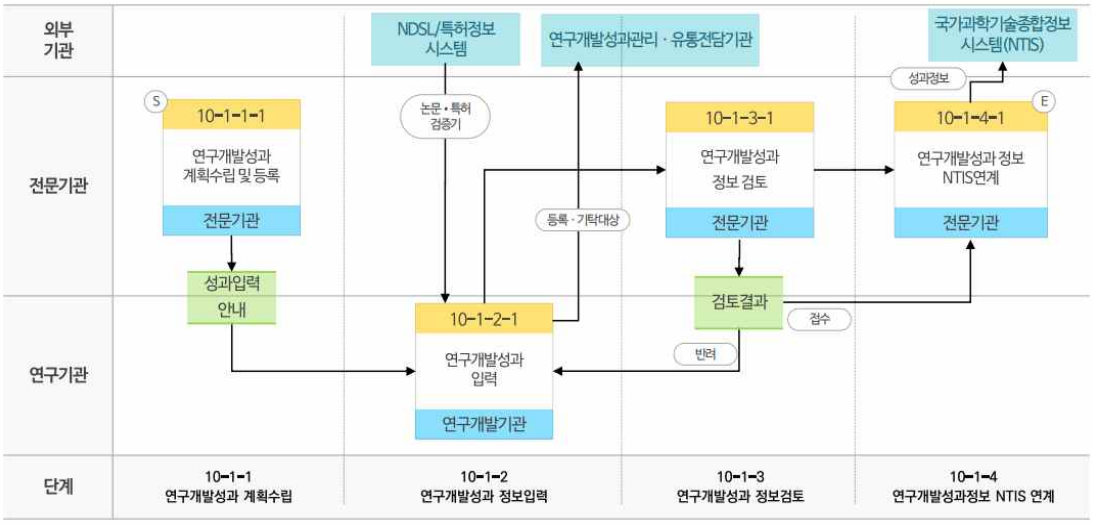

성과 수집·검증 프로세스

성과 수집·검증

-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를 수집하고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증 실시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전문기관) 입력된 성과를 IRIS R&D 업무포털 매뉴얼과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매뉴얼에 따라 검증
- (성과제출) 매년 1월 경 사업 및 과제 정보와 검증된 성과 정보를 국가R&D표준정보관리서비스(IRIS-SIMS)에 제출
  - 성과 정보 중 기술료 및 사업화 실적 정보는 매년 7월 경 제출

4. 성과 등록방법

1) 성과등록 기능 및 구분 안내(1/5)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을 검색 및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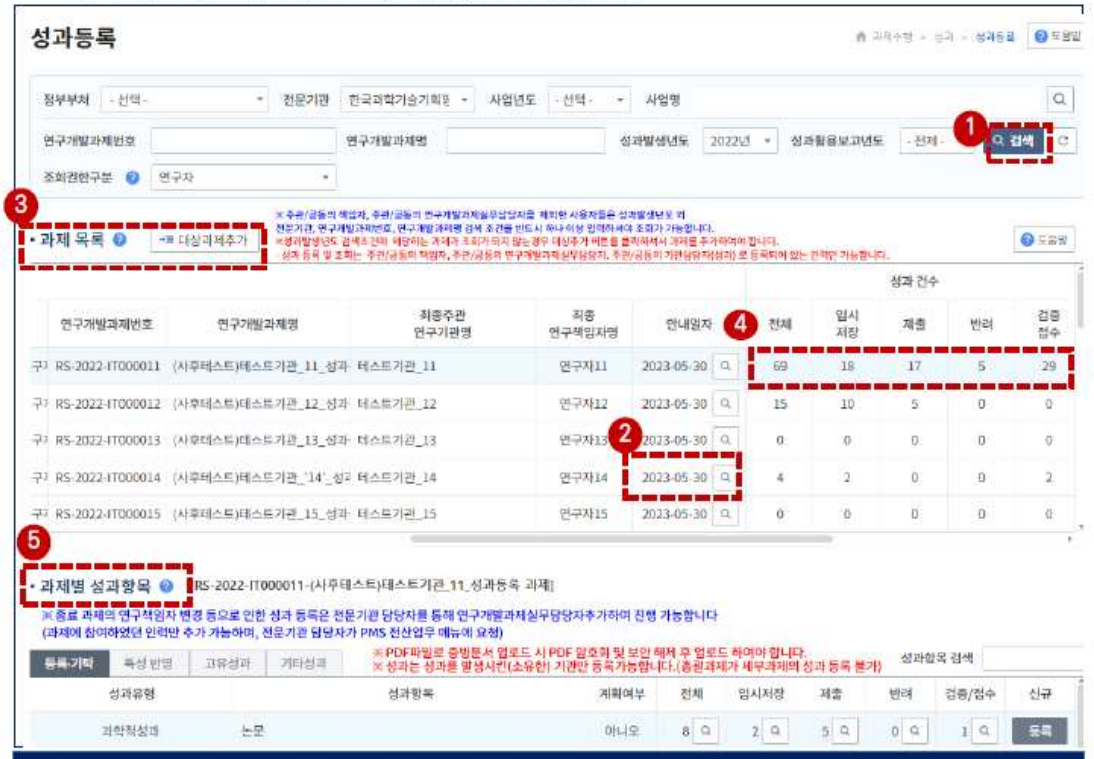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검색버튼 클릭 시 과제목록이 조회됩니다. 성과발생년도 검색조건은 필수입니다.
(연구개발성과는 주관/공동 연구개발책임자, 과제에 등록된 주관/공동의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가 등록 가능)

② 전문기관 담당자가 성과입력 안내를 했을 경우 안내일자가 보이며 돋보기 버튼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과제목록에 과제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대상추가 버튼을 통해 과제 및 성과발생년도를 선택 후 저장하시면 과제목록에 조회됩니다(세부 안내 내용은 과제목록 오른쪽 도움말 버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해당 과제의 성과물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해당 과제의 등록·기탁성과, 특성반영성과, 고유성과, 기타성과 각각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유성과는 전문기관별 활용 성과항목으로 전문기관 담당자 설정에 따라 성과항목이 상이하게 보여집니다.

1) 성과등록 기능 및 구분 안내(2/5)

- 성과 구분별로 해당하는 성과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등록·기탁성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별표[4]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성과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으로 등록기탁 성과발생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 3항에 따라 발생된 연구성과는 반드시 등록 기탁** ※ 등록·기탁성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존재합니다((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과 기탁(회합물,신품종, 생명자원(생물자원)).
- 특성반영성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 서식에 활용(존재)하는 성과 항목
- 고유성과: 전문기관 관리용 항목으로 공통된 항목이 아니며, 전문기관별 항목 상이
- 기타성과: 등록기탁, 특성반영, 고유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1) 성과등록 기능 및 구분 안내(3/5)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을 검색 및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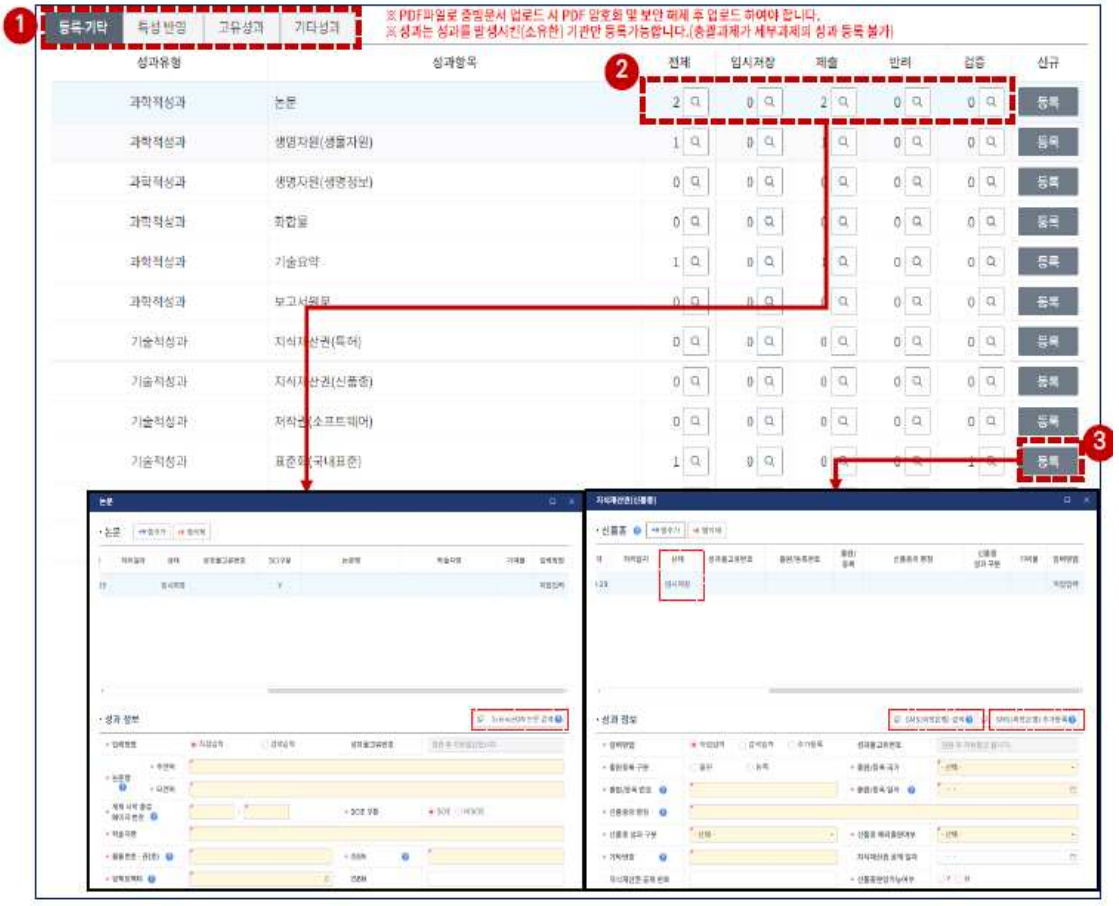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등록·기탁, 특성반영, 고유성과, 기타성과탭을클릭 시 각 구분별 성과항목 목록이 전환됩니다.

② 성과항목별 등록현황(임시저장, 제출, 반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 클릭 시 성과항목에 해당하는 성과물 목록 및 상세내용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③ 등록 버튼 클릭 시 성과항목에 해당하는 성과물 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되며 임시저장 상태의 성과물이 자동으로 성과물목록에 추가됩니다. 성과물등록 팝업창에 대한 설명은 다음장에서 계속됩니다.

1) 성과등록 기능 및 구분 안내(4/5)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성과물등록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홍보실적 성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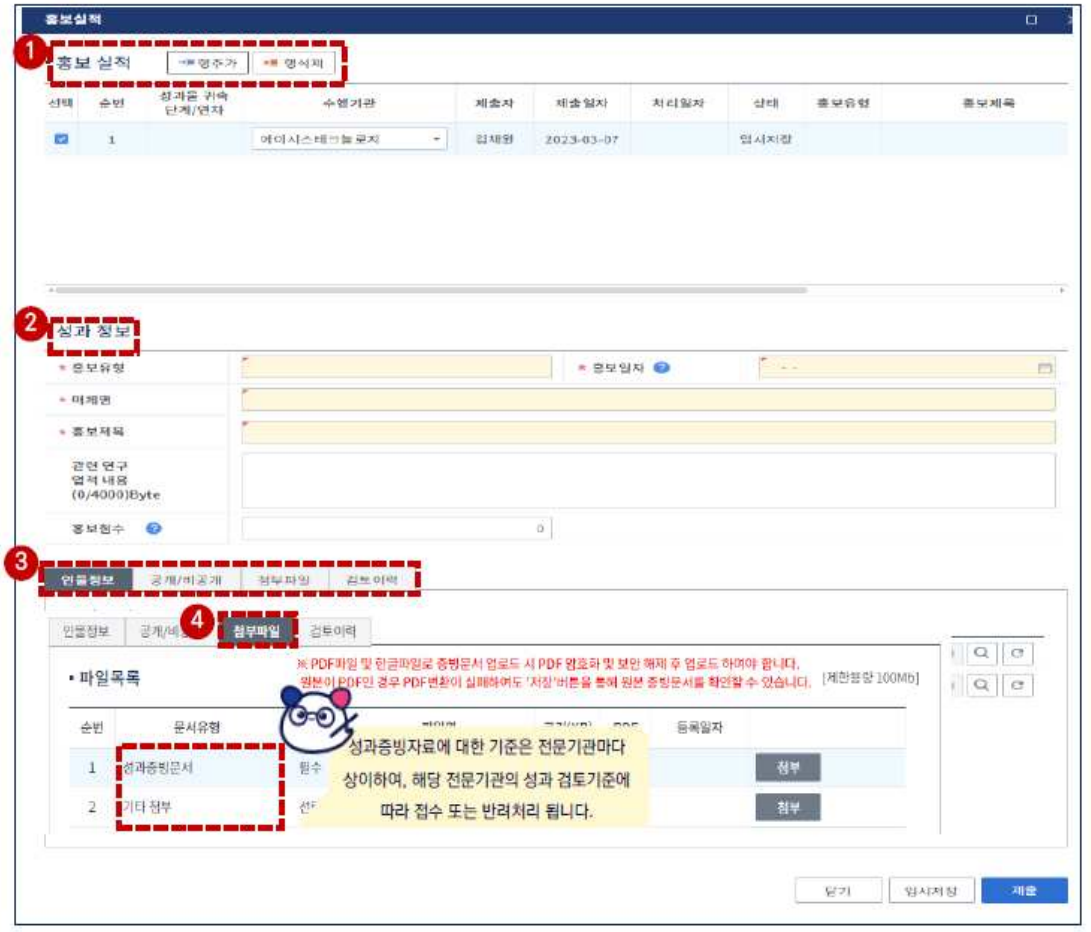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각 성과항목에 맞는 성과물 목록이 조회됩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성과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성과물을 삭제(임시저장이나 반려상태인 경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각 성과항목에 맞는 성과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모든 성과항목의 공통 입력사항입니다(성과의 특성상 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④ 첨부파일 탭 내의 성과증빙문서 파일 제출은 필수입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할 경우 성과증빙문서파일 외 제출할 파일은 기타 첨부에 zip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과등록 기능 및 구분 안내(5/5)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성과물등록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홍보실적 성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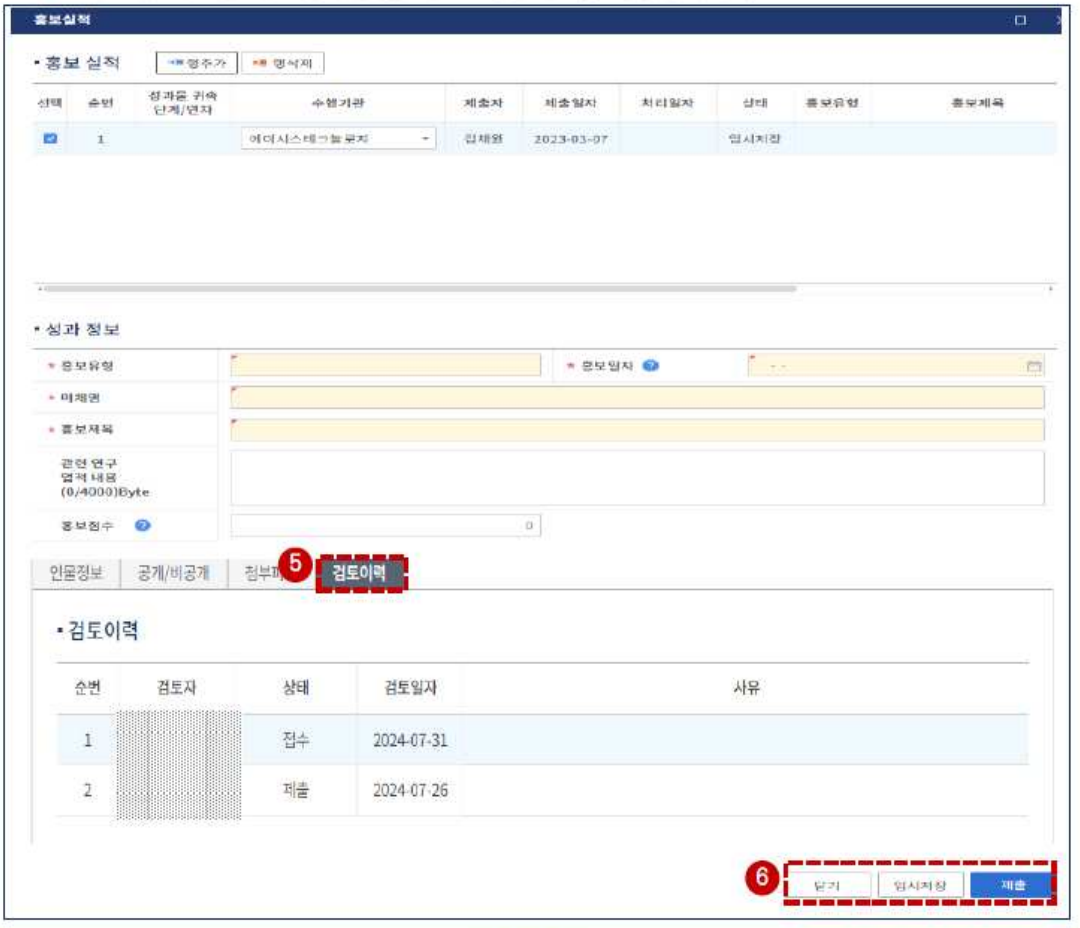

상세 Guide

⑤ 검토이력 탭 내에서 연구자 제출, 전문기관 접수/반려, 전담기관 검증 상태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과물 반려 처리 시 성과를 등록한 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이메일 및 IRIS 전자알림이 발송됩니다.

⑥ 버튼설명 : 임시저장(성과물 내용 저장), 제출(성과물 내용 제출, 제출 후 제출취소 버튼으로 변경)

※ 전문기관 담당자 접수 처리 전까지 제출 후 제출취소 버튼을 통해 성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2장. 성과조사·분석

1. 성과조사·분석 개요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완료 후에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또는 부산물로 얻어지는 산출물(Output)을 수집하고, 연구성과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Outcome)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활동임
  - 연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기획·관리하는 사업을 의미
- 성과활용조사는 조사대상 과제(과제종료 후 5년 이내)를 대상으로 매년 발생된 연구성과 및 활용성과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

목적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 및 산출성과 조사·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 R&D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과제 기획·관리에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인 연구성과를 수집하여 체계화된 자료를 국민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R&D 정당성 확보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하여 미활용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R&D 성과활용 극대화
- 심층적인 성과활용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R&D 프로세스 개선 및 성과관리 강화

2. 보건의료 R&D 조사·분석

▌조사 목적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R&D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및 사업 기획 등 기초자료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 및 상위평가 주요 실적의 근거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 대상 및 시기

- (조사대상) 보건의료 R&D 신규 및 계속과제
  – 당해연도 보건의료 R&D 사업 예산이 투입된 모든 과제
- (조사시기) 당해연도 12월 ~ 익년도 1월까지 온라인 성과조사

조사방법

- (조사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입력된 성과를 취합하여 국가R&D 표준정보관리서비스(IRIS-SIMS)에 제출
  - 과제를 수행한 각 참여기관에서 발생한 성과를 모두 입력하되, 성과입력 기관이 과제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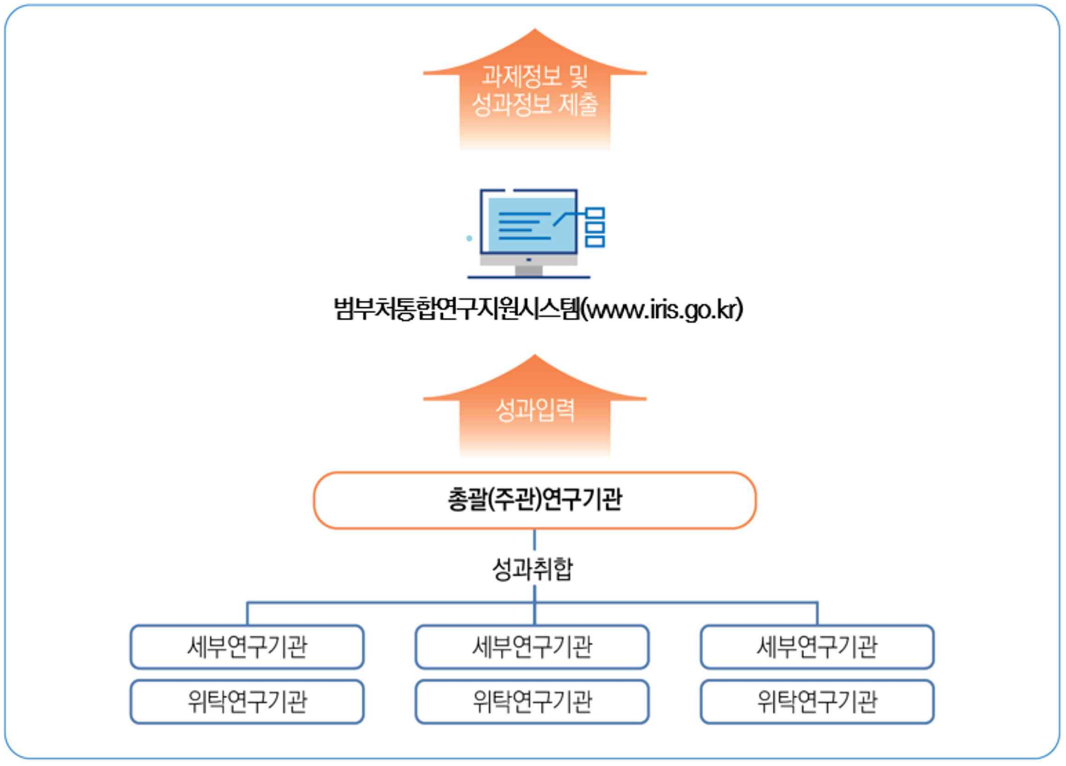

성과 제출 프로세스

3. 보건의료 R&D 성과활용조사

▌조사목적

- 보건의료 R&D 사업 종료과제의 성과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성과 홍보 및 과제기획·관리에 활용

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5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사대상 및 시기

- (조사대상) 보건의료 R&D 사업 연구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 최근 5년간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활용조사를 실시
    ※ 기획과제, 정책과제, 실패 및 중단과제,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등 제외



성과활용조사 대상

• (조사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제출
  – 일부 추가자료 확보 및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병행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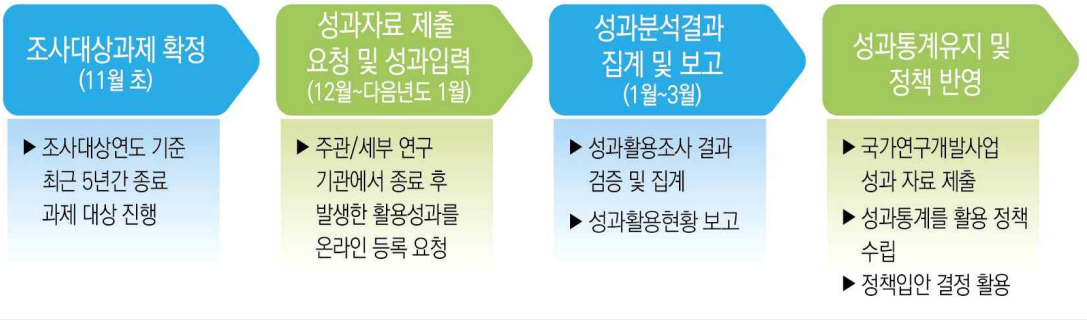

성과활용조사·분석 프로세스

4. 성과(성과활용보고서) 등록방법

2) 성과활용보고서등록 (1/4)

- 통합업무포털 〉사후관리 〉성과활용 〉성과활용보고서등록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성과물에 대해서 성과활용보고서를 검색 및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Guide

① 검색버튼 클릭 시 과제목록이 조회됩니다. 성과활용보고년도 검색조건은 필수입니다.

② 전문기관 담당자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안내를 하였을 경우, 제출안내일자가 보이며 돋보기 버튼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문기관 담당자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안내를 했을 경우 과제목록에 자동으로 조회되며, 전문기관 안내를 받지 않았으나 제출하고자 하실 경우 대상과제추가 버튼을 통해 과제를 선택하면 과제목록에 등록됩니다.

④ 해당 과제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성과활용보고서작성 팝업이 호출됩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이 계속됩니다.

⑤ 해당 과제의 등록기탁성과, 특성반영성과, 고유성과, 기타성과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성과활용보고서 메뉴에서 과제목록은 성과활용보고년도 이전부터 조회됩니다(과제 종료년도부터 조회 가능).

※ (참고) 종료된 과제의 성과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IRIS에 성과/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IRIS에 전산업무 요청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의 실무자를 등록을 요청하여 실무자의 ID로 성과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성과활용보고서 등록 (2/4)

- 통합업무포털 〉 사후관리 〉 성과활용 〉 성과활용보고서등록 〉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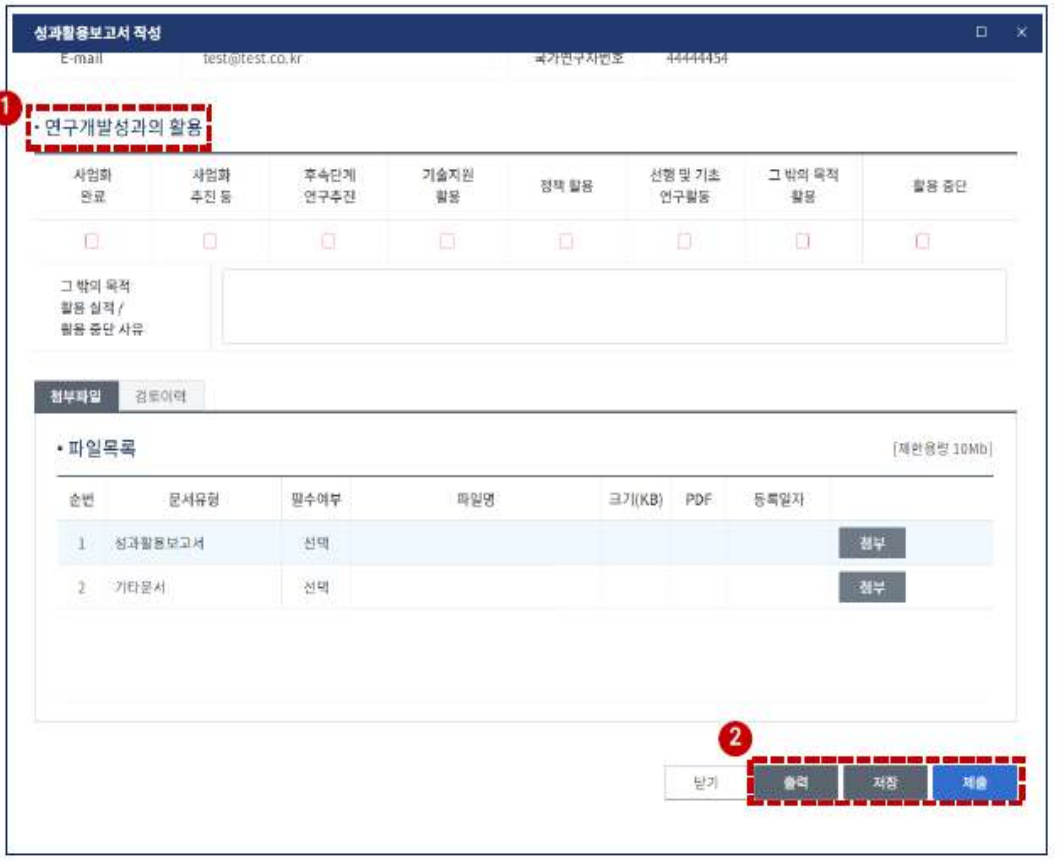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항목에 체크합니다. 체크 항목이 '그 밖의 목적 활용' 및 '활용 중단' 이였을 경우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② 버튼설명 : 출력(성과활용보고서 레포트 팝업 호출), 저장(성과활용보고서 내용 저장), 제출(성과활용보고서 내용 제출, 제출 후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 출력버튼을 통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운받아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내용 추가 후 첨부

2) 성과활용보고서 등록 (3/4)

- 통합업무포털 〉 사후관리 〉 성과활용 〉 성과활용보고서등록 〉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Guide

④ 출력버튼을 누르면 레포트 팝업이 호출됩니다.

⑤ SAVE 버튼을 눌러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운로드한 후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참고〉

전문기관 접수처리가 완료된 등록기탁, 특성반영 성과의 경우 성과활용보고서 서식 항목상에 해당 실적이 반영됩니다.

(서식에 존재하는 항목만 반영되며 고유성과, 기타성과 실적은 미반영됩니다)

2) 성과활용보고서 등록 (4/4)

- 통합업무포털 〉 사후관리 〉 성과활용 〉 성과활용보고서등록 〉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Guide

⑥ 수정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⑦ 저장 및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PART 02



성과관리 매뉴얼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제2장. 보건의료 고유성과
제3장. 기타성과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제1절 논문

논문 성과
• 수행과제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성과로서 SCIE논문과 비SCIE(일반)논문으로 구분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논문명, 학술지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논문명 및 학술지명과 논문 검색을 통한 논문명 및 학술지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SCIE 등재 저널 해당 여부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SCIE 등재 저널 해당 여부와 논문 검색을 통해 확인한 SCIE 등재 저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학술지 게재일자 및 출판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게재 연월일 및 출판 연월일과 논문 검색을 통해 확인한 논문 게재일 및 출판일이 일치하는지 확인

▌권(호),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권(호),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와 논문 검색을 통해 확인한 권(호),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발행국가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발행국가와 논문 검색을 통해 확인한 발행국가가 일치하는지 확인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해당 여부 및 연구책임자 역할

- 연구자가 IRIS에 등록한 논문 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며, 연구책임자가 해당 논문에서 어떤 저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사사 기재 여부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과제를 통해 창출된 논문이라는 내용 확인

▌참고: 논문 사사(Acknowledgement) 표준 표기▐

국문표기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 RS-2024-KH000000).”
영문표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ex.) : RS-2024-KH000000)”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논문명, 저널명, 저자명, 출판연월일, ISSN, 사사(과제번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DOI

▌증빙자료 종류

- 주요 서지정보 및 사사 확인이 가능한 논문 사본 전문(Full-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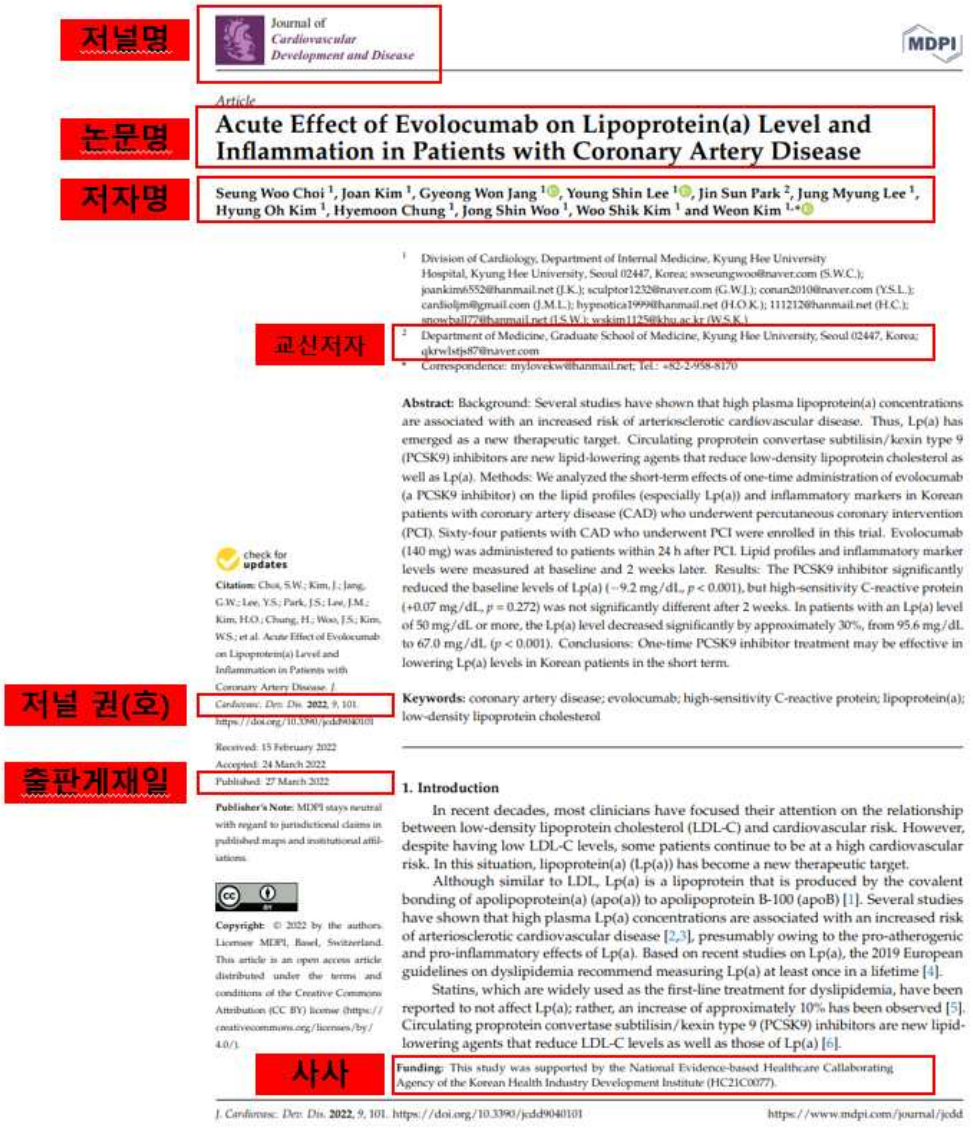

Journal of Cardiovascular Development and Disease

MDPI

Article

Acute Effect of Evolocumab on Lipoprotein(a) Level and Inflammation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Seung Woo Choi [1], Joan Kim [1], Gyeong Won Jang [1], Young Shin Lee [1], Jin Sun Park [2], Jung Myung Lee [1], Hyung Oh Kim [1], Hyemoon Chung [1], Jong Shin Woo [1], Woo Shik Kim [1] and Weon Kim [1,*]

[1] Division of Cardi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Kyung Hee University, Seoul 02447, Korea; swseungwoo@naver.com (S.W.C.); joankim6552@hanmail.net (J.K.); sculptor1232@naver.com (G.W.J.); conan20100@naver.com (Y.S.L.); cardioljm@gmail.com (J.M.L.); hypnotica19999@hanmail.net (H.O.K.); 1112120@hanmail.net (H.C.); snowball77@hanmail.net (J.S.W.); wskim1125@khu.ac.kr (W.S.K.)

[2]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02447, Korea; qkrwlstjs87@naver.com

* Correspondence: mylovekw@hanmail.net; Tel.: +82-2-958-8170

Abstract: Background: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high plasma lipoprotein(a) concentrations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rteri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Thus, Lp(a) has emerged as a new therapeutic target. Circulating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PCSK9) inhibitors are new lipid-lowering agents that reduce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 well as Lp(a). Methods: We analyzed the short-term effects of one-time administration of evolocumab (a PCSK9 inhibitor) on the lipid profiles (especially Lp(a)) and inflammatory markers in Korea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CAD) who underwent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Sixty-four patients with CAD who underwent PCI were enrolled in this trial. Evolocumab (140 mg) was administered to patients within 24 h after PCI. Lipid profiles and inflammatory marker levels were measured at baseline and 2 weeks later. Results: The PCSK9 inhibitor significantly reduced the baseline levels of Lp(a) (−9.2 mg/dL, $p < 0.001$), but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0.07 mg/dL, $p = 0.272$)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2 weeks. In patients with an Lp(a) level of 50 mg/dL or more, the Lp(a) level decreased significantly by approximately 30%, from 95.6 mg/dL to 67.0 mg/dL ($p < 0.001$). Conclusions: One-time PCSK9 inhibitor treatment may be effective in lowering Lp(a) levels in Korean patients in the short term.

Keywords: coronary artery disease; evolocumab;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lipoprotein(a);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heck for updates

Citation: Choi, S.W.; Kim, J.; Jang, G.W.; Lee, Y.S.; Park, J.S.; Lee, J.M.; Kim, H.O.; Chung, H.; Woo, J.S.; Kim, W.S.; et al. Acute Effect of Evolocumab on Lipoprotein(a) Level and Inflammation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J. Cardiovasc. Dev. Dis.* **2022**, *9*, 101. https://doi.org/10.3390/jcdd9040101

Received: 15 February 2022
Accepted: 24 March 2022
Published: 27 March 2022

Publisher's Note: MDPI stays neutral with regard to jurisdictional claims in published maps and institutional affiliations.

Copyright: © 2022 by the authors. Licensee MDPI, Basel, Switzerland.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CC BY)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1. Introduction

In recent decades, most clinicians have focused their atten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and cardiovascular risk. However, despite having low LDL-C levels, some patients continue to be at a high cardiovascular risk. In this situation, lipoprotein(a) (Lp(a)) has become a new therapeutic target.

Although similar to LDL, Lp(a) is a lipoprotein that is produced by the covalent bonding of apolipoprotein(a) (apo(a)) to apolipoprotein B-100 (apoB) [1].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high plasma Lp(a) concentrations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rteri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2,3], presumably owing to the pro-atherogenic and pro-inflammatory effects of Lp(a). Based on recent studies on Lp(a), the 2019 European guidelines on dyslipidemia recommend measuring Lp(a) at least once in a lifetime [4].

Statins, which are widely used as the first-line treatment for dyslipidemia, have been reported to not affect Lp(a); rather,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10% has been observed [5]. Circulating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PCSK9) inhibitors are new lipid-lowering agents that reduce LDL-C levels as well as those of Lp(a) [6].

Funding: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of the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HC21C0077).

논문 증빙자료 예시

성과입력 주의사항

- 학술지 권(호)가 부여된 실제 출판일자 기준으로 성과 발생연도를 선택하여 입력해야 함
  - 논문 Published 일자는 2024년이지만 저널 출판연도(권·호 부여)가 2025년인 경우, “저널 출판연도”인 2025년을 성과 발생연도로 판단함
  - 학술지 권(호) 없이 접수(received), 게재 확정(accepted), 온라인 게재(Early Access, Only first, Online Published, Early View, First Online, In Press 등) 등 상태인 논문은 ’출판 전 논문‘이므로 당해연도 성과로 불인정함
  - e-pub(최종)은 ① On-Line 출판만 하는 저널이면서 ② Vol(No) 존재 시 당해연도 성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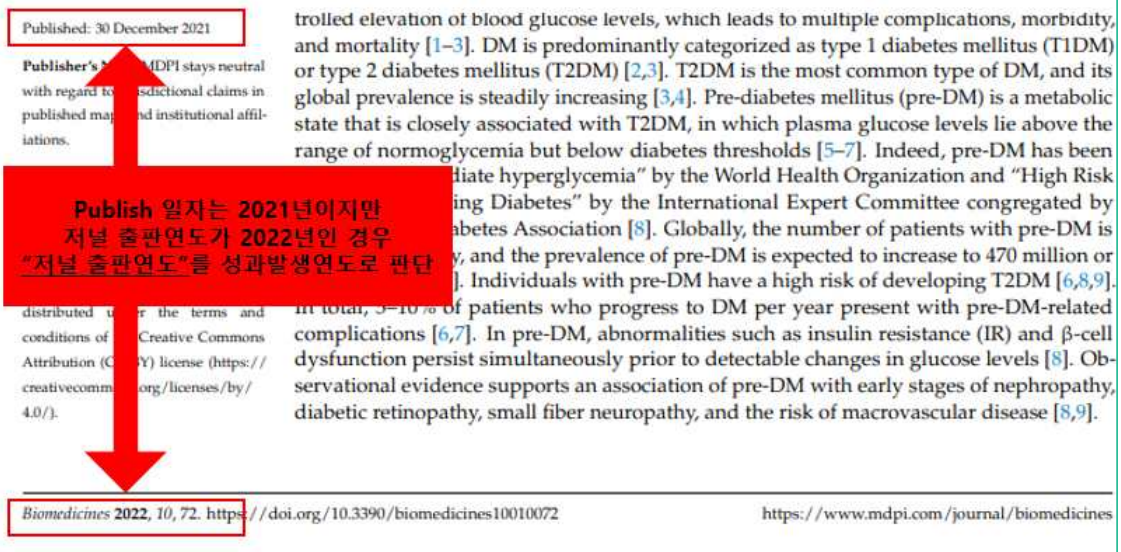

게재일자와 저널 출판연도가 다를 경우 저널 출판연도를 성과발생 시점으로 판단

-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저자(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논문명 및 학술지명은 영문명을 우선으로 입력하며, 영문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글 등 논문 사본의 원 언어로 입력하여야 함
- 사사(Acknowledgement, Funding 등)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발생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입력 과제번호와 사사에 명시된 과제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 학술대회(포스터 발표 포함), 컨퍼런스, 포럼 등 발표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하며, 기관지 기고, 신문기사·사설, 학위논문, 단행본 등도 성과로 불인정함
  -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 권(호)를 부여받고 정식 출판된 경우는 인정함
- 동일한 논문 성과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에 입력하는 경우, 각 세부과제별 기여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함 (하단의 ’중복 성과의 기여율 조정 방법‘ 참고)

• 중복 성과 : 한 개의 성과가 동일 과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복 입력된 경우

→ 1개 성과만 남기고 나머지 성과는 삭제

논문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가	홍길동	1	100
	가	홍길동	1	삭제

• 기여율 조정 성과

① 동일 부처 내 다른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연구관리기관 사업담당자 주관 하에 연구책임자간 협의 후 기여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하여 재입력

논문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가	홍길동	1	70
	나	일지매	1	30

② 다른 부처의 다른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사업담당자간 협의 후 기여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하여 재입력

※ 연구관리기관 사업담당자간 협의 후 각각 기여율을 30, 70으로 기재

논문	부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보건복지부	가	홍길동	1	30
	과기부	나	일지매	1	70

③ 한 명의 연구책임자가 여러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동일 성과를 중복 입력한 경우

→ 연구책임자가 과제별로 성과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하여 합이 100이 되도록 입력

논문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가	홍길동	1	70
	나		1	30

④ 1단계 과제 성과가 타 과제의 성과와 중복 입력된 경우

→ 1단계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의 기여율을 조정(1단계 과제의 기여율은 0으로 사전 조정됨)

논문	부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복결과	기여율
A	보건복지부	가(1단계 과제)	홍길동	1	0
	보건복지부	나	일지매	1	70
	과기부	다	김연아	1	30

병기 표기에 따른 중복 성과의 기여율 조정 방법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논문 성과 발생연도는 해당 논문이 학술지 권(호)를 부여받아 실제 인쇄본으로 출판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권·호 정보가 없는 접수(received), 게재 확정(accepted), 온라인 게재(Early Access, Only first, Online Published, Early View, First Online, In Press 등) 등 상태인 논문은 '출판 전 논문'으로 식별되어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출판된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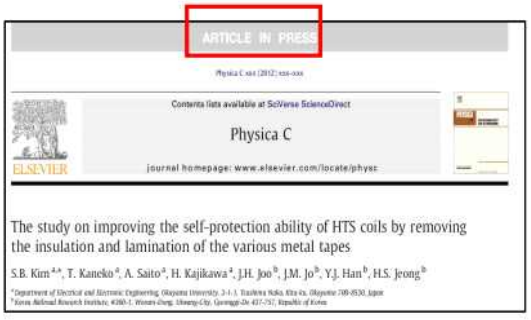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출판 전 논문 예시

- (사사 누락) 논문 사사(Acknowledgement, Funding 등)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과제 지원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사에 기재된 과제번호와 성과 입력 과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논문 미해당) 학술대회(포스터 발표 포함), 컨퍼런스, 포럼 등 발표 논문, 기관지 기고, 신문기사·사설, 학위논문, 단행본 등은 성과로 불인정함
- (저자 미포함)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저자(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증빙 미비) 최종 출판된 논문 사본 전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Draft 등 저자의 작성/제출 버전 파일이나 임의 작성과 수정이 가능한 파일(hwp, word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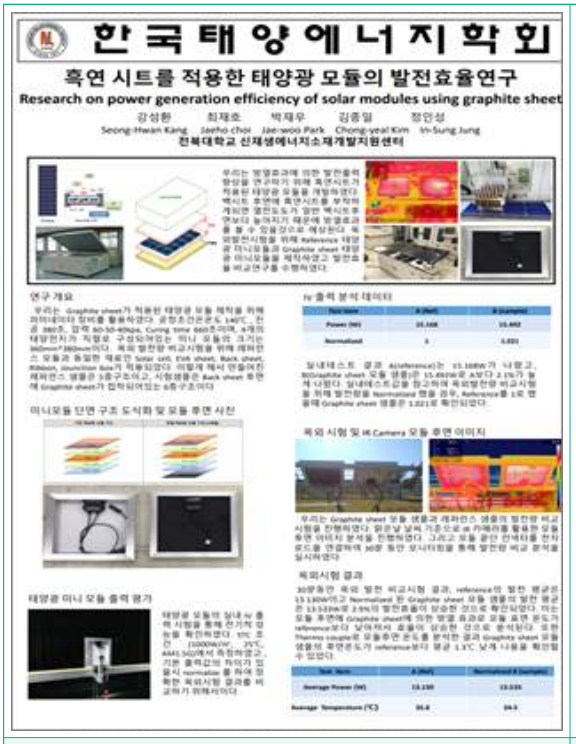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흑연 시트를 적용한 태양광 모듈의 발전효율연구

Research on power generation efficiency of solar modules using graphite sheet

강성환 최재호 박재우 김종일 정인성

Seong-Hwan Kang Jaeho Choi Jae-woo Park Chong-yeal Kim In-Sung Jung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불인정 증빙 예시 1 (학술대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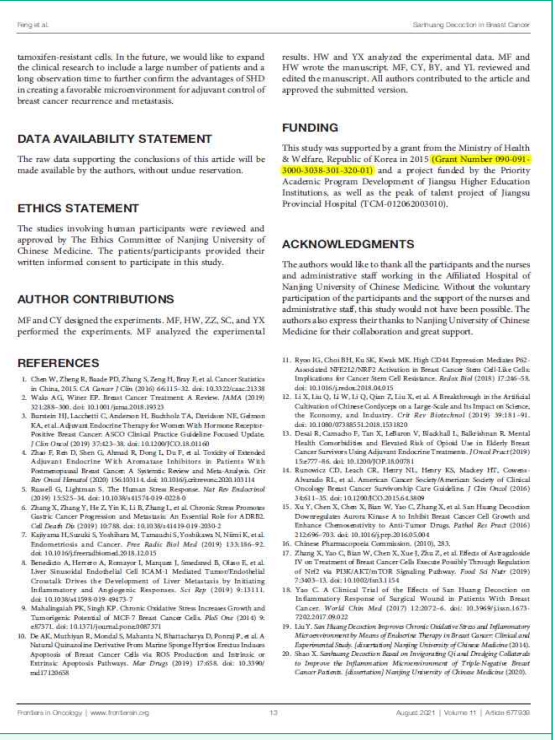

Feng et al. Sanhuang Decoction in Breast Cancer

tamoxifen-resistant cells.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expand the clinical research to include a large number of patients and a long observation time to further confirm the advantages of SHD in creating a favorable microenvironment for adjuvant control of breast cancer recurrence and metastasis.

DATA AVAILABILITY STATEMENT

The raw data supporting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will be made available by the authors, without undue reservation.

ETHICS STATEMENT

The studies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were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Ethics Committee of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The patients/participants provided their written informed consent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UTHOR CONTRIBUTIONS

MF and CY designed the experiments. MF, HW, ZZ, SC, and YX performed the experiments. MF analyzed the experimental results. HW and YX analyzed the experimental data. MF and HW wrote the manuscript. MF, CY, BY, and YL reviewed and edited the manuscript. All authors contributed to the article and approved the submitted version.

FUNDING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in 2015 (Grant Number 090-091-3000-3038-301-320-01) and a project funded by the Priority Academic Program Development of Jiangsu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well as the peak of talent project of Jiangsu Provincial Hospital (TCM-01206203010).

ACKNOWLEDGMENTS

The authors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and the nurses and administrative staff working in the Affiliated Hospital of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Without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articipants and the support of the nurses and administrative staff, this study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he authors also express their thanks to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for their collaboration and great support.

REFERENCES

1. Chen W, Zheng R, Baade PD, Zhang S, Zeng H, Bray F, et al. Cancer Statistics in China, 2015. *CA Cancer J Clin* (2016) 66:115–32. doi: 10.3322/caac.21338
2. Waks AG, Winer EP. Breast Cancer Treatment: A Review. *JAMA* (2019) 321:288–300. doi: 10.1001/jama.2018.19323
3. Burstein HJ, Lacchetti C, Anderson H, Buchholz TA, Davidson NE, Gelmon KA, et al. Adjuvant Endocrine Therapy for Women With Hormone Receptor-Positive Breast Cancer: ASCO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cused Update. *J Clin Oncol* (2019) 37:423–38. doi: 10.1200/JCO.18.01160
4. Zhai F, Ren D, Shen G, Ahmad R, Dong L, Du F, et al. Toxicity of Extended Adjuvant Endocrine With Aromatase Inhibitors in Patients With Postmenopausal Breast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rit Rev Oncol Hematol* (2020) 156:103114. doi: 10.1016/j.critrevonc.2020.103114
5. Russell G, Lightman S. The Human Stress Response. *Nat Rev Endocrinol* (2019) 15:525–34. doi: 10.1038/s41574-019-0228-0
6. Zhang X, Zhang Y, He Z, Yin K, Li B, Zhang L, et al. Chronic Stress Promotes Gastric Cancer Progression and Metastasis: An Essential Role for ADRB2. *Cell Death Dis* (2019) 10:788. doi: 10.1038/s41419-019-2030-2
7. Kajiyama H, Suzuki S, Yoshikawa M, Yamanoi K, Yoshikawa N, Nimni K, et al. Endometriosis and Cancer. *Free Radic Biol Med* (2019) 133:186–92. doi: 10.1016/j.freeradbiomed.2018.12.035
8. Benedito A, Herrero A, Romero I, Marquez J, Smedsrod B, Olano E, et al. Liver Sinusoidal Endothelial Cell ICAM-1 Mediated Tumor/Endothelial Crosstalk Drives the Development of Liver Metastasis by Initiating Inflammatory and Angiogenic Responses. *Sci Rep* (2019) 9:13111. doi: 10.1038/s41598-019-49473-7
9. Mahalingaiah PK, Singh KP. Chronic Oxidative Stress Increases Growth and Tumorigenic Potential of MCF-7 Breast Cancer Cells. *PloS One* (2014) 9:e87571. doi: 10.1371/journal.pone.0087371
10. De AK, Muthiyan R, Mondal S, Mahanta N, Bhattacharya D, Ponnaj P, et al. A Natural Quinazoline Derivative From Marine Sponge Hyrtios Erectus Induces Apoptosis of Breast Cancer Cells via ROS Production and Intrinsic or Extrinsic Apoptosis Pathways. *Mar Drugs* (2019) 17:658. doi: 10.3390/md17120658
11. Ryoo IG, Choi BH, Ku SK, Kwak MK. High CD44 Expression Mediates P62-Associated NFE2L2/NRF2 Activation in Breast Cancer Stem Cell-Like Cells: Implications for Cancer Stem Cell Resistance. *Redox Biol* (2018) 17:246–58. doi: 10.1016/j.redox.2018.04.015
12. Li X, Liu Q, Li W, Li Q, Qian Z, Liu X, et al. A Breakthrough in the Artificial Cultivation of Chinese Cordyceps on a Large-Scale and Its Impact on Science, the Economy, and Industry. *Crit Rev Biotechnol* (2019) 39:181–91. doi: 10.1080/07388551.2018.1531820
13. Desai R, Camacho F, Tan X, LaBrum V, Blackhall L, Balkrishnan R. Mental Health Comorbidities and Elevated Risk of Opioid Use in Elderly Breast Cancer Survivors Using Adjuvant Endocrine Treatments. *J Oncol Pract* (2019) 15:e777–86. doi: 10.1200/JOP.18.00781
14. Runowicz CD, Leach CR, Henry NL, Henry KS, Mackey HT, Cowens-Alvarado RL, et al. American Cancer Society/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Breast Cancer Survivorship Care Guideline. *J Clin Oncol* (2016) 34:611–35. doi: 10.1200/JCO.2015.64.3809
15. Xu Y, Chen X, Chen X, Bian W, Yao C, Zhang X, et al. San Huang Decoction Downregulates Aurora Kinase A to Inhibit Breast Cancer Cell Growth and Enhance Chemosensitivity to Anti-Tumor Drugs. *Pathol Res Pract* (2016) 212:696–703. doi: 10.1016/j.prp.2016.05.004
16. Chinese Pharmacopoeia Commission. (2010), 283.
17. Zhang X, Yao C, Bian W, Chen X, Xue L, Zhu Z, et al. Effects of Astragaloside IV on Treatment of Breast Cancer Cells Execute Possibly Through Regulation of Nrf2 via PI3K/AKT/mTOR Signaling Pathway. *Food Sci Nutr* (2019) 7:3403–13. doi: 10.1002/fsn3.1154
18. Yao C. A Clinical Trial of the Effects of San Huang Decoction on Inflammatory Response of Surgical Wound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World Chin Med* (2017) 12:2072–6. doi: 10.3969/j.issn.1673-7202.2017.09.022
19. Liu Y. *San Huang Decoction Improves Chronic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ory Microenvironment by Means of Endocrine Therapy in Breast Cancer: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dissertation]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4).
20. Shao X. *Sanhuang Decoction Based on Invigorating Qi and Dredging Collaterals to Improve the Inflammation Microenvironment of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Patients. [dissertation]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20).

불인정 증빙 예시 2 (과제번호 미기재)



D. Kim *et al.*

and small vessel disease, dementia, might be considered as an obvious contributory factor for cognitive decline in the AF-population [6, 32]. A post-hoc analysis of the ATHENA trial demonstrated that dronedarone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risk of ischaemic and haemorrhagic stroke [33]. Tsadok *et al.* reported in a population-based observational cohort that, in comparison with rate control, rhythm control was associated with lower rates of stroke/TIA among patients with AF, particularly among those with a moderate and high risk of stroke [34].

Study limitations

The present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is claims-based database, the burden of AF was not evaluated, and its role as a contributor to outcomes remains unknown. Since we defined AF diagnoses and ablation cases only with ICD-10 or claim codes, data regarding types or symptoms of AF (paroxysmal versus non-paroxysmal, symptomatic versus non-symptomatic) were not available. Our observational study findings cannot be used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s, and residual confounding may persist even after propensity score weighting or matching (e.g. quality of anticoagulation and baseline cognitive function). However, the results from the falsific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esence of significant systematic bias is less likely. We identified sufficient overlaps of propensity scores between the groups, which represent the existence of equipoise between the two treatment strategies [35]. We were unable to assess the effects of modifiable risk factors for Alzheimer's disease such as obesity, smoking, depression, cognitive inactivity and physical activity [36]. The occurrence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was not compared, and dementia outcomes were ascertained by clinical diagnosis and associated medication use (a high-specificity assessment method). As such, milder cases may have remained undetected.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treatment and outcome is unlikely to be biased or overestimated by undetectedment of the outcome [37]. Although the subtypes of dementia were assessed using different ICD-10 codes, patients with dementia often exhibit a mixture of both pathologies [38]. When a diagnosis of a specific dementia type is made by physicians, they could be affected by the presence of AF and prevalent vascular risk factors or medication use associated with AF. Therefore, caution is warranted when interpreting associations according to dementia subtypes. Due to the active-comparator design of this study, asymptomatic patients with AF who did not require treatment could have been excluded. In addition, owing to the new user design in which prevalent drug users at the time of AF diagnosis were excluded, the proportion of treatment strategies chosen among patients with AF in this study cannot fully reflect the preferences in real-world clinical practice.

Conclusions

A rhythm-control strategy was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dementia than rate control in AF patients taking oral anticoagulants. The association was more pronounced in relatively younger patients with fewer stroke risk factors. It suggests that early initiation of a rhythm-control strategy on top of optimal anticoagulation in selected patients with AF might help prevent subsequent dementia.

Supplementary Data: Supplementary data mentioned in the text are available to subscribers in *Age and Ageing* online.

Declar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Gregory Y.H. Lip has served as a consultant for Bayer/Janssen, BMS/Pfizer, Biotronik, Medtronic, Boehringer Ingelheim, Novartis, Verazon, and Daiichi-Sankyo and as a speaker for Bayer, BMS/Pfizer, Medtronic, Boehringer Ingelheim, and Daiichi-Sankyo. No fees have been received directly or personally. Boyoung Joung has served as a speaker for Bayer, BMS/Pfizer, Medtronic, and Daiichi-Sankyo and received research funds from Medtronic and Abbott. No fees have been received directly or personally. The remaining authors have nothing to declare.

Declaration of Sources of Fund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ing Center (PACEN)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s: HI19C0481, HC19C0115, HI15C1200).

Acknowledgements: The NHIS of Korea provided the database used in this study. The authors would like to thank the NHIS for their cooperation.

References

1. Wortmann M. Dementia: a global health priority - highlights from an ADI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Alzheimers Res Ther 2012;4:40.
2. Januzzi CT, Wann LS, Calkins H *et al.* 2019 AHA/ACC/HRS focused update of the 2014 AHA/ACC/HRS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the Heart Rhythm Society. J Am Coll Cardiol 2019; 74: 104–32.
3. Hindricks G, Potpara T, Dagres N *et al.*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Association of Cardio-Thoracic Surgery (EACTS). Eur Heart J 2021; 42: 373–498.
4. Kim D, Yang PS, Jang E *et al.* Increasing trends in hospital care burden of atrial fibrillation in Korea, 2006 through 2015. Heart 2018; 104: 2010–7.
5. Burdett P, Lip GYH. Atrial fibrillation in the United Kingdom: predicting costs of an emerging epidemic recognising and forecasting the cost drivers of atrial fibrillation-related costs. Eur Heart J Qual Care Clin Outcomes 2020; qcaa093. https://doi.org/10.1093/ehjqcco/qcaa093.
6. Ott A, Breteler MM, de Bruyne MC, van Harskamp F, Grobbee DE, Hofman A. Atrial fibrillation and dementia in a population-based study. The Rotterdam Study Stroke 1997; 28: 316–21.

Downloaded from https://academic.oup.com/ageing/advance-article/doi/10.1093/ageing/afac193/6706928 by guest on 17 March 2022

불인정 증빙 예시 3 (과제번호 오기재(끝자리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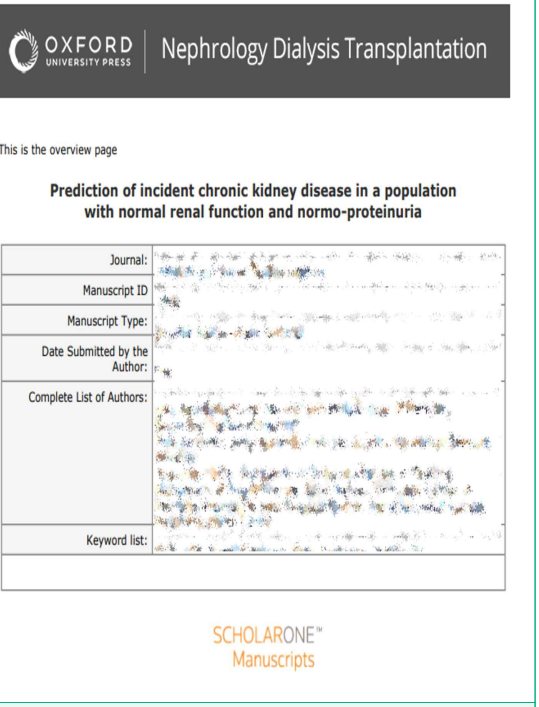

OXFORD UNIVERSITY PRESS | Nephrology Dialysis Transplantation

This is the overview page

Prediction of incident chronic kidney disease in a population with normal renal function and normo-proteinuria

Journal:	
Manuscript ID	
Manuscript Type:	
Date Submitted by the Author:	
Complete List of Authors:	
Keyword list:	

SCHOLARONE™ Manuscripts

불인정 증빙 예시 4 (Peer Review용 문서)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서지정보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논문명, 학술지명) 논문명 및 학술지명은 영문 입력이 원칙이며, 오타 없이 정식 명칭(Full-name)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 (SCIE 구분) SCIE 등재 저널 해당 여부는 Clarivate JCR(Journal Citation Reports) DB 기준으로 판단함
  ※ SCIE : SCI(Science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비SCIE : ESCI(Emerged Science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COPUS, KCI 등
  ※ Clarivate Master Journal List 검색 : https://mjl.clarivate.com
- (출판일자) 학술지 권(호)가 부여된 출판일자 기준으로 해당연도 성과가 맞는지 확인함
- (사사) 사사에 기재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과제정보가 성과입력 과제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함
- (기여율) 입력된 기여율을 우선으로 하되, 별도 조정 없이 기여율 100%로 입력된 경우에는 사사에 기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번호 기준 1/N로 강제 조정을 실시함
  ※ 타 국가 및 일반기관(사기업, 대학 등)의 지원 내역은 제외
- (ISSN) 학술지의 Print ISSN 또는 Online ISSN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 (볼륨번호, 페이지 번호)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 (DOI) DOI를 통해 해당 논문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지 확인함
  ※ DOI(디지털 객체 식별자, Digital Object Identifier) : 인터넷 주소가 바뀌어도 사용자가 그 문서의 새 주소로 찾아갈 수 있도록 웹 파일이나 인터넷 문서에 영구적으로 부여된 식별자
  ※ Crossref DOI 검색 : https://search.crossref.org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2차 검증(자체 증빙 보완)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PubMed, 저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자체 증빙 보완 및 2차 검증을 실시함

- (PubMed) PubMed에 논문 사본 전문(Full-text)을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가 연동되어 있으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IRIS 시스템에 추가 등록 후 검증을 실시함
- (저널 홈페이지 등) PubMed 검색 불가 시, 저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문 사본 전문(Full-text)을 확보하여 IRIS 시스템에 추가 등록 후 검증을 실시함

(3)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로 논문 사본 일부만 제출하여 주요 서지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증빙자료로 논문 사본 전문(Full-text) 제출
  - 사사가 누락된 경우, 사사에 기재된 과제번호와 성과 입력 과제번호가 불일치 하는 경우 등 : 저널에 사사 보정을 신청하여 수정 버전(CORRIGENDUM, CORRECTION 등)이 확정되면 해당 논문 사본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논문 출판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논문 출판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학술대회(포스터 발표 포함), 컨퍼런스, 포럼 등 발표 논문인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학술대회 성과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논문이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4)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논문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입력방법	O	입력방법은 '직접입력'과 '검색입력' 중 선택 * 검색을 통한 성과입력 시, ScienceON를 통해 연구자의 논문을 검색/확인 및 자동입력
논문명-주언어	O	논문의 주언어 제목을 입력
논문명-타언어	O	논문의 타언어 제목을 입력
페이지 번호	O	해당 논문의 시작, 끝페이지를 숫자 또는 문자열로 기재 *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0'으로 입력
SCIE 구분	O	'SCIE', '비SCIE' 중 선택
학술지명	O	학술지명을 입력 * 학술지명 직접 입력 시 Full-name을 정확하게 기재 (예: Journal of Biotechnology)
볼륨번호-권(호)	O	볼륨번호는 괄호()로 구분 * 볼륨번호가 없는 경우는 n(n)으로 기입(N 대문자도 가능)
ISSN	O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ISSN 번호를 기재 *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ISSN이 없는 학술지인 경우 '0000-0000' 입력
IF (Impact Factor)	O	게재 당시 IF 값을 입력
ISBN		학술지의 ISBN 번호를 기재
학술지구분	O	'국내/외전문학술지', '국내/외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국내/외기타' 중 선택
학술지 게재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논문 게재 연월일을 선택
발행국가	O	발행국가를 선택
학술지 출판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논문 출판 연월일을 선택
학술대회명		학술대회명을 작성
학술대회 발표년월일		학술지 구분이 '국내/외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이거나 '국내/외 기타'인 경우 선택 '학술대회 발표년월일'의 년도는 '학술지 출판일자'의 년도와 동일하게 제출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DOI 번호	O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값을 입력
초록	O	논문의 초록 내용을 입력
mrnIF		발간 당시의 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mrnlF 지수)를 입력
인물/기관정보	O	해당 논문의 제1저자(First/Lead author) 및 공동·교신저자명 입력, 학술지의 발행기관명 입력 * 논문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 (영어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정보	O	국제공동 연구논문 여부와 해당 논문의 키워드 내용, 사사 개수 등 입력
공개/비공개	O	논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논문 사본 전문 등의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1) 논문 성과 등록(1/2)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논문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논문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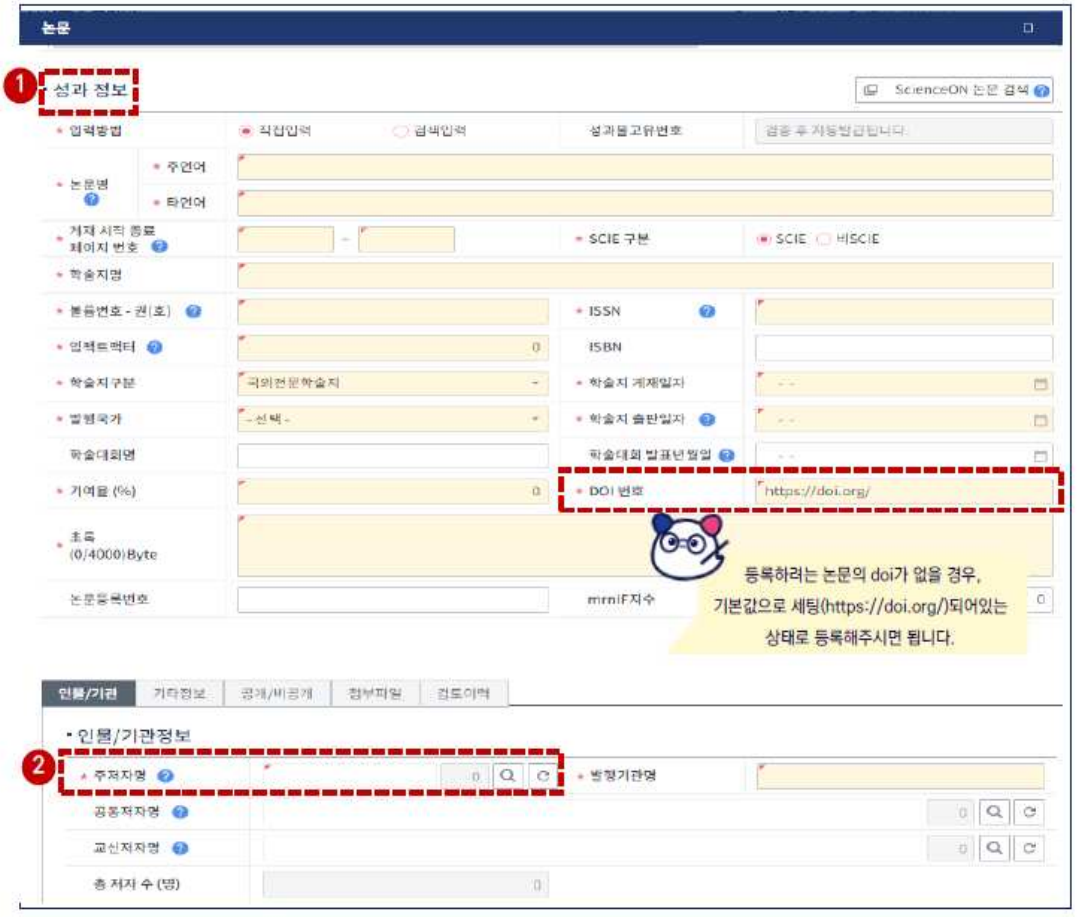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논문명, SCI(SCIE포함)구분, 학술지명, 기여율 등을 입력합니다.

② 주저자명의 돋보기를 클릭해서 인력 검색 팝업에서 인력을 검색하여 추가하거나 직접입력에 활용하여 입력합니다.

※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 가입한 사용자는 인력을 검색하여 선택하며 NRI에 가입하지 않은 인력은 직접입력을 사용

※ 학술지 출판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SIMS 기준).

1) 논문 성과 등록(2/2)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논문 팝업 페이지입니다.
- ScienceOn에 등록된 논문을 검색하여 성과를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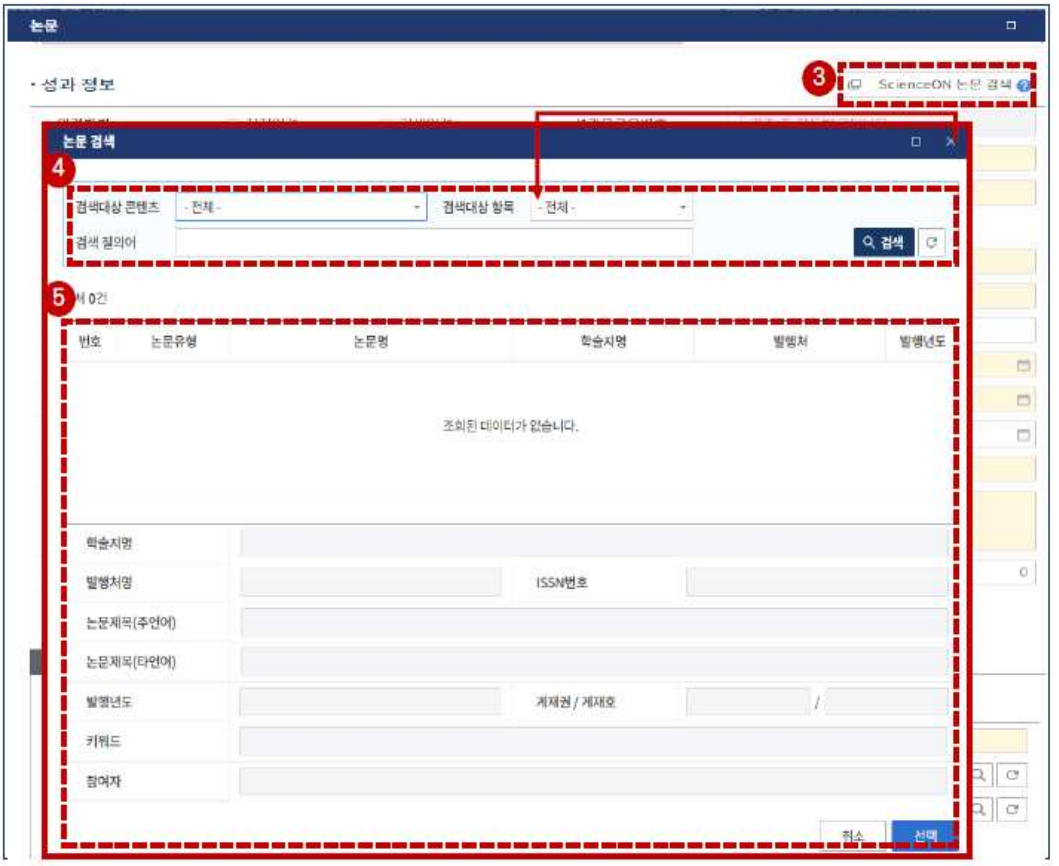

상세 Guide

③ ScienceON 논문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논문을 선택 등록할 경우 입력 방법이 검색입력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④ 검색대상 콘텐츠, 검색대상 항목을 설정한 후 검색 질의어를 작성하고 검색합니다.

⑤ 해당하는 논문을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부분 외에 나머지 빈칸 입력 후 임시저장 하거나 제출합니다.

제2절 지식재산권(특허)

특허 성과

- 수행과제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국내·외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 성과
  -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발명 성과
  - (특허 등록)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이 특허등록결정이 되어 출원인이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성과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특허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특허명과 증빙자료 상 특허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출원/등록 구분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성과 구분이 정확한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출원/등록 국가, 해외출원 구분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특허 출원/등록 국가정보와 증빙자료 상 국가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출원/등록 번호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특허번호와 증빙자료 상 특허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출원/등록 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특허 출원/등록 일자와 증빙자료 상 특허 출원/등록 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출원/등록 기관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특허 출원/등록 기관명과 증빙자료 상 특허 출원/등록 기관명이 누락없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 개인 명의 또는 개인과 공동명의 특허는 기관명의로 환원 등 별도 후속 조치 필요

▌발명자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특허 발명자 정보와 증빙자료 상 특허 발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사사 기재 여부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과제를 통해 창출된 특허라는 내용 확인
  - 특허 서지사항에 기재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항목 내 과제정보 확인

▌참고: 특허 출원 시 과제정보 기재 지침▐

과제정보 기재 근거

- 특허출원 시 해당 특허 창출에 기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정보를 출원서에 적도록 관련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해 의무화됨 ('07.2월)

기재 항목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등 8개 항목
  - 하나의 특허가 둘 이상의 과제에서 창출된 경우, 각 과제별 기여율을 입력

항목명	설명	비고
과제고유번호	SIM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	부처코드 3자리 + 과제일련번호 7자리 예) 1710012345
부처명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의 기획·평가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명칭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관리 전문기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	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사업명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	예)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연구과제명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해당 특허가 창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	예) 디지털 프린팅 니켈 용액 및 고기능 응용 디바이스 제조 공정 개발
기여율	복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하나의 특허성과가 창출된 경우 각 개별 과제의 기여도	특허성과 1건당 기여율의 합은 1이 되도록 기재함
주관기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	예) 서울대학교
연구기간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	-

- 과제고유번호는 IRIS-SIMS에서 부여한 10자리 형태의 번호로서 과제관리기관이나 주관연구기관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과제번호와 다름에 유의
  - 과제고유번호 확인 방법 : ① 「정부R&D특허성과관리시스템」(www.ripis.or.kr) 접속 후 '특허성과검색' 클릭 > ② 과제조회 항목 중 과제명, 연구책임자 등을 해당 검색 조건에 맞춰 입력 > ③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나온 결과 중 해당하는 과제의 과제고유번호 확인



▌참고: 특허 출원 시 과제정보 기재 지침 ▐

기재 방법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과제정보(과제고유번호, 과제명 등)를 검색·조회하여 입력

– '기타사항' 항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체크 및 '입력' 클릭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조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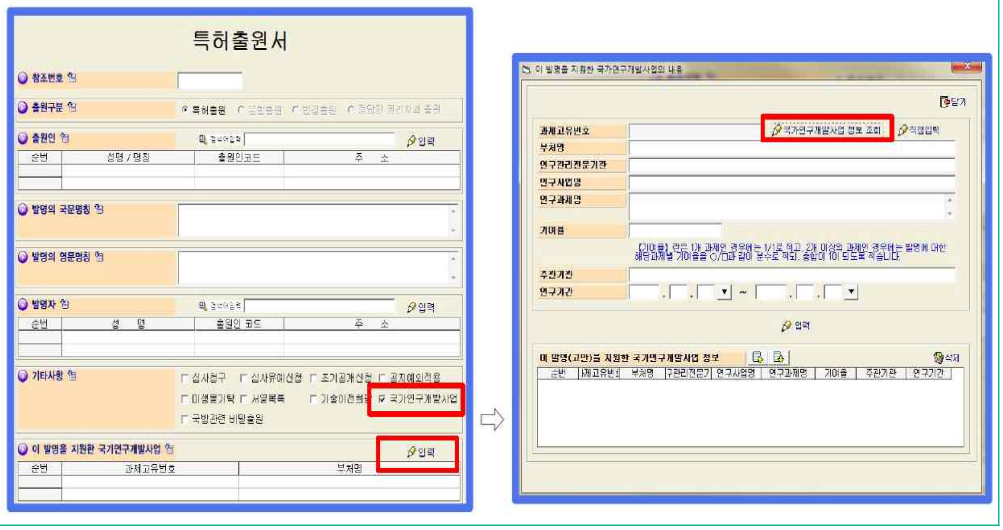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특허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기관명, 발명자명, 사사 등

▌증빙자료 종류

- (국내출원) ① 출원번호통지서(or 출원사실증명원 or 공개특허공보), ② 서지사항(or 특허출원서) 모두 제출
  - 출원번호, 특허명(발명의 명칭), 특허권자명(출원인 명칭), 출원일자, 사사(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는 반드시 확인가능하여야 함
  - 출원번호통지서((or 출원사실증명원)만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사사(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자료 미비로 성과 불인정 처리됨
  - 서지사항(or 특허출원서)만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자료 미비로 성과 불인정 처리됨
  - 사사를 보정한 경우, 보정서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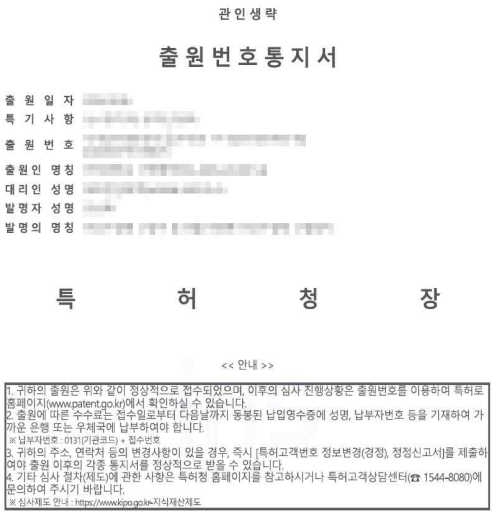

관 인 생 략

출 원 번 호 통 지 서

출 원 일 자
특 기 사 항
출 원 번 호
출원인 명칭
대리인 성명
발명자 성명
발명의 명칭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지식재산제도

출원번호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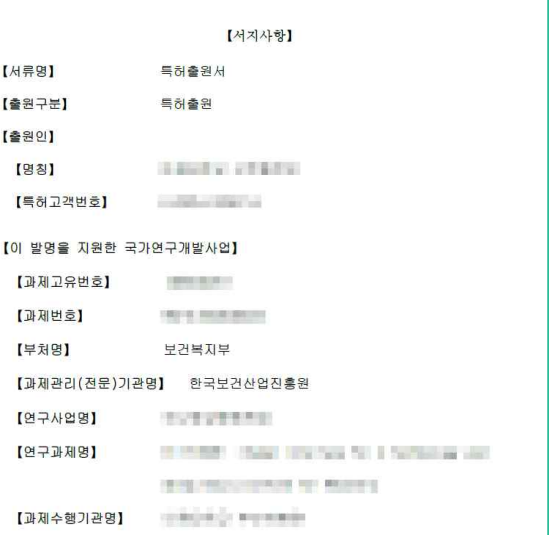

【서지사항】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명칭】
【특허고객번호】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연구기간】

서지사항

- (국내등록) 등록특허공보 제출
  - 등록번호, 특허명(발명의 명칭), 특허권자명, 등록일자, 사사(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는 반드시 확인가능하여야 함
  - 특허증만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사사(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자료 미비로 성과 불인정 처리됨
  - 사사를 보정한 경우, 보정서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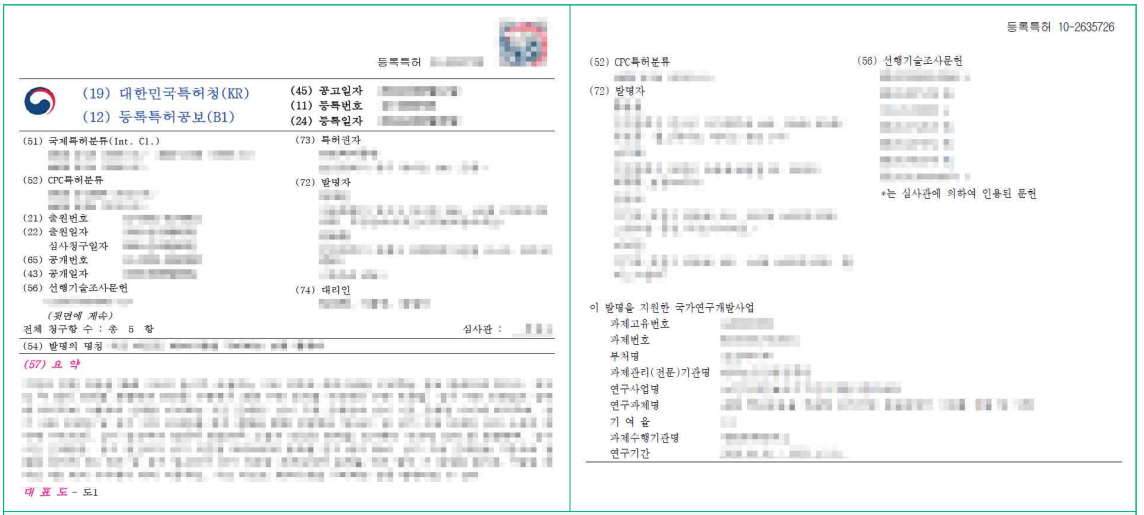

등록특허공보

- (PCT 출원)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or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 국제출원번호, 특허명(발명의 명칭), 특허권자명(출원인), 출원일자는 반드시 확인가능하여야 함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 | 출원사실증명원

- (국외 출원/등록) ① 해당국 특허청이 발행한 공식 문서(출원서, 등록증, 특허공보 등) 또는 ② 키프리스 (https://www.kipris.or.kr) 공개공보 제출
  -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권자명, 출원/등록일자는 반드시 확인가능하여야 함
  - 해외 대리인(특허법인)의 공문·이메일, 특허 신청서, 연구기관 내부 문서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등)로 작성된 증빙자료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거나 필수 정보(특허번호, 특허명, 특허권자명, 출원/등록일자)를 IRIS 시스템 입력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미국)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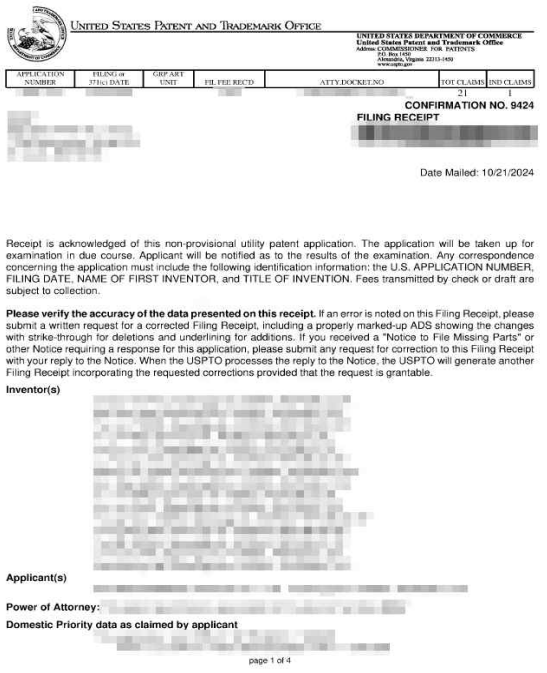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ddress: COMMISSIONER FOR PATENTS
P.O. Box 1450
Alexandria, Virginia 22313-1450
www.uspto.gov

APPLICATION NUMBER	FILING or 371(c) DATE	GRP ART UNIT	FIL FEE REC'D	ATTY.DOCKET.NO	TOT CLAIMS	IND CLAIMS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1	1

CONFIRMATION NO. 9424

FILING RECEIPT

[redacted]

Date Mailed: 10/21/2024

Receipt is acknowledged of this non-provisional utility patent application. The application will be taken up for examination in due course. Applicant will be notified as to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Any correspondence concerning the application must include the following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 U.S.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NAME OF FIRST INVENTOR, and TITLE OF INVENTION. Fees transmitted by check or draft are subject to collection.

Please verify the accuracy of the data presented on this receipt. If an error is noted on this Filing Receipt, please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a corrected Filing Receipt, including a properly marked-up ADS showing the changes with strike-through for deletions and underlining for additions. If you received a "Notice to File Missing Parts" or other Notice requiring a response for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ny request for correction to this Filing Receipt with your reply to the Notice. When the USPTO processes the reply to the Notice, the USPTO will generate another Filing Receipt incorporating the requested corrections provided that the request is grantable.

Inventor(s)

[redacted]

Applicant(s)

[redacted]

Power of Attorney:

Domestic Priority data as claimed by applicant

[redacted]

page 1 of 4

미국 특허 인정 증빙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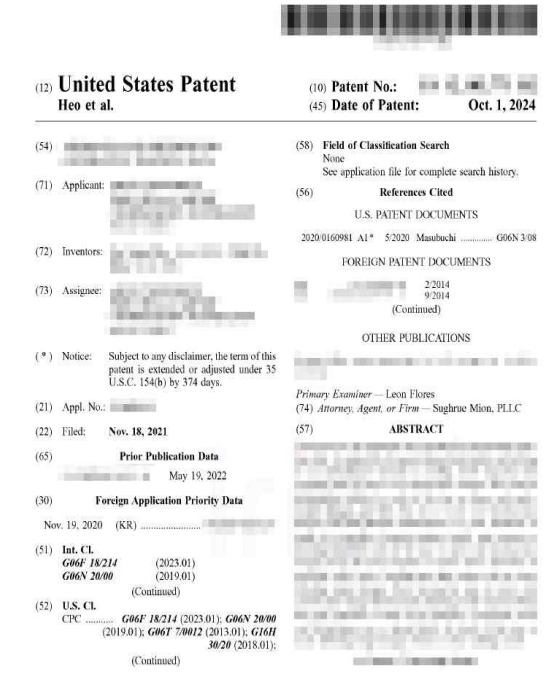

[redacted]

(12) **United States Patent**
Heo et al.

(10) **Patent No.:** [redacted]
(45) **Date of Patent:** **Oct. 1, 2024**

(54) [redacted]

(71) Applicant: [redacted]

(72) Inventors: [redacted]

(73) Assignee: [redacted]

(*) Notice: Subject to any disclaimer, the term of this patent is extended or adjusted under 35 U.S.C. 154(b) by 374 days.

(21) Appl. No.: [redacted]

(22) Filed: **Nov. 18, 2021**

(65) **Prior Publication Data**

[redacted] May 19, 2022

(30) **Foreign Application Priority Data**

Nov. 19, 2020 (KR) .....

(51) **Int. Cl.**
G06F 18/214 (2023.01)
G06N 20/00 (2019.01)
(Continued)

(52) **U.S. Cl.**
CPC ***G06F 18/214*** (2023.01); ***G06N 20/00*** (2019.01); ***G06T 7/0012*** (2013.01); ***G16H 30/20*** (2018.01);
(Continued)

(58) **Field of Classification Search**
None
See application file for complete search history.

(56) **References Cited**

U.S. PATENT DOCUMENTS

2020/0160981 A1* 5/2020 Maubuchi G06N 3/08

FOREIGN PATENT DOCUMENTS

[redacted] 2/2014
9/2014
(Continued)

OTHER PUBLICATIONS

[redacted]

Primary Examiner — Leon Flores
(74) *Attorney, Agent, or Firm* — Sughrue Mion, PLLC

(57) **ABSTRACT**

[redacted]

미국 특허 인정 증빙 예시 2

• (유럽) European Patent Office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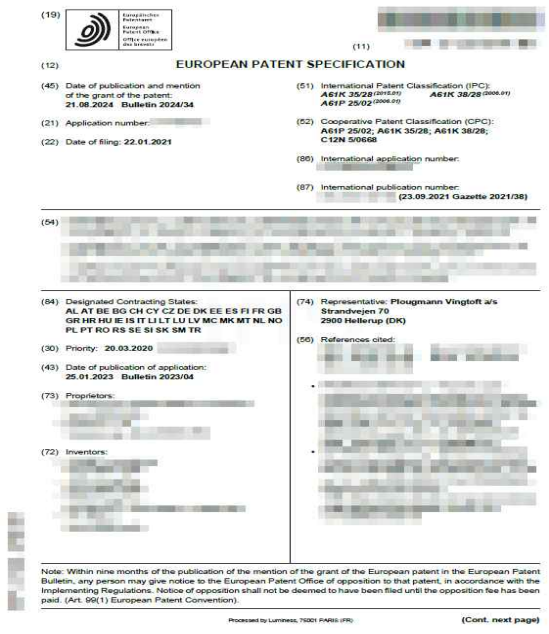

(19) Europäisches Patentamt / European Patent Office / Office européen des brevets

(11) [redacted]

(12)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45) Date of publication and mention of the grant of the patent: **21.08.2024 Bulletin 2024/34**

(21) Application number: [redacted]

(22) Date of filing: **22.01.2021**

(51)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A61K 35/28*** *(2015.01)* ***A61K 38/28*** *(2006.01)* ***A61P 25/02*** *(2006.01)*

(52)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A61P 25/02; A61K 35/28; A61K 38/28; C12N 5/0668**

(86)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redacted]

(87) International publication number: [redacted] **(23.09.2021 Gazette 2021/38)**

(54) [redacted]

(84) Designated Contracting States: **AL AT BE BG CH CY CZ DE DK EE ES FI FR GB GR HR HU IE IS IT LI LT LU LV MC MK MT NL NO PL PT RO RS SE SI SK SM TR**

(30) Priority: **20.03.2020** [redacted]

(43) Date of publication of application: **25.01.2023 Bulletin 2023/04**

(73) Proprietors: [redacted]

(72) Inventors: [redacted]

(74) Representative: **Plougmann Vingtoft a/s**
Strandvejen 70
2900 Hellerup (DK)

(56) References cited: [redacted]

Note: Within nine months of the publication of the mention of the grant of the European patent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any person may give notice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of opposition to that patent,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Notice of opposi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until the opposition fee has been paid. (Art. 99(1) European Patent Convention).

Processed by Luminess, 75001 PARIS (FR) (Cont. next page)

유럽 특허 인정 증빙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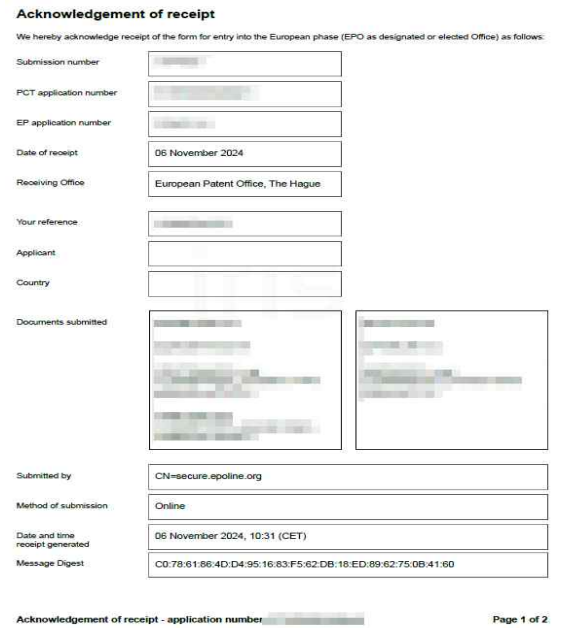

Acknowledgement of receipt

We hereby acknowledge receipt of the form for entry into the European phase (EPO as designated or elected Office) as follows:

Submission number	[redacted]
PCT application number	[redacted]
EP application number	[redacted]
Date of receipt	06 November 2024
Receiving Office	European Patent Office, The Hague
Your reference	[redacted]
Applicant	
Country	
Documents submitted	[redacted]
Submitted by	CN=secure.epoline.org
Method of submission	Online
Date and time receipt generated	06 November 2024, 10:31 (CET)
Message Digest	C0:78:61:86:4D:D4:95:16:83:F5:62:DB:18:ED:89:62:75:0B:41:60

Acknowledgement of receipt - application number [redacted] Page 1 of 2

유럽 특허 인정 증빙 예시 2

• (일본) Japan Patent Office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제출



整理番号:LQ08678A1 発送番号:050673 発送日:令和 6年 4月22日 1/E

出願番号通知

令和 6年 4月15日
特 許 庁 長 官

出願人 [redacted]

国内書面差出日 令和 6年 4月15日

[redacted]

国際出願番号 出願番号

特願 [redacted]

整理番号:LQ08678A1 (Proof) 提出日:令和 6年 4月15日 1

【書類名】 [redacted]
【発明の名称】 [redacted]
【技術分野】
【0001】
[redacted]

일본 특허 인정 증빙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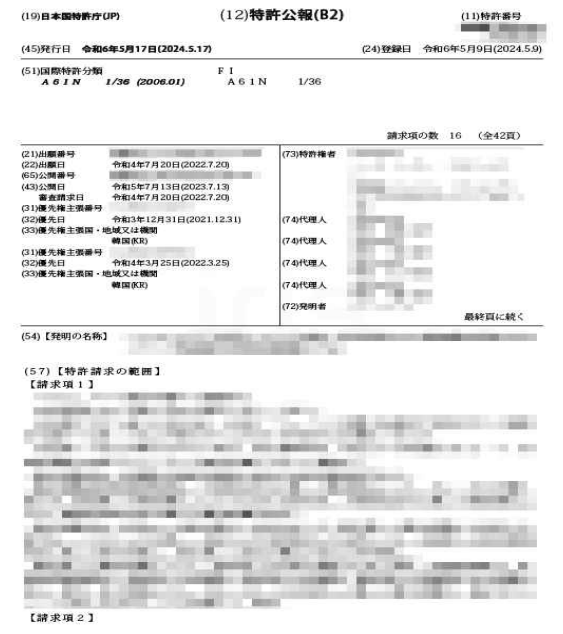

(19)日本国特許庁(JP) (12)特許公報(B2) (11)特許番号 [redacted]

(45)発行日 令和6年5月17日(2024.5.17) (24)登録日 令和6年5月9日(2024.5.9)

(51)国際特許分類
A61N 1/36 (2006.01)
F I
A61N 1/36

請求項の数 16 (全42頁)

(21)出願番号 [redacted]
(22)出願日 令和4年7月20日(2022.7.20)
(65)公開番号 [redacted]
(43)公開日 令和5年7月13日(2023.7.13)
審査請求日 令和4年7月20日(2022.7.20)
(31)優先権主張番号 [redacted]
(32)優先日 令和3年12月31日(2021.12.31)
(33)優先権主張国・地域又は機関
韓国(KR)
(31)優先権主張番号 [redacted]
(32)優先日 令和4年3月25日(2022.3.25)
(33)優先権主張国・地域又は機関
韓国(KR)

(73)特許権者 [redacted]
(74)代理人
(74)代理人
(74)代理人
(74)代理人
(72)発明者 [redacted]

最終頁に続く

(54)【発明の名称】 [redacted]

(57)【特許請求の範囲】
【請求項１】
[redacted]
【請求項２】

일본 특허 인정 증빙 예시 2

• (중국)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제출



国 家 知 识 产 权 局

518000

发文日：

2024 年 03 月 14 日

国际申请号：　　发文序号：

国际申请日：

申请人：

发明创造名称：

国 际 申 请 进 入 中 国 国 家 阶 段 通 知 书

上述国际申请，申请人办理的进入中国国家阶段手续，经审查，符合专利法实施细则第 120 条和第 121 条的规定，该国际申请已进入中国国家阶段。现将给予的国家申请号和确定的进入中国国家阶段的日期通知如下：

国家申请号：

进入中国国家阶段日期： 2024 年 02 月 08 日

经核实，国家知识产权局确认收到文件如下：
国际申请进入中国国家阶段声明（发明）1 份，每份 5 页
权利要求书 1 份，每份 3 页
说明书 1 份，每份 14 页
说明书附图 1 份，每份 12 页
说明书摘要 1 份，每份 1 页
摘要附图 1 份，每份 1 页
实质审查请求书 1 份，每份 1 页
专利代理委托书（中英文）1 份，每份 4 页
自收到本通知书之日起，申请人向国家知识产权局办理各种手续时，[illegible]上述国家申请号。

审 查 员：
联系电话：

国家知识产权局 专利申请业务章

250302 2023.03　纸件申请，回函请寄：100088 北京市海淀区蓟门桥西土城路 6 号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受理处收
电子申请，应当通过专利业务办理系统以电子文件形式提交相关文件。除另有规定外，以纸件等其他形式提交的文件视为未提交。

중국 특허 인정 증빙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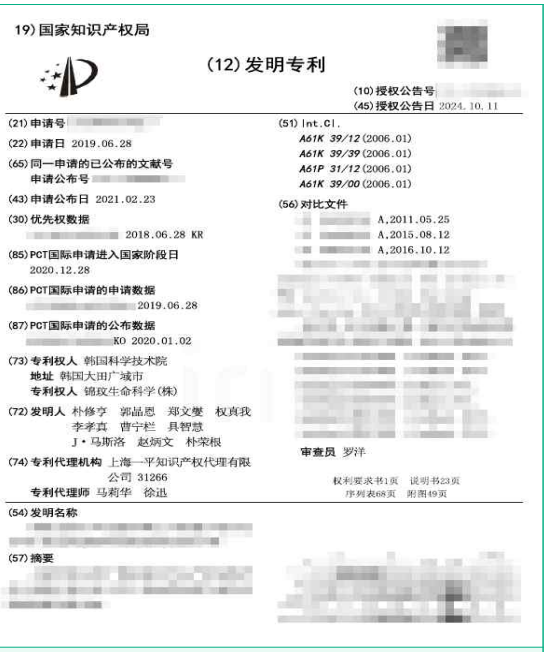

19）国家知识产权局

（12）发明专利

（10）授权公告号
（45）授权公告日 2024. 10. 11

（21）申请号
（22）申请日 2019.06.28
（65）同一申请的已公布的文献号
申请公布号
（43）申请公布日 2021.02.23
（30）优先权数据
2018.06.28 KR
（85）PCT国际申请进入国家阶段日
2020.12.28
（86）PCT国际申请的申请数据
2019.06.28
（87）PCT国际申请的公布数据
KO 2020.01.02
（73）专利权人 韩国科学技术院
地址 韩国大田广域市
专利权人 锦玟生命科学（株）
（72）发明人 朴修亨　郭晶恩　郑文燮　权真我
李孝真　曹宁栏　具智慧
J·马斯洛　赵炳文　朴荣根
（74）专利代理机构 上海一平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31266
专利代理师 马莉华　徐迅
（54）发明名称
（57）摘要

（51）Int.Cl.
A61K 39/12（2006.01）
A61K 39/39（2006.01）
A61P 31/12（2006.01）
A61K 39/00（2006.01）
（56）对比文件
A,2011.05.25
A,2015.08.12
A,2016.10.12
审查员 罗洋

权利要求书1页　说明书23页
序列表68页　附图49页

중국 특허 인정 증빙 예시 2

• (그 외 국가) 각 국가별 특허청이 발행한 공식 문서 제출



(19)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10) 2025.04.17

(12) **Gebrauchsmusterschrift**

(21) Aktenzeichen:
(22) Anmeldetag: **28.02.2025**
(47) Eintragungstag: **12.03.2025**
(45) Bekanntmachungstag im Patentblatt: **17.04.2025**

(51) Int Cl.: (2018.01)
G16H 80/00 (2018.01)
G06Q 40/08 (2012.01)

(73) Name und Wohnsitz des Inhabers:

(74) Name und Wohnsitz des Vertreters:

(54) Bezeichnung:

(57) Hauptanspruch:

독일 특허 인정 증빙 예시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Online Patent Information and Document Inspection Service

Case Details

Application Number	
Application Source	European
Application Language	Korean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Language	English
Status	Granted
Filing Date	16 March 2018
Publication Date	22 January 2020
Grant Date	Patent granted with effect from 12 January 2022 (Section 25(1))
Last Renewal Date	17 February 2022
Year of Last Renewal	5
Next Renewal Date	16 March 2023
PCT Application Number	
PCT Publication Number	(Dated 20 September 2018)
Priority Claimed	17 March 2017 in Republic of Korea - Document: 20170033770
Designated States	AL AT BE BG CH CY CZ DE DK EE ES FI FR GB GR HR HU IE IS IT LI LT LU LV MC MK MT NL NO PL PT RO RS SE SI SK SM TR
Application Title	
Grant Title	
Address for Service	
Applicant / Proprietor	

영국 특허 인정 증빙 예시



캐나다 특허 인정 증빙 예시



호주 특허 인정 증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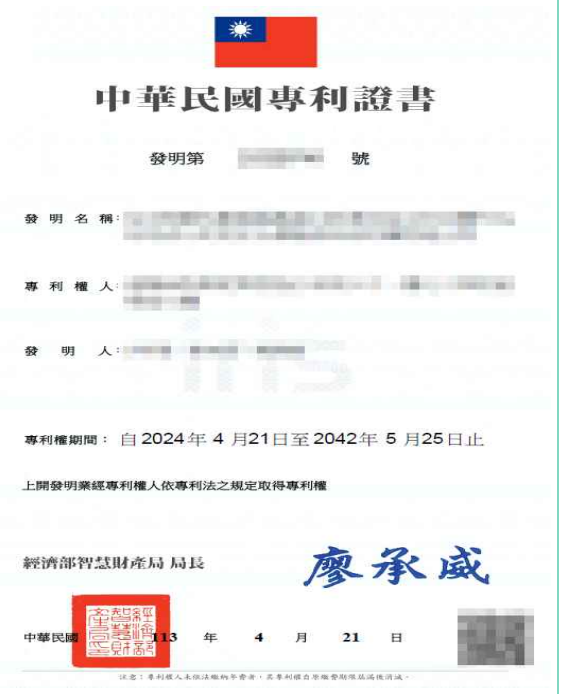

대만 특허 인정 증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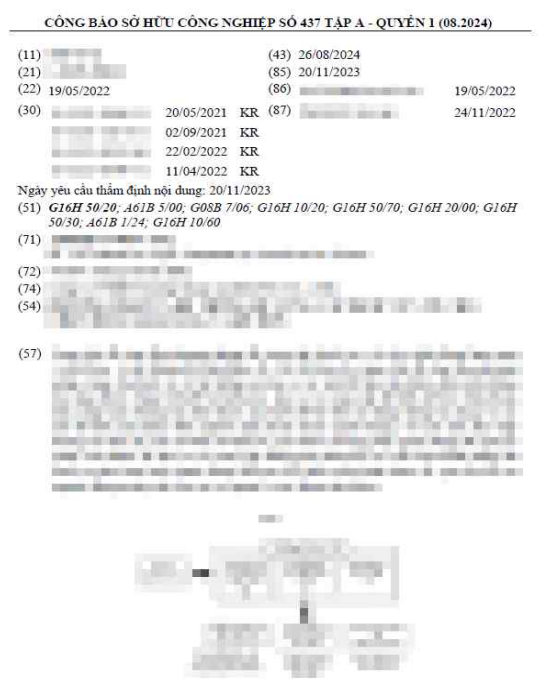

베트남 특허 인정 증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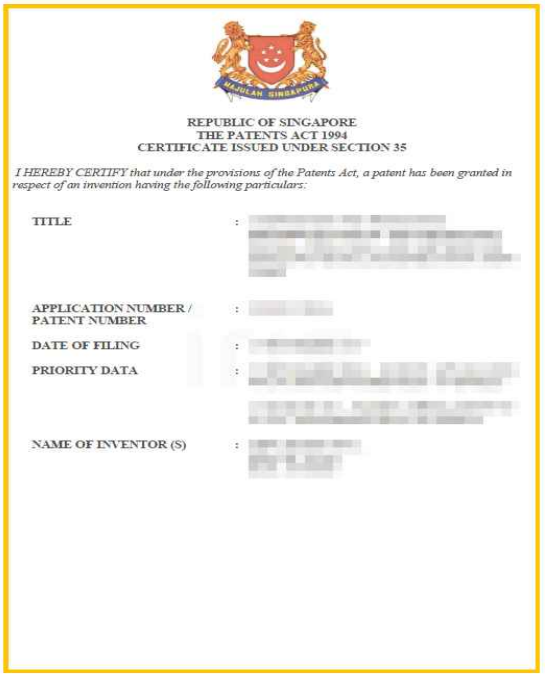

REPUBLIC OF SINGAPORE
THE PATENTS ACT 1994
CERTIFICATE ISSUED UNDER SECTION 35

I HEREBY CERTIFY tha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atents Act, a patent has been granted in respect of an invention having the following particulars:

TITLE : [redacted]

APPLICATION NUMBER / PATENT NUMBER : [redacted]

DATE OF FILING : [redacted]

PRIORITY DATA : [redacted]

NAME OF INVENTOR (S) : [redacted]

싱가포르 특허 인정 증빙 예시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ПАТЕНТ

НА ИЗОБРЕТЕНИЕ

№ [redacted]

[redacted]

Патентообладатели: [redacted]

Авторы: [redacted]

Заявка № [redacted]
Приоритет изобретения **20 декабря 2018 г.**
Д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естре изобрет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04 апреля 2023 г.**
Срок действ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ава
на изобретение истекает **17 декабря 2039 г.**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Ю.С. Зубов

러시아 특허 인정 증빙 예시



INTELLECTUAL PROPERTY INDIA

पेटेंट कार्यालय,भारत सरकार
पेटेंट प्रमाण पत्र
(पेटेंट नियमावली का नियम 74)

The Patent Office, Government Of India
Patent Certificate
(Rule 74 of The Patents Rules)

पेटेंट सं. / Patent No. : [redacted]

आवेदन सं. / Application No. : [redacted]

फाइल करने की तारीख / Date of Filing : [redacted]

पेटेंटी / Patentee : [redacted]

आविष्कारकों का नाम /Name of Inventor(s) : [redacted]

प्रमाणित किया जाता है कि पेटेंटी को, उपरोक्त आवेदन में यथाप्रकटित नामक आविष्कार के लिए, पेटेंट अधिनियम, 1970 के उपबंधों के अनुसार आज तारीख नवम्बर 2019 के आठवें दिन से बीस वर्ष की अवधि के लिए पेटेंट अनुदत्त किया गया है।

It is hereby certified that a patent has been granted to the patentee for an invention entitled [redacted] as disclosed in the above mentioned application for the term of 20 years from the 8th day of November 2019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atents Act,1970.

अनुदान की तारीख / Date of Grant : 25/04/2024

पेटेंट नियंत्रक
Controller of Patents

टिप्पणी - इस पेटेंट के नवीकरण के लिए फीस, यदि इसे बनाए रखा जाना है, नवम्बर 2021 के आठवें दिन की और उसके पश्चात प्रतीक वर्ष में उसी दिन देय होगी।

Note. - The fees for renewal of this patent, if it is to be maintained, will fall / has fallen due on 8th day of November 2021 and on the same day in every year thereafter.

인도 특허 인정 증빙 예시



[redacted]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CARTA PATENTE Nº [redacted]

O 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concede a presente PATENTE DE INVENÇÃO, que outorga ao seu titular a propriedade da invenção caracterizada neste título, em todo o território nacional, garantindo os direitos dela decorrentes, previstos na legislação em vigor.

(21) Número do Depósito: [redacted]

(22) Data do Depósito: 30/11/2018

(43) Data da Publicação Nacional: 05/05/2020

(51) Classificação Internacional: A61K 9/16; A61K 9/00; A61K 31/445.

(30) Prioridade Unionista: [redacted]

(54) Título: [redacted]

(73) Titular: [redacted]

(72) Inventor: [redacted]

(87) Publicação PCT: [redacted]

Prazo de Validade: 20 (vinte) anos contados a partir de 30/11/2018, observadas as condições legais

Expedida em: 11/06/2024

Assinado digitalmente por:
Alexandre Dantas Rodrigues
Diretor de Patentes, Programas de Computador e Topografias de Circuitos Integrados

브라질 특허 인정 증빙 예시

▌성과입력 주의사항

- 특허명은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정식 명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해외 특허의 경우 영어권 국가는 영문, 그 외 국가는 국문으로 입력하여야 함
- 특허번호는 해당국 특허번호 형식에 맞게 입력하여야 함

▌각 국가별 특허번호 체계▐

구분	출원번호 체계	등록번호 체계
대한민국	출원유형(2자리)-출원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출원유형(2자리)-일련번호(7자리)
PCT	PCT/KR1234/123456	-
미국	12/123456	1234567 or 12345678
유럽	12345678.*	1234567
일본	1234-123456	1234567
중국	123412345678.*	ZL123412345678.*
독일	121234123456.*	121234123456
영국	1234567.*	1234567
캐나다	1234567	1234567
대만	123456789	I123456

※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1. 주요국 특허번호 체계"를 참조

- PCT 특허가 각국 국내 단계(National Phase)에 진입한 경우, 해당국의 출원 성과로 입력하여야 함
- 유럽 특허가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등록된 이후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유럽특허 조약) 회원국(영국, 프랑스 등)에 개별 등록된 경우, 유럽연합 외 해당국의 등록특허로 추가 입력하여야 함

▌유럽 특허가 EPC 회원국에 개별 등록된 경우 입력 예시▐

출원(등록)국	출원(등록)구분	출원(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기관	출원(등록)일
EP	등록	1234567	OOOOO	XXXXX	20250101
GB	등록	1234567	OOOOO	XXXXX	20250101
FR	등록	1234567	OOOOO	XXXXX	20250101
CH	등록	1234567	OOOOO	XXXXX	20250101

• 주요 입력 항목은 특허공보 등 증빙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명칭이나 INID 코드로 확인할 수 있음

※ INID(Internationally agreed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bibliographic Data)코드 : 국가별로 발간되는 특허정보를 언어와 상관없이 식별하기 위해 WIPO에서 특허문서에 부여한 코드(예를 들어 특허 출원번호의 INID코드는 '21'임)

출원(등록)국		출원(등록) 구분	출원(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기관	출원(등록)일
PCT	XI	출원	(21)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54)Title	(71)Applicant	(22)International Filing Date
미국	US	출원	(21)Appl. No.	(54)	(71)Applicant	(22)Filed
		등록	(10)Patent No.	(54)	(73)Assignee	(45)Date of Patent
일본	JP	출원	(21)出願番号	(54)発明の名称	(71)出願人	(22)出願日
		등록	(11)特許番号	(54)発明の名称	(73)特許権者	(24)登録日
유럽 연합	XU	출원	(21)Application Number	(54)	(71)Applicant	(22)Date of filing
		등록	(11)	(54)	(73)Proprietor	(45)Date of publication and mention of the grant of the patent
중국	CN	출원	(21)申请号	(54)发明名称	(71)申请人	(22)申请日
		등록	(21)申请号 앞에 'ZL'을 붙임	(54)发明名称	(73)专利权人	(45)授权公告日
독일	DE	출원	(21)Aktenzeichen	(54)Bezeichnung	(71)Anmelder	(22)Anmeldetag
		등록	(10)	(54)Bezeichnung	(73)Patentinhaber	(45)Veröffentlichungstag der Patenterteilung
영국	GB	출원	(21)Application No	(54)Title of the Invention	(71)Applicant(s)	(22)Date of Filing
		등록	(11)	(54)Title of the Invention	(73)Proprietor(s)	(45)Date of B Publication
캐나다	CA	출원	(21)	(54)Title	(71)Applicant	(22)Filing Date
		등록	(11)	(54)Title	(73)Owner	(45)Issue Date
대만	TW	출원	(21)申請案號	(54)發明名稱	(71)申請人	(22)申請日
		등록	(11)證書號數	(54)名稱	(71)申請人	(45)公告日

* 위 표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INID코드를 나타냄
* PCT 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한 경우 출원일로 '(22)출원일'이 아닌 '(85)국내단계진입일'을 입력해야 함
* 중국 등록공보는 INID 코드 (10)번에 등록번호가 아닌 공고번호가 표시됨에 유의(등록번호는 등록증에서 '專利号'를 확인하거나 '(21)출원번호' 앞에 'ZL'을 붙여서 입력하면 됨)

해외 특허성과 입력항목

• 사사(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발생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입력 과제번호와 사사에 명시된 과제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 동일한 특허 성과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에 입력하는 경우, 각 세부과제별 기여율은 사사에 기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당 기여율과 일치하도록 입력하여야 함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특허 성과 발생연도는 해당 특허가 실제 출원/등록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개일자를 입력한 경우 당해연도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출원/등록된 특허는 성과로 불인정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전에 출원/등록되었다가 2025년에 공개된 특허는 성과로 불인정
- (사사 누락) 특허 사사(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과제지원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사에 기재된 과제번호와 성과 입력 과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내특허 출원 당시 사사를 기재하지 못하였거나 오기재한 경우, 특허청에 사사 보정을 신청하여 보정서 발급 후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하면 성과로 인정
- (특허 미해당)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특허 이외의 산업재산권을 입력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개인명의 특허) 특허권자에 개인이 포함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개인 명의 또는 법인+개인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 해당함
  - 개인명의 특허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특허를 연구기관 명의로 환원하거나, ②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명자 미포함)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발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증빙 미비) 해당국 특허청이 발행한 공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유형별 필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요 검증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해외 대리인(특허법인)의 공문·이메일, 특허 신청서, 연구기관 내부 문서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특허법인 공문



특허 신청 자료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개인명의 특허 성과 개념

– 개인명의 특허 성과란, 정부 R&D 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발명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개인(연구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경우를 의미함

※ 개인 단독명의(홍길동), 개인 공동명의(홍길동&유관순), 연구기관·개인 공동명의(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홍길동)

– 개인명의 특허 성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게 연구성과를 귀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 R&D 특허 성과 검증 시 일단 불인정 처리함

– 연구개발기관은 증빙자료 제출 등을 통해 특허 성과가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적법성을 확인받아야만 정부 R&D 특허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개인명의 특허 성과는 적법한 권리자 명의(기관 명의)로 환원될 때까지 전문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됨

• 개인명의 특허 성과 관리방법

–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법하게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특허 성과에 대해 연구기관 명의로의 환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의 제재조치 부여 가능

–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 성과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명의자에게 연구기관 명의로의 환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명의환원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은 특허법에 의거하여 명의환원 조치가 가능함

• 대표적인 개인명의 특허 성과 인정 사례별 소명자료 예시

– (Case 1. 연구개발기관 유형이 개인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01~79', '90~99'에 속하는 경우

– (Case 2. 연구개발기관 유형이 법인격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이며,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 비법인사단의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2'이며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Case 3. 연구개발기관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할 권리를 포기하여 발명자인 종업원 개인 명의로 출원) ① 직무발명 불승계 및 권리포기 문서, ② 개인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 (Case 4.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이전 계약 등을 통해 개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해당 개인의 명의로 출원) ① 기술이전 계약서, ② 종업원의 권리 양수의사 표시 문서 등

개인명의 특허 관련 유의사항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특허명) 특허명이 해당국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정식 명칭(Full-name)으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 (출원/등록번호) 해당국의 출원/등록번호 형식에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 주요국 외 기타 국가의 특허 성과를 입력하는 경우, 출원/등록번호 형식에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으나 증빙자료에 기재된 형태로 입력
- (출원/등록일자) 특허 출원/등록일자 기준으로 해당연도 성과가 맞는지 확인함
  - PCT 특허가 개별국에 진입한 경우, 국내단계 진입일(National Phase Entry Date)을 출원일로 입력
- (출원/등록기관) 특허 출원/등록기관이 복수인 경우 누락 없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며, 개인명의 특허 해당 여부도 확인함
- (사사) 사사에 기재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과제정보가 성과입력 과제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함
- (기여율) 사사에 기재된 해당 과제 기여율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2차 검증(자체 증빙 보완)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KIPRIS, WIPO 등을 활용하여 자체 증빙 보완 및 2차 검증을 실시함

- (KIPRIS) KIPRIS(https://www.kipris.or.kr) 사이트의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특허공보를 다운로드하여 IRIS 시스템에 추가 등록 후 검증을 실시함
- (WIPO) KIPRIS에서 검색되지 않는 해외 특허 중 PCT 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한 특허는 WIPO(https://www.wipo.int/portal/en) 사이트의 PATENTSCOPE database 검색을 통해 PCT 특허의 International Application Status Report를 다운로드하여 IRIS 시스템에 추가 등록 후 검증을 실시함
  - PCT 특허 검색 결과 화면의 Patent Family, National Phase 등 항목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한 특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WINTELIPS 등) 이 외에도 유료 사이트인 WINTELIPS(https://www.wintelips.com) 등을 통해 특허 정보를 확인하여 검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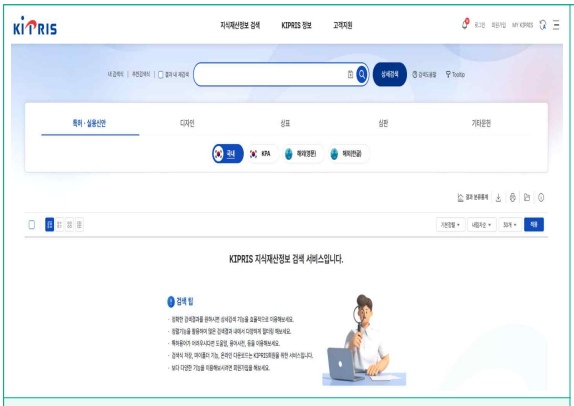

KIPRIS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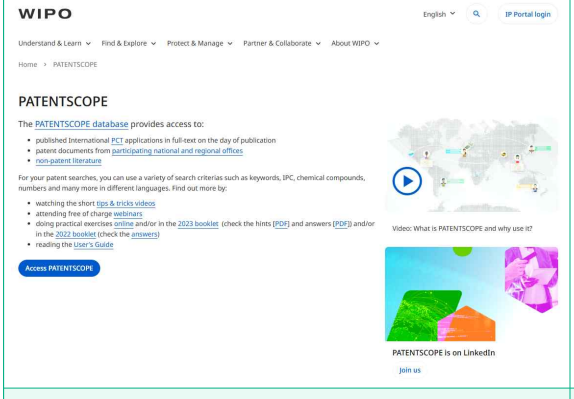

WIPO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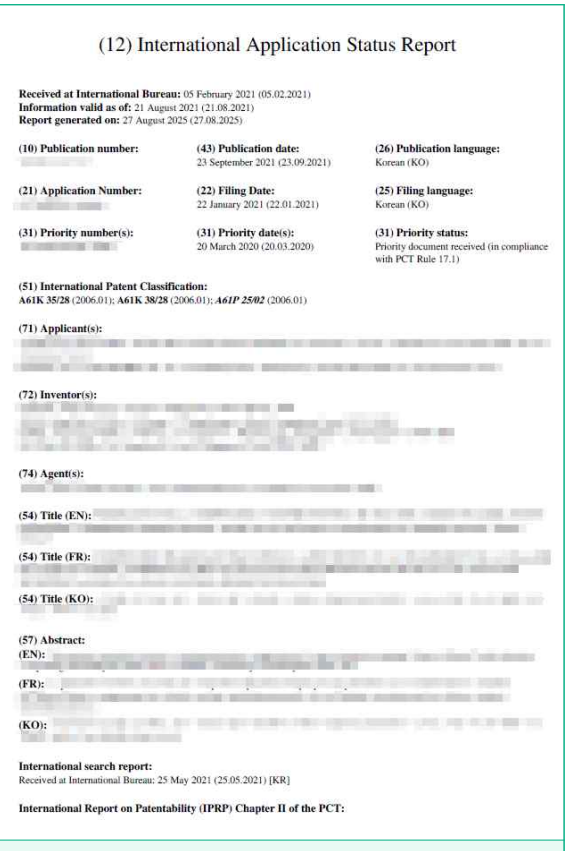

(12) International Application Status Report

Received at International Bureau: 05 February 2021 (05.02.2021)
Information valid as of: 21 August 2021 (21.08.2021)
Report generated on: 27 August 2025 (27.08.2025)

(10) Publication number:
(43) Publication date: 23 September 2021 (23.09.2021)
(26) Publication language: Korean (KO)
(21) Application Number:
(22) Filing Date: 22 January 2021 (22.01.2021)
(25) Filing language: Korean (KO)
(31) Priority number(s):
(31) Priority date(s): 20 March 2020 (20.03.2020)
(31) Priority status: Priority document received (in compliance with PCT Rule 17.1)

(51)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61K 35/28 (2006.01); **A61K 38/28** (2006.01); ***A61P 25/02*** (2006.01)

(71) Applicant(s):

(72) Inventor(s):

(74) Agent(s):

(54) Title (EN):

(54) Title (FR):

(54) Title (KO):

(57) Abstract:
(EN):
(FR):
(KO):

International search report:
Received at International Bureau: 25 May 2021 (25.05.2021) [KR]

International Report on Patentability (IPRP) Chapter II of the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Status Report

(3)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특허 유형별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사사가 누락된 경우, 사사에 기재된 과제번호와 성과 입력 과제번호가 불일치 하는 경우 등 : 특허청에 사사 보정 신청 후 보정서 추가 제출

<국내출원>

– 출원번호통지서(or 출원사실증명원)만 제출한 경우 : 사사(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를 확인할 수 있는 서지사항(or 특허출원서) 추가 제출

– 서지사항(or 특허출원서)만 제출한 경우 :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원번호통지서(or 출원사실증명원) 추가 제출

<국내등록>

– 특허증만 제출한 경우 : 사사(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특허공보 추가 제출

• 개인명의 특허 보완

– 개인명의 특허로 확인된 경우, 우선 개인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요청

1) 개인사업자가 아니면서 예외적 인정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연구기관 명의로 환원하도록 안내 및 보정서 추가 제출 요청

2) 개인사업자가 아니면서 예외적 인정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유형별 소명자료 추가 제출 요청

NO	예외적 인정 사례 예시	소명자료
1	연구개발기관 유형이 개인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2	연구개발기관 유형이 법인격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이며,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 비법인사단의 고유번호증
3	연구개발기관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할 권리를 포기하여 발명자인 종업원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 직무발명 불승계 및 권리포기 문서 • 개인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4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이전 계약 등을 통해 개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해당 개인의 명의로 출원한 경우	• 기술이전 계약서 • 종업원의 권리 양수의사 표시 문서 등

개인명의 특허 보완 프로세스

<PCT 출원>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 상 출원인이 2개 이상 기관일 경우 : 모든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출원사실증명원(or PCT 출원서) 추가 제출
- PCT 출원서만 제출한 경우 :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or 출원사실증명원) 추가 제출

<국외 출원/등록>

- 해외 대리인(특허법인)의 공문·이메일, 특허 신청서, 연구기관 내부 문서 등을 제출한 경우 : 해당국 특허청이 발행한 공식 문서 추가 제출
- 영어 이외의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등)로 작성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번역문 또는 주요 검증 항목(특허번호, 특허명, 특허권자명, 출원/등록일자)를 하이라이트 처리한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특허 출원/등록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특허 출원/등록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성과인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지식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프로그램 등) 성과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특허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4)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지식재산권(특허)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입력방법	O	입력방법은 '직접입력'과 '검색입력' 중 선택 * 검색을 통한 성과입력 시, KIPRIS를 통해 특허정보 검색/확인 및 자동 입력 * 특허번호 형식은 부록 "1. 주요국 특허번호 체계" 참고
특허의 명칭	O	특허명을 입력
출원/등록 구분	O	'출원', '등록' 중 선택
출원/등록 국가	O	출원/등록 국가를 선택 * PCT 출원은 '대한민국' 선택
출원/등록 번호	O	출원/등록 번호를 입력(검색을 통한 입력방법 선택 시, 자동으로 입력됨)
출원/등록 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출원 성과는 출원일자, 등록 성과는 등록일자를 선택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해외출원 구분	O	'해외미출원(국내)', 'PCT국제출원', '삼극출원', 'EPO출원', '해외(개별국)출원' 중 선택
지식재산권 공개번호		특허의 공개번호를 입력
지식재산권 공개번호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공개일자를 선택
우선권 주장번호		선출원 특허가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번호를 입력
지식재산권 활용여부	O	'활용' 및 '미활용(활용예정)' 중 선택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지식재산권의 활용 유형 중 선택(다중 선택 가능)
인물/기관	O	출원/등록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명자명 등 입력 (다수일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 * 출원/등록인명 : 출원/등록기관명 입력 * 출원/등록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 출원/등록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발명자명 : 발명자 이름 입력
기타정보	O	해외출원/등록범위, 개인사업자 포함 여부, 사사개수, 초록 등 입력 * 해외출원/등록범위 : '오극특허', '삼극특허', '일반해외특허', '국내특허' 중 선택 * 개인사업자 포함 여부 : "예"를 선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 초록 : 특허의 초록 내용을 작성
공개/비공개	O	특허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7) 지식재산권(특허) 성과 등록 (1/2)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지식재산권(특허)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지식재산권(특허)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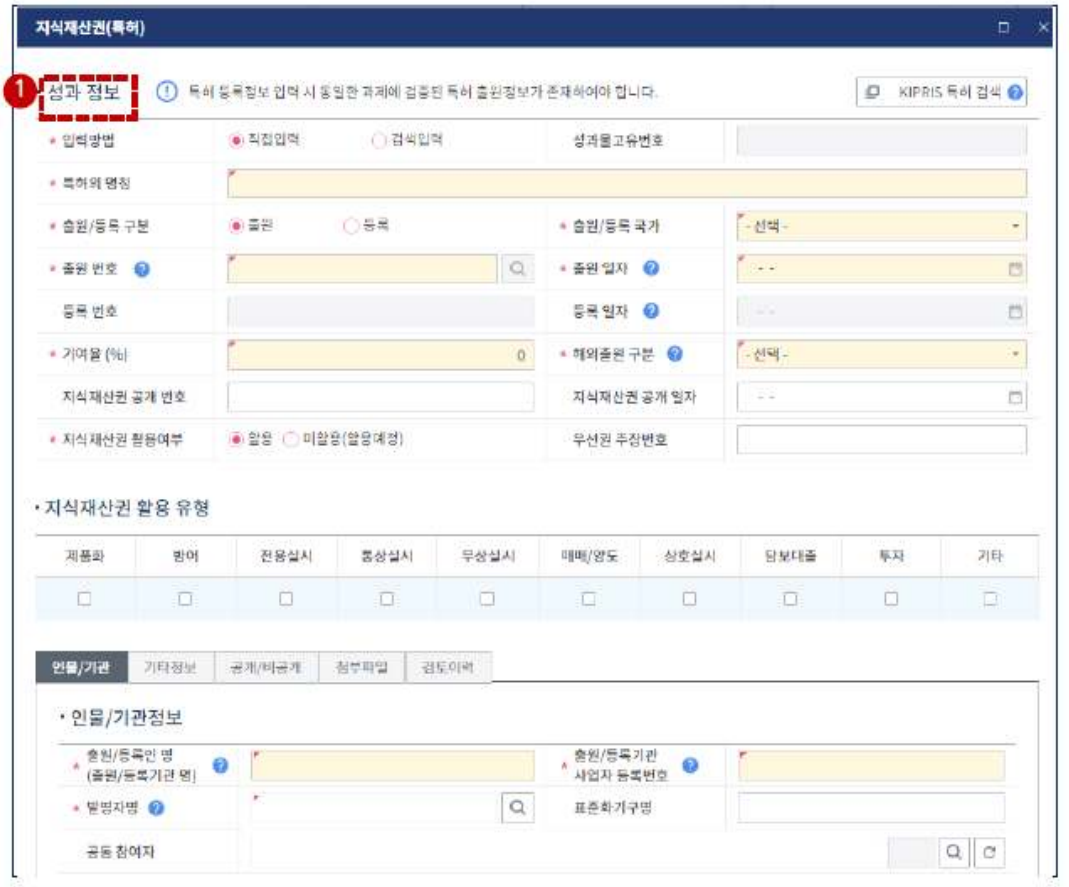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특허의 명칭, 출원/등록구분, 기여율 등의 성과정보를 입력합니다.

※ 출원/등록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 국내특허의 경우, 등록특허 정보는 출원정보 입력 후 전문기관에서 접수처리해야 등록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제특허는 출원정보 없이도 등록특허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지식재산권(특허) 성과 등록 (2/2)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지식재산권(특허) 팝업 페이지입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등록된 특허를 조회하여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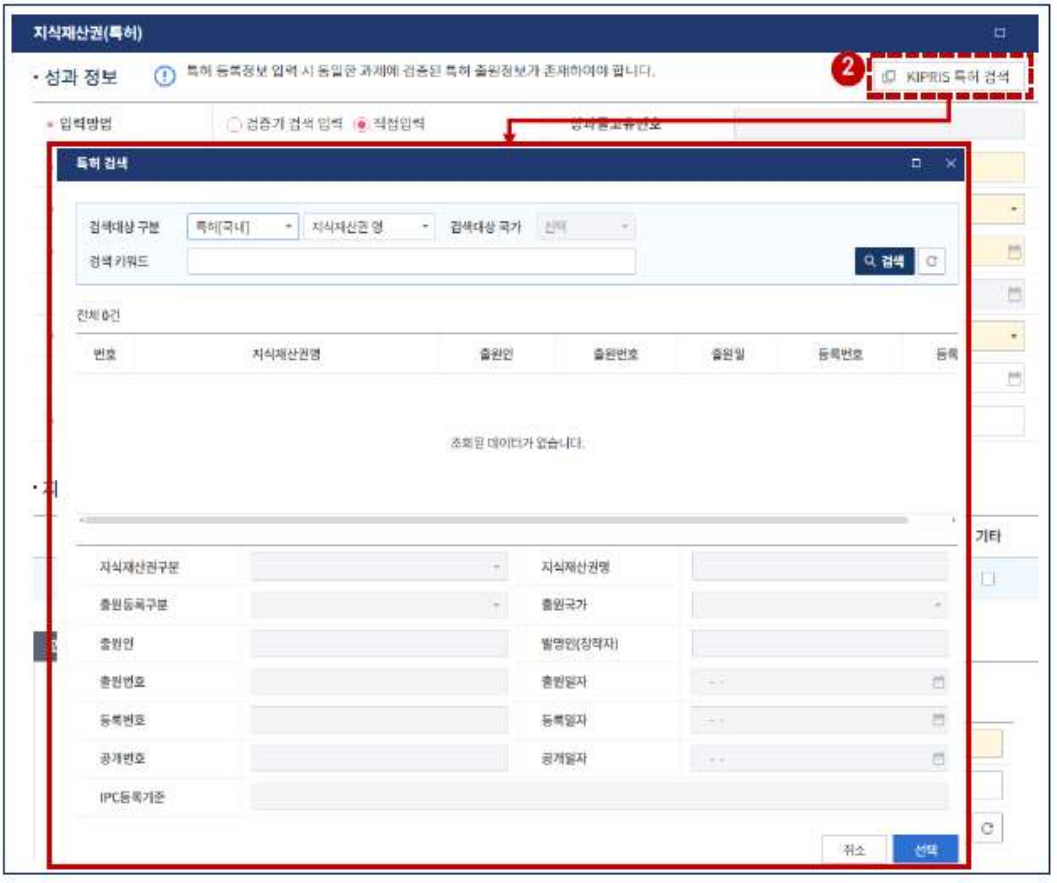

상세 Guide

② KIPRIS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지식재산권을 선택등록 할 경우 입력 방법이 검증기 검색 입력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검색대상 구분 설정 후 검색 키워드를 작성하여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지식재산권을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부분 외에 나머지 빈칸 입력 후 임시저장하거나 제출합니다.

※ 검색 결과 등록특허도 존재하는 출원특허 성과를 등록하고자 하실 경우, 등록특허 일자로 성과발생년도가 인식되어 검색입력 방식이 아닌 **직접입력 방식을 통해 출원특허 성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3절 지식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프로그램 등)

기타 지식재산권 성과

•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 가운데 재산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내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에 해당함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재산권 구분, 출원/등록 구분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재산권 유형 및 출원/등록 성과 구분이 정확한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출원/등록 번호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지식재산권 번호와 증빙자료 상 지식재산권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출원/등록 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출원/등록 일자와 증빙자료 상 출원/등록 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지식재산권명, 출원인명, 발명자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지식재산권명, 출원인명, 발명자명과 증빙자료 상 지식재산권명, 출원인명, 발명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재산권 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구분,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 국가, 출원인명, 발명자명 등

▌증빙자료 종류

- 해당국 특허청이 발행한 공식 문서
  - (출원) 공개공보, 출원사실증명원 등
  - (등록) 등록공보, 등록증 등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실용신안공보</td>
<td>디자인공보</td>
<td>상표공보</td>
</tr>
</table>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지식재산권 성과 발생연도는 해당 특허가 실제 출원/등록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개일자를 입력한 경우 당해연도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성과로 불인정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전에 출원/등록되었다가 2025년에 공개된 지식재산권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해당국 특허청이 발행한 공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해외 대리인(특허법인)의 공문·이메일, 출원/등록 신청서, 연구기관 내부 문서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재산권 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구분,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 국가, 출원인명, 발명자명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2차 검증(자체 증빙 보완)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KIPRIS 등을 활용하여 자체 증빙 보완 및 2차 검증을 실시함

- KIPRIS(https://www.kipris.or.kr) 사이트의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공보를 다운로드하여 IRIS 시스템에 추가 등록 후 검증을 실시함

(3)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지식재산권 유형별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4)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지식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프로그램 등)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입력방법	O	입력방법은 '직접입력'과 '검색입력' 중 선택 * 검색을 통한 성과입력 시, KIPRIS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확인 및 자동 입력
재산권 구분	O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기타' 중 선택
발명자명 및출원인명	O	발명자 이름 및 출원/등록기관명을 입력 * 다수일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
지식재산권명	O	지식재산권명을 입력
출원/등록 구분	O	'출원', '등록' 중 선택
출원/등록 국가	O	출원/등록 국가를 선택
출원/등록 번호	O	출원/등록 번호를 입력(검색을 통한 입력방법 선택 시, 자동으로 입력됨)
출원 및 등록 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출원 성과는 출원일자, 등록 성과는 등록일자를 선택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해외출원 구분	O	'해외미출원(국내)', 'PCT국제출원', '삼극출원', 'EPO출원', '해외(개별국)출원' 중 선택
IPC등록기준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체계에 따른 분류 코드를 입력
우선권 주장번호		선출원 지식재산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번호를 입력
개인사업자포함여부	O	출원인 중 개인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택
해외출원/등록범위	O	'오극특허, '삼극특허', '일반해외특허', '국내특허' 중 선택
사사개수		사사 개수를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O	출원/등록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다수일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 * 개인명의 특허는 '000-00-00000'으로 입력
초록	O	지식재산권의 초록 내용을 작성
지식재산권 공개 번호		지식재산권의 공개 번호를 입력
지식재산권 공개 일자		지식재산권의 공개 일자를 입력
공동 참여자 목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참여한 인력을 선택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	O	'활용' 및 '미활용(활용예정)' 중 선택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지식재산권의 활용 유형 중 선택(다중 선택 가능)
공개/비공개	O	특허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5) 지식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규격,프로그램 등) 성과 등록 (1/3)

- 통합업무포털> 과제수행> 성과> 성과등록> 지식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규격,프로그램 등)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지식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규격,프로그램 등)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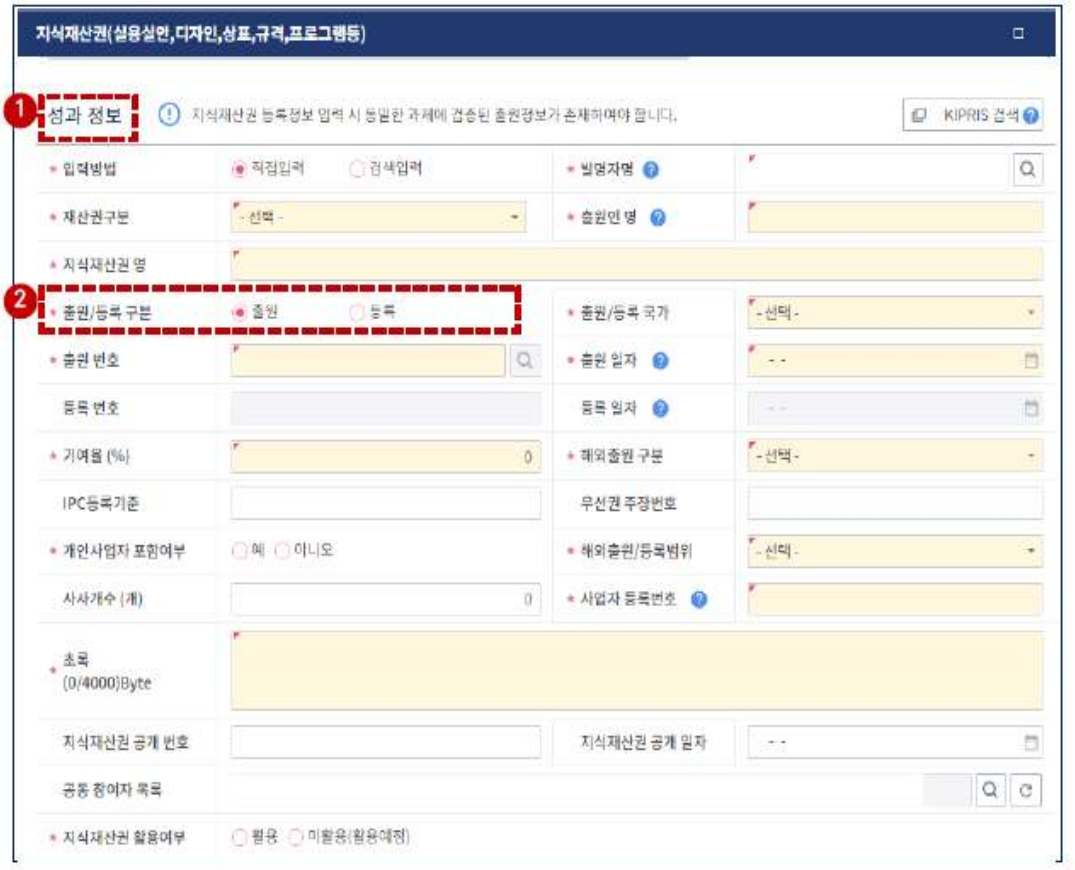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재산권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구분, 출원번호, 발명자명 등의 성과정보를 입력합니다.
※ 출원의 경우 출원일자의 연도, 등록의 경우 등록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② 출원/등록 구분 항목의 '출원'정보를 제출 후 전문기관 접수 완료되어야 '등록' 정보 제출 가능합니다.
1) 출원/등록 구분 항목의 '출원' 정보 제출
2) 전문기관 담당자가 지식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프로그램 등) 성과의 출원/등록 구분의 '출원'성과 접수처리
3) 출원/등록 구분 항목의'등록' 정보 제출

5) 지식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규격,프로그램 등) 성과 등록 (2/3)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지식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규격,프로그램 등) 팝업 페이지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조회하여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Guide

③ KIPRIS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지식재산권을 선택 등록 할 경우 입력 방법이 '검색 입력'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④ 검색대상 구분을 설정하고 검색 키워드를 작성하여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조회된 성과 목록 중 해당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를 클릭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성과물의 정보가 자동 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부분 외에 나머지 빈칸 입력 후 임시저장하거나 제출합니다.

5) 지식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규격,프로그램 등) 성과 등록 (3/3)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지식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규격,프로그램 등) 팝업 페이지
- 연구자가 지식재산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규격,프로그램 등)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Guide

⑥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을 체크합니다.

※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은 복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4절 사업화현황

사업화현황 성과
• 수행과제를 통해 개발된 사업화 기반 기술 및 제품 성과로서 사업화 형태에 따라 창업, 상품화, 공정개선으로 구분하며,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를 등록하려면 사업화현황 성과를 먼저 등록하여야 함 – (매출실적) 무형의 개발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한 후 이를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시제품 제작, 파일럿 생산 등을 통한 소량 생산·판매는 인정하지 않음) – (비용절감) 설비, 자재 등 생산 과정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제품 생산비용이 절감된 경우 – (고용창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연구직, 생산직 등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 (경제적파급효과) 국내외 매출 증대액, 생산성 향상액, 수입대체액 등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대 성과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1.1. 창업

창업 성과
• 새롭게 개발된 기술 또는 서비스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성과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사업화 업체명, 대표이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창업연도 등과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1.2. 상품화

상품화 성과
•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화에 성공한 성과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사업화 제품명(대상기술명), 업체명, 상품화 연도 등과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1.3. 공정개선

공정개선 성과
• 기술사업화 또는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한 공정(Product process) 개발 및 개선에 성공한 성과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사업화 제품명(대상기술명), 업체명, 공정개선 연도 등과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2.1. 창업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사업화 업체명, 대표이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창업연도 등

▌증빙자료 종류

- 사업자등록증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자 :
개 업 연 월 일 : 2024 년 10 월 31 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본 점 소 재 지 :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종목
발 급 사 유 : 신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24 년 11 월 05 일
삼 성 세 무 서 장
국세청

창업 인정 증빙 예시(사업자등록증)

2.2. 상품화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사업화 제품명(대상기술명), 업체명, 상품화 연도 등

▌증빙자료 종류

- 공문, 상품 매뉴얼(설명서), 관련 보고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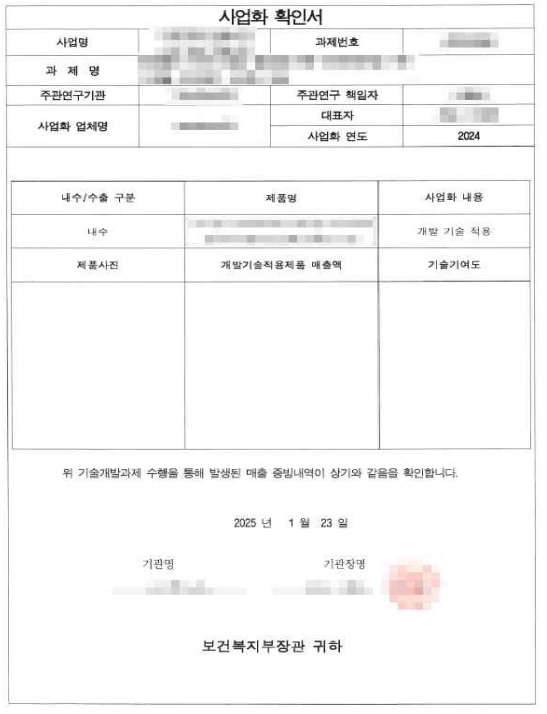

사업화 확인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사업화 업체명		대표자	
		사업화 연도	2024

내수/수출 구분	제품명	사업화 내용
내수		개발 기술 적용
제품사진	개발기술적용제품 매출액	기술기여도

위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된 매출 증빙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1 월 23 일

기관명 기관장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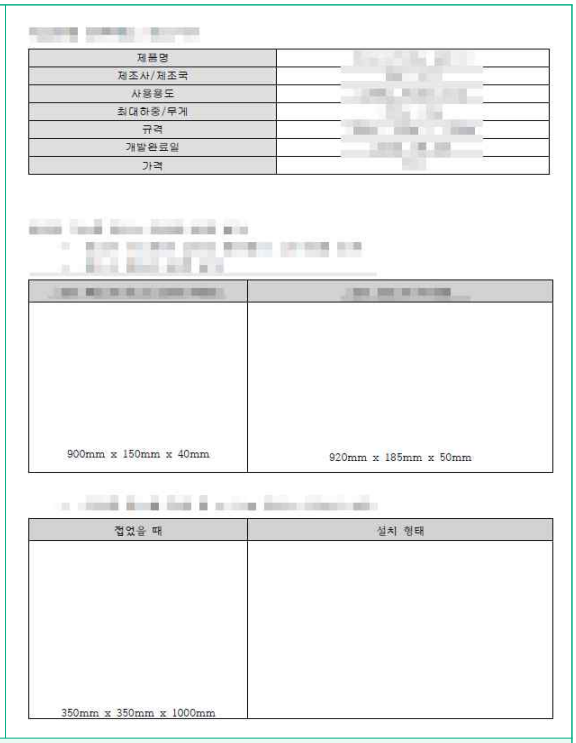

제품명	
제조사/제조국	
사용용도	
최대하중/무게	
규격	
개발완료일	
가격	

900mm x 150mm x 40mm	920mm x 185mm x 50mm

접었을 때	설치 형태
350mm x 350mm x 1000mm	

상품화 인정 증빙 예시

2.3. 공정개선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사업화 제품명(대상기술명), 업체명, 공정개선 연도 등

▌증빙자료 종류

- 공문, 공정개발 보고서, 표준작업지침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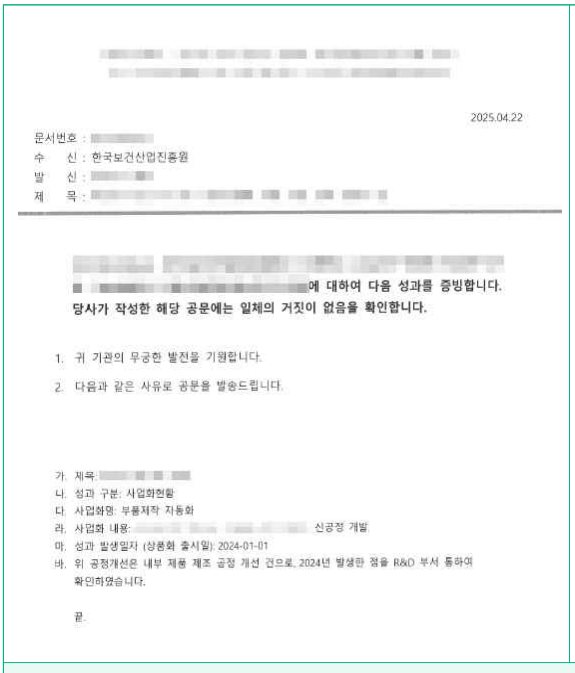

2025.04.22

문서번호 :
수 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 신 :
제 목 :

에 대하여 다음 성과를 증빙합니다.
당사가 작성한 해당 공문에는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문을 발송드립니다.

가. 제목:
나. 성과 구분: 사업화현황
다. 사업화명: 부품제작 자동화
라. 사업화 내용: 신공정 개발
마. 성과 발생일자 (상품화 출시일): 2024-01-01
바. 위 공정개선은 내부 제품 제조 공정 개선 건으로, 2024년 발생한 점을 R&D 부서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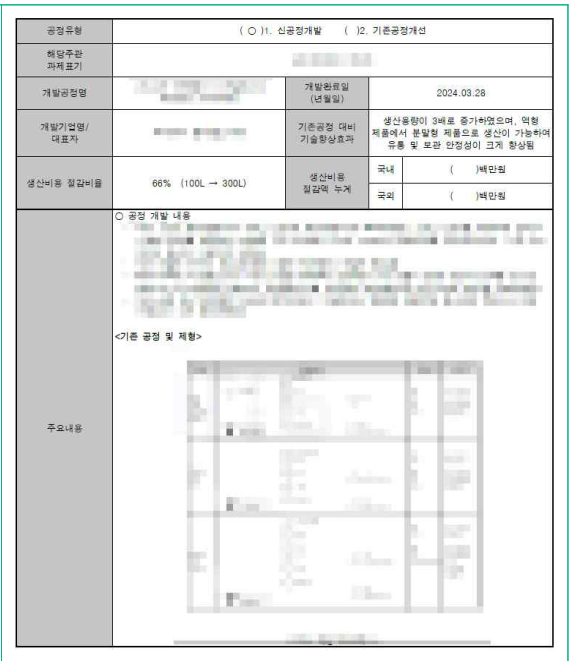

공정유형	(○)1. 신공정개발 ( )2. 기존공정개선		
해당주관 과제표기			
개발공정명		개발완료일 (년월일)	2024.03.28
개발기업명/ 대표자		기존공정 대비 기술향상효과	생산용량이 3배로 증가하였으며, 역형 제품에서 분말형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유통 및 보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됨
생산비용 절감비율	66% (100L → 300L)	생산비용 절감액 누계	국내 ( )백만원
			국외 ( )백만원
주요내용	○ 공정 개발 내용		
	<기존 공정 및 제형>		

공정개선 인정 증빙 예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실제 창업/상품화/공정개선이 이루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연계 성과(매출실적 등) 발생연도를 입력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이루어진 창업/상품화/공정개선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전자세금계산서 등 연계 성과(매출실적 등)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성과로 불인정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사업화명, 사업화제품명(대상기술명), 사업화 형태, 사업화연도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사업화 형태별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연계 성과(매출실적 등)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 사업화 형태별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및 적합한 연계 성과 탭에 성과 추가 입력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창업/상품화/공정개선 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창업/상품화/공정개선 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사업화현황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사업화명	O	사업화명을 입력
사업화 제품명(대상기술명)		수행과제를 통해 개발된 사업화 기반 제품명 및 기술명을 입력
사업화 방식	O	'기술(직접)실시', '제3자실시', '미발생' 중 선택
사업화형태	O	'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중 선택
국내외 구분		'국내', '국외' 중 선택
사업화 년도	O	창업/상품화/공정개선이 이루어진 연도를 입력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사업화 내용	O	사업화 세부 내용을 서술
기술이전 유형	O	사업화 방식이 '제3자실시'인 경우 선택
기술이전 계약 일자		사업화 방식이 '제3자실시'인 경우 작성
사업화 업체명	O	창업/상품화/공정개선을 직접 수행한 업체명을 입력
기술이전 계약액(원)		사업화 방식이 '제3자실시'인 경우 작성
사업화 업체 대표이사	O	업체 대표자 성명을 입력
사업화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O	업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기술이전 계약 내용		사업화 방식이 '제3자실시'인 경우 작성
관련 특허 내용		해당 사업화와 관련하여 창출된 특허가 있는 경우 작성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사업화 완료 일자를 선택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매출실적		해당 사업화로 인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작성
비용절감		해당 사업화로 인해 비용이 절감된 경우 작성
고용창출		해당 사업화로 인해 신규 인력이 채용된 경우 작성
경제적파급효과		해당 사업화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경우 작성
공개/비공개	O	사업화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10) 사업화 현황 성과 등록 (1/6)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사업화 현황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사업화 현황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Guide

①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특성반영 탭에서
사업화현황,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 각각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화 발생 후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가 발생하므로 사업화현황 성과를 먼저 등록해야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창출 성과의 경우는 사업화 없이 성과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사업화현황 성과 등록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화현황 성과항목 등록 시 해당 화면에서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도 같이 제출 가능.
✓ 성과 제출 후 전문기관에 의해 반려되면 동일한 사업화를 통해 제출한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도 함께 반려됩니다 → 사업화현황이 수정되면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의 사업화현황 내용 수정 필요하기 때문

10) 사업화 현황 성과 등록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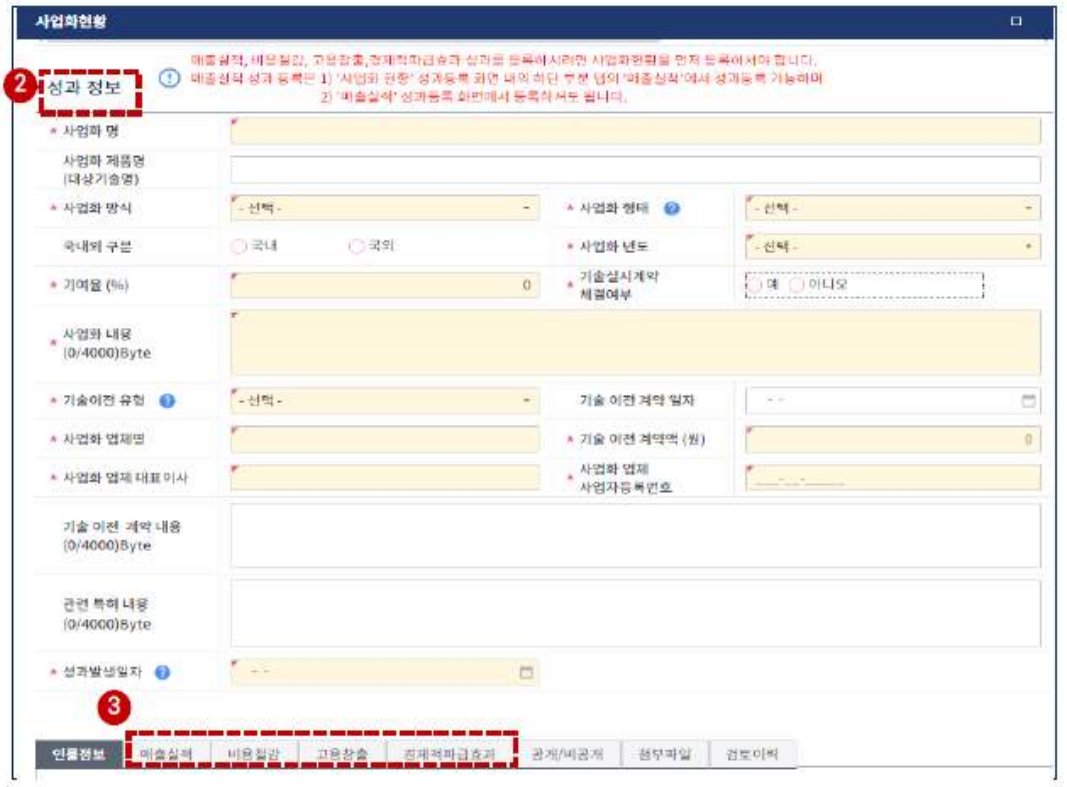

상세 Guide

② 사업화 명,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등의 성과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화년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③ 사업화현황 임시저장 후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도 사업화현황 화면의 아래 탭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화현황의 아래 탭에서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를 하나라도 제출하면 사업화 현황 성과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화현황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매출실적,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중 제출된 성과를 모두 반려받아 삭제해야 사업화현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화현황 수정 시 해당 사업화현황 성과정보가 입력되어 제출된 매출실적 등의 성과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10) 사업화 현황 성과 등록 (3/6)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사업화 현황 팝업 페이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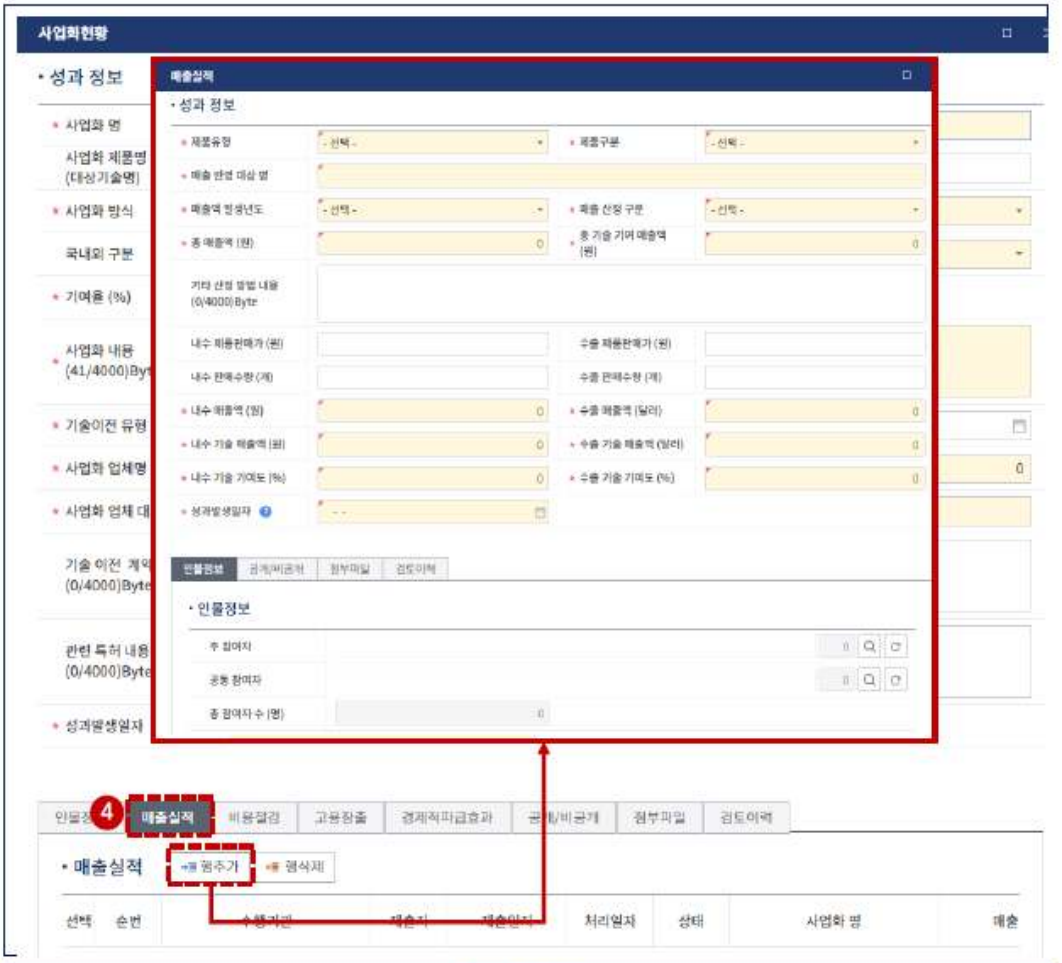

상세 Guide

④ 매출실적 탭을 클릭하고 행추가하면 매출실적 성과등록화면을 불러옵니다. 필수값을 작성하여 임시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화현황 화면 내 매출실적 탭을 눌러 성과 등록 또는 특성반영 항목 내 개별로 존재하는 '매출실적' 성과등록 화면에서 등록하셔도 됩니다(사업화 현황 성과등록화면상의 탭에서 '매출실적' 성과를 등록하셨다면, 따로 매출실적 성과항목에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절감, 고용창출, 경제적파급효과 성과도 이와 동일합니다.

10) 사업화 현황 성과 등록 (4/6)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사업화 현황 팝업 페이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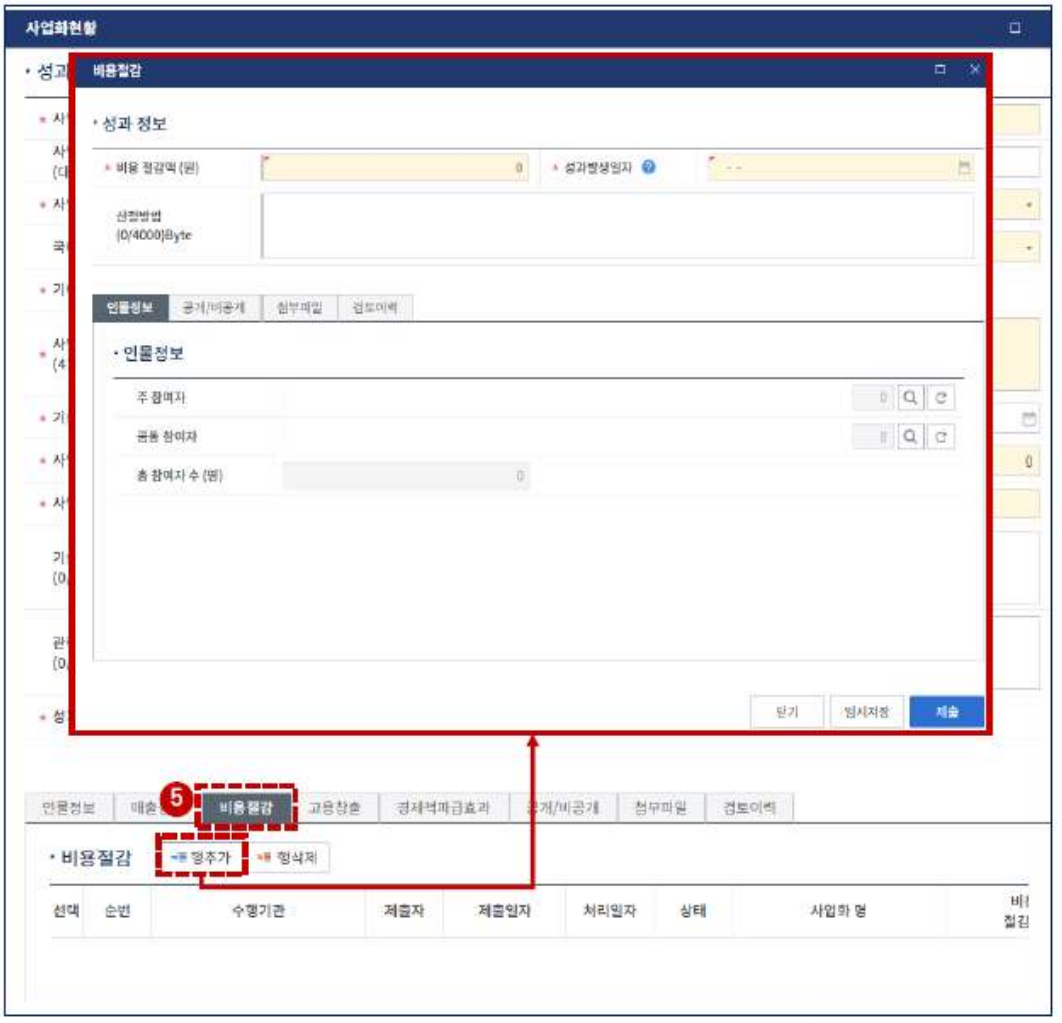

상세 Guide

⑤ 비용절감탭을 클릭하고 행추가하면 비용절감 성과등록화면을 불러옵니다. 필수값을 작성하여 임시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사업화 현황 성과 등록 (5/6)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사업화 현황 팝업 페이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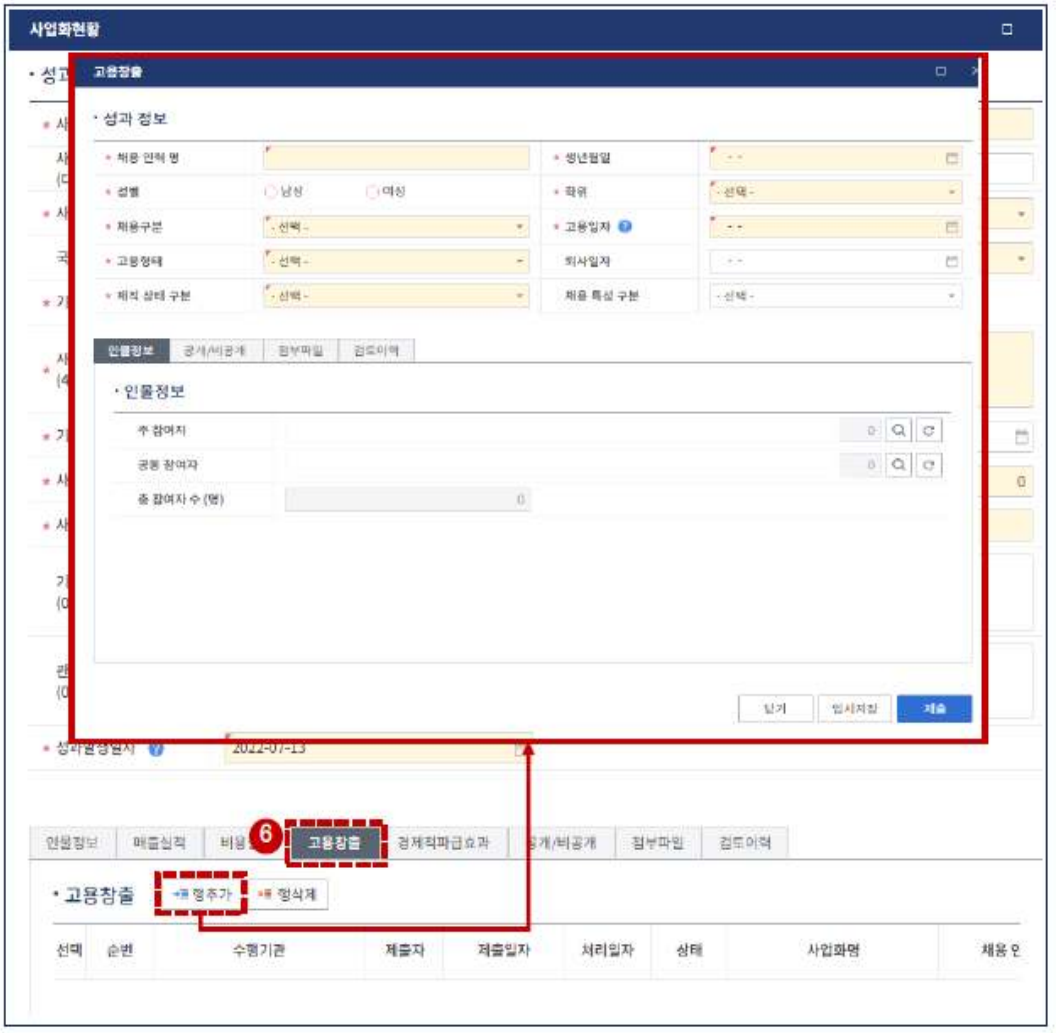

상세 Guide

⑥ 고용창출탭을 클릭하고 행추가하면 고용창출 성과등록화면을 불러옵니다. 필수값을 작성하여 임시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사업화 현황 성과 등록 (6/6)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사업화 현황 팝업 페이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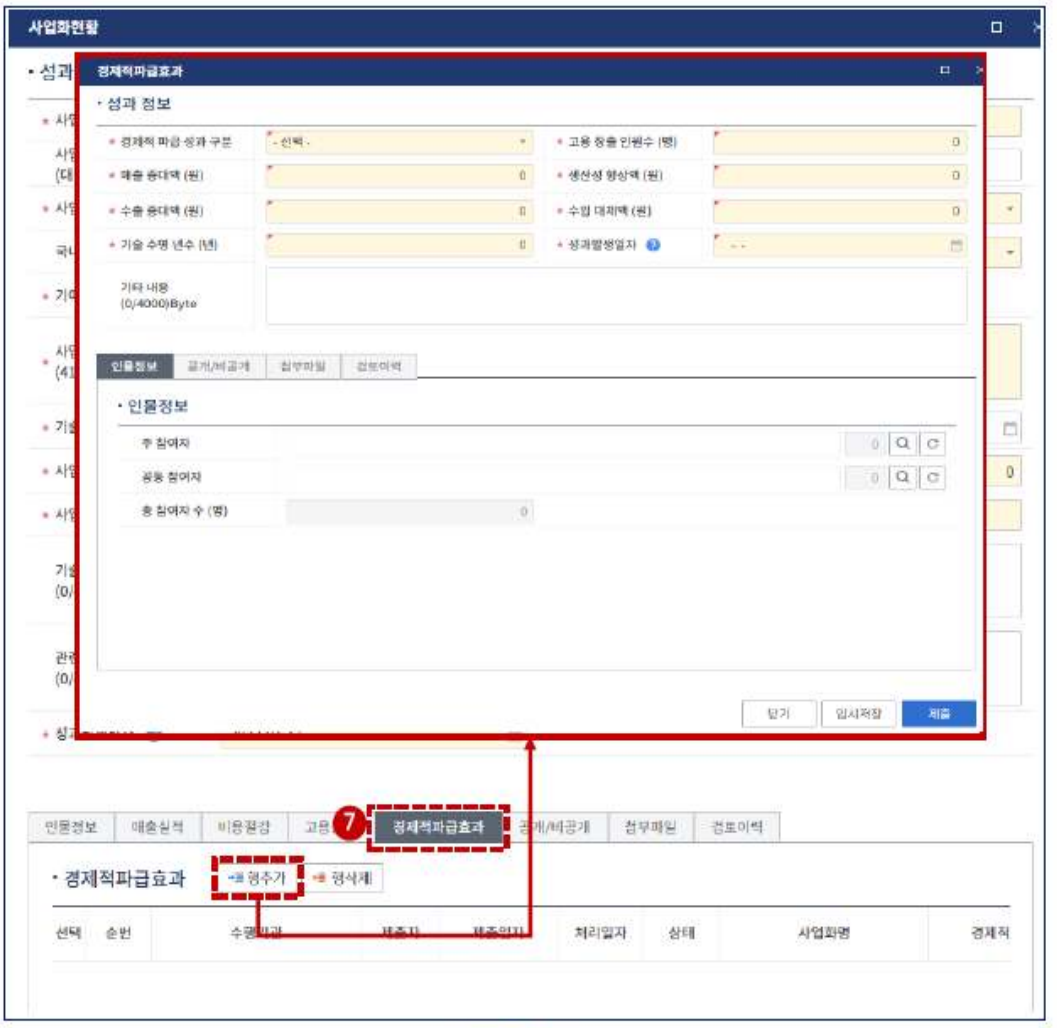

상세 Guide

⑦ 경제적파급효과탭을 클릭하고 행추가하면 경제적파급효과 성과등록화면을 불러옵니다. 필수값을 작성하여 임시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5절 매출실적

매출실적 성과
• 무형의 개발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한 후 이를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한 성과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매출 반영 대상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매출 반영 대상명(제품명)과 증빙자료 상 명칭이 일치하는지 확인

▌매출액 발생년도, 성과발생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매출액 발생년도 및 성과발생일자가 정확한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총 매출액, 총 기술 기여 매출액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매출액과 증빙자료 상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확인(VAT 포함)
  - 총 매출액(원) = 내수 매출액(원) + 수출 매출액(원)
  - 총 기술 기여 매출액(원) = 내수 기술 매출액(내수 매출액 x 내수 기술 기여도)(원) + 수출 기술 매출액(수출 매출액 x 수출 기술 기여도)(원)

▌내수 매출액, 내수 기술 매출액, 내수 기술 기여도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내수 매출액과 증빙자료 상 내수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확인(VAT 포함)
  - 내수 기술 매출액(원) = 내수 매출액(원) x 내수 기술 기여도(%)

▌수출 매출액, 수출 기술 매출액, 수출 기술 기여도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수출 매출액과 증빙자료 상 수출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확인(VAT 포함)
  - 수출 기술 매출액(달러) = 수출 매출액(달러) x 수출 기술 기여도(%)

※ 수출 매출액(원) = 수출 매출액(달러) x 환율 (‘기타 산정 방법 내용’ 항목에 작성)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대상 제품명, 매출액 발생년도, 매출액 등

▌증빙자료 종류

- 실제 매출발생일 및 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공식 자료 제출
  - (내수) 전자세금계산서
  - (수출) 수출신고필증,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 공식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문으로 증빙을 보완 가능
  - (예) 전자세금계산서에 여러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화 대상 제품만 분리가 어려운 경우,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되어 증빙자료 취합이 어려운 경우, 보안 규정으로 인해 세부 품목의 공개가 어려운 경우 등
  - 공문을 제출할 경우, 과제정보(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등), 대상 제품명, 매출액 발생년도, 매출액(VAT 포함), 증빙 제출 불가 사유 등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직인날인하여 제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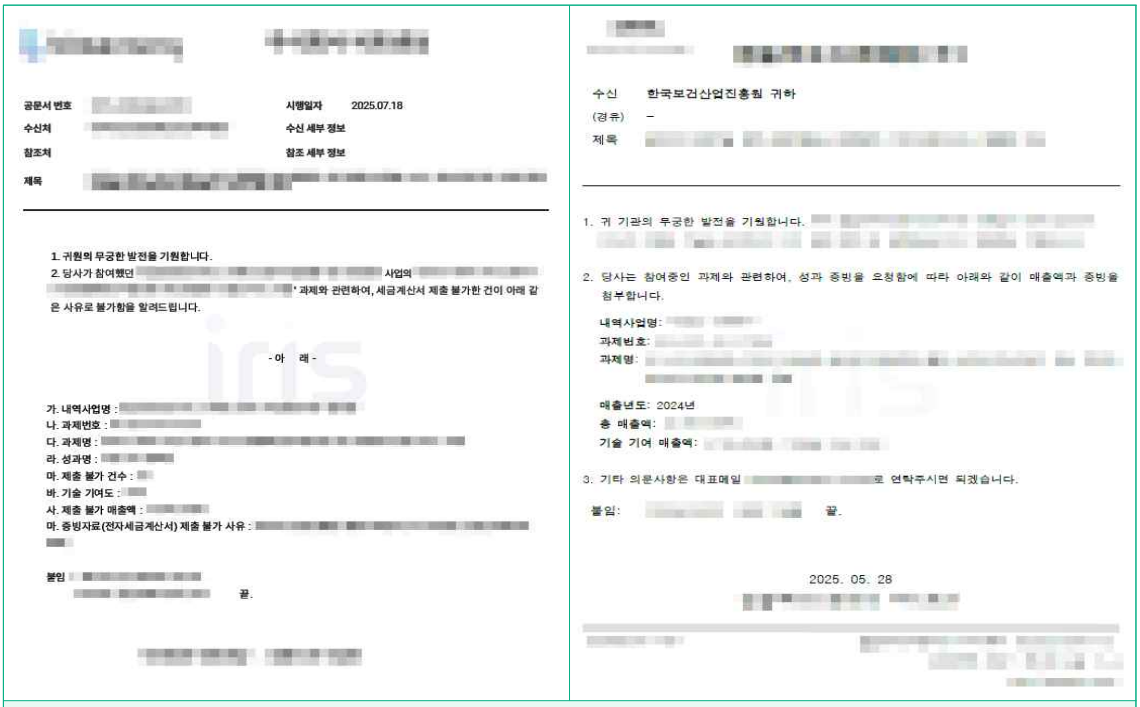

공문 예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매출액 발생년도는 해당 매출액이 실제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창업/상품화/공정개선 연도를 입력한 경우 당해연도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상품화 & 2025년 매출액 발생 : 2025년 사업화현황 입력 & 2025년 매출실적 입력 필수
  - (예) 2024년 상품화 & 2025년 매출액 발생 : 2024년 사업화현황 입력 & 2025년 매출실적 입력 필수
  - (예) 2024년 상품화 & 2025년 매출액 발생 & 2026년 매출액 발생 : 2024년 사업화현황 입력 & 2025년 매출실적 입력 & 2026년 매출실적 입력 필수
- (증빙 미비) 공식 자료 또는 공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계약서, 거래명세표, 자체 작성한 판매 리스트, 사내 매출 관리 시스템 화면, INVOICE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대상 제품명, 매출액 발생년도, 매출액 등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 VAT 미포함 금액을 입력하였을 경우, 별도 안내 없이 VAT 포함 금액으로 수정하여 검증 진행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내수/수출 실적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사업화 현황(창업/상품화/공정개선)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 내수/수출 실적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매출액 발생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매출액 발생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매출실적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제품유형	O	'제품', '공정', '기타' 중 선택
제품구분	O	'부품/소재', '완제품', '요소기술', '프로세스 전체', '기타' 중 선택
제품 공정번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과제 중 제품 공정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작성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실제 매출발생일을 선택
매출 반영 대상명	O	사업화 대상 제품명을 입력
매출액 발생년도	O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입력
매출 산정 구분	O	'완제품/부품 형태로 외부에 판매된 경우', '자사 판매 제품의 부품·소재 등으로 활용된 경우', '기타' 중 선택
총 매출액(원)	O	내수 매출액(원) + 수출 매출액(원) 입력
총 기술 기여 매출액(원)	O	내수 기술 매출액(원) + 수출 기술 매출액(원) 입력
기타 산정 방법 내용		수출 매출액(달러)의 원화 환산식(외화 x 적용환율 = 원화) 등 작성
내수 제품 판매가(원)		내수 대상 제품의 개당 판매가를 입력
내수 판매수량(개)		내수 대상 제품의 판매수량을 입력
내수 매출액(원)	O	내수 매출액(원) 입력
내수 기술 매출액(원)	O	내수 매출액(원) x 내수 기술 기여도(%) 입력
내수 기술 기여도(%)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수출 제품 판매가(원)		수출 대상 제품의 개당 판매가를 입력
수출 판매수량(개)		수출 대상 제품의 판매수량을 입력
수출 매출액(달러)	O	수출 매출액(달러) 입력
수출 기술 매출액(달러)	O	수출 기술 매출액(달러) = 수출 매출액(달러) x 수출 기술 기여도(%)
수출 기술 기여도(%)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기술이전	O	기술이전 유형, 사업화 업체명, 기술이전 계약액 등 입력
공개/비공개	O	사업화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11) 매출실적 성과 등록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매출실적 팝업 페이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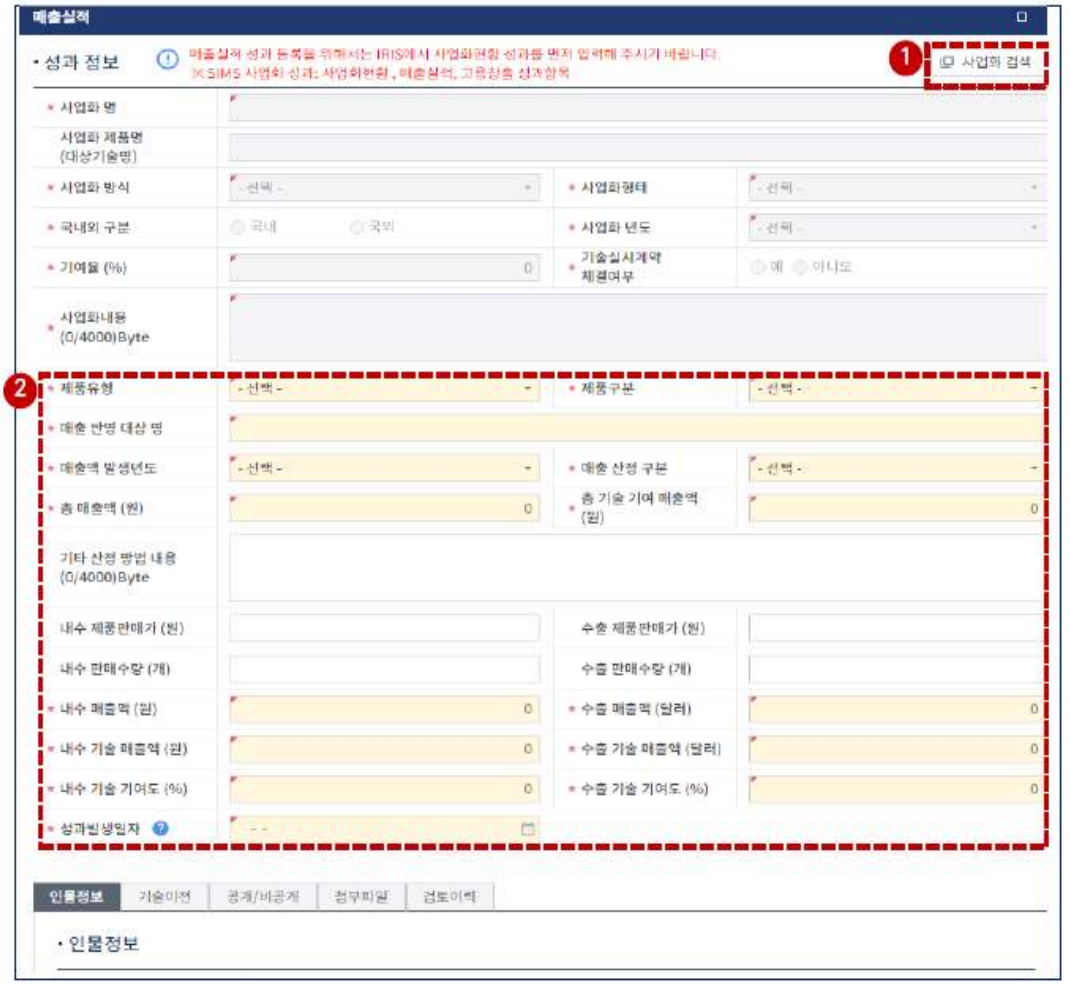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매출실적 성과 등록화면 내 사업화 검색을 통해 IRIS에 기 등록된 사업화현황을 선택 후 등록합니다.

② 제품유형, 제품구분, 총매출액 등의 성과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과발생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6절 기술실시(이전)

기술실시(이전) 성과
• 수행과제를 통해 개발된 요소기술을 실시(전용실시, 통상실시, 기술양도 등)한 성과 – (기타기술료)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기술실시를 통해 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 (정부납부기술료) 정부 R&D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에 따른 매출 등과 연계하여 정부에 납부한 기술료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기술실시 계약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기술실시 계약명과 증빙자료 상 계약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기술료 납부유형, 실시방식, 기술료 구분, 기술이전 유형, 실시권 유형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기술실시(이전) 성과 유형별 구분이 정확한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기술료 계약 체결일자, 실시기간, 성과발생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기술료 계약 체결일자, 실시기간, 성과발생일자가 정확한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기술실시계약 결정액, 당해년도 징수액, 당해년도 납부액, 누적 징수액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기술료 징수액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VAT 포함)

▌기술실시 기관명, 기술실시 기관 사업자번호, 기술실시기관 유형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기술실시 대상기관 정보가 정확한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료 발생년도, 기술료 징수액, 기술실시기관 등

▌증빙자료 종류

- (당해연도 기술료 발생) ① 기술이전 계약서 전문, ② 전자세금계산서(입금증, 거래내역서 등) 모두 제출
  - 기술이전 계약서 전문만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당해연도에 실제 발생한 기술료 징수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자료 미비로 성과 불인정 처리됨
  - 전자세금계산서 등 입금 확인용 자료만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 계약명, 기술실시기관, 세부 계약조건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자료 미비로 성과 불인정 처리됨
- (당해연도 기술료 미발생 or 무상 계약) 기술이전 계약서 전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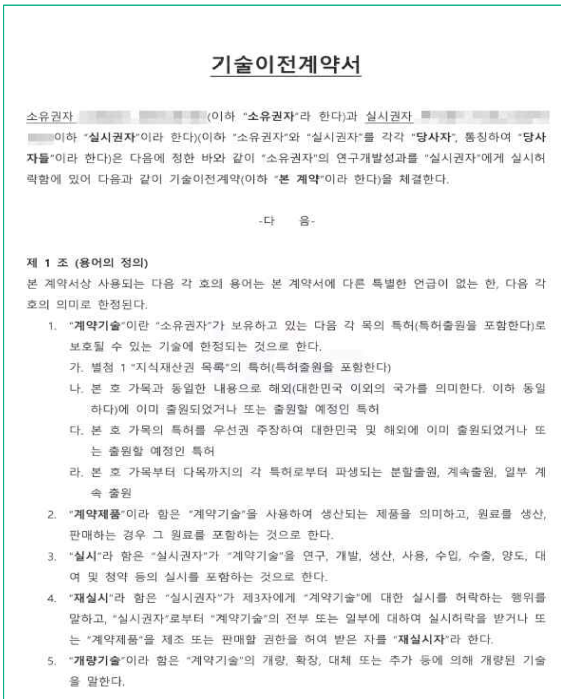

기술이전계약서

소유권자 [illegible](이하 "**소유권자**"라 한다)과 실시권자 [illegible]이하 "**실시권자**"이라 한다)(이하 "소유권자"와 "실시권자"를 각각 "**당사자**",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다음에 정한 바와 같이 "소유권자"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상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용어는 본 계약서에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한정된다.

1. "**계약기술**"이란 "소유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특허(특허출원을 포함한다)로 보호될 수 있는 기술에 한정되는 것으로 한다.
   가. 별첨 1 "지식재산권 목록"의 특허(특허출원을 포함한다)
   나. 본 호 가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외(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에 이미 출원되었거나 또는 출원할 예정인 특허
   다. 본 호 가목의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대한민국 및 해외에 이미 출원되었거나 또는 출원할 예정인 특허
   라. 본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특허로부터 파생되는 분할출원, 계속출원, 일부 계속 출원
2.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의미하고,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라 함은 "실시권자"가 "계약기술"을 연구, 개발, 생산, 사용, 수입, 수출, 양도, 대여 및 청약 등의 실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재실시**"라 함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를 허락하는 행위를 말하고, "실시권자"로부터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받거나 또는 "계약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권한을 허여 받은 자를 "**재실시자**"라 한다.
5.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등에 의해 개량된 기술을 말한다.

기술이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 일련번호 | 승인번호

등록번호	[illegible]		
상호 (법인명)	[illegible]		
성명	[illegible]	총사업장 번호	
사업장 주소	[illegible]		
업태	의료,소매외	종목	종합병원외

등록번호	[illegible]		
상호 (법인명)	[illegible]		
성명	[illegible]	총사업장 번호	
사업장 주소	[illegible]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당초승인번호
2025/02/17	[illegible]	[illegible]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2	17	[illegible]		0	0	[illegible]	[illegible]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위 금액을 청구함.
[illegible]					

이체확인증

출력일자 : 2025-02-20

이체일시	2025-02-20 11:28:14	입금은행	하나은행
보내는분	[illegible]	받는분	[illegible]
출금계좌번호	[illegible]	입금계좌번호	[illegible]
수수료	0 원	이체금액	[illegible]원
출금통장표시내용	[illegible]	입금통장표시내용	[illegible]
메모		CMS코드	

상기 내용과 같이 이체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하나은행

본 명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자세금계산서 & 입금증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기술료 징수액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무상 계약 or 기술료 발생 전인 경우) 성과 발생연도는 기술실시 계약 체결연도를 기준으로 함
  - (계약 체결 후 기술료가 발생한 경우) 성과 발생연도는 해당 기술료 징수액이 실제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예) 2024년 계약 체결 후, 2025년 기술료 발생 : 2024년 계약 체결 성과 & 2025년 기술료 발생 성과로 각각 입력

※ (예) 2025년 계약 체결 후, 2025년 기술료 발생 : 2025년 기술료 발생 성과로 입력

※ (예) 2025년 계약 체결 후, 2025년 & 2026년 기술료 발생 : 2025년 기술료 발생 성과 & 2026년 기술료 발생 성과로 각각 입력

- (징수액 오류) 당해연도 징수액이 아닌 계약 기간 동안의 기술료 총액을 입력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계약 체결 후, 2025년 & 2026년 기술료 발생 : 2025년 기술료 발생 성과 입력 시, 2년간(2025~2026년)의 기술료 총액을 입력하면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계약서 일부 발췌본, 사내 기술료 관리 시스템 화면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료 발생년도, 기술료 징수액, 기술실시기관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 VAT 미포함 금액을 입력하였을 경우, 별도 안내 없이 VAT 포함 금액으로 수정하여 검증 진행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기술이전 계약서 전문만 제출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등 입금 확인용 자료 추가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등 입금 확인용 자료만 제출한 경우 : 기술이전 계약서 전문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기술료 발생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기술료 발생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기술실시(이전)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기술실시계약명	O	기술실시 계약명(이전기술명)을 입력
납부유형	O	'정액(출연정률)', '정액(지정)', '경상(착수)', '경상(매출정률)', '혼합(정액+경상)', '기타', '무상양허' 중 선택
기술료계약 체결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기술실시 계약일을 선택
실시방식	O	'기술(직접)실시', '제3자실시', '미발생' 중 선택
기술료 구분	O	'정부납부기술료', '기타기술료' 중 선택
기술이전 유형	O	'기술실시', '기술지도', '기타', '해당사항없음' 중 선택 * 실시방식 구분이 '제3자 실시'인 경우 선택
실시권 유형		'전용실시', '통상실시', '기술양도' 중 선택
기술실시 대상국가	O	기술을 실시받은 기관의 소속국을 선택
실시 기간	O	기술이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을 입력
기술실시계약 결정액(원)	O	기술이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총액을 입력
당해연도 징수액(원)	O	기술료 구분이 '기타기술료'인 경우, 당해연도 기술료 징수액을 입력
당해연도 납부액(원)	O	기술료 구분이 '정부납부기술료'인 경우, 당해연도 정부 납부액을 입력
누적 징수액(원)	O	기술료 구분이 '기타기술료'인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 이후~당해연도까지 징수한 누적 징수액을 입력
총 정부출연금(원)	O	해당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총액을 입력
총 민간부담금(원)	O	해당 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민간이 부담한 부담금 총액을 입력
기술실시 기관명	O	기술을 실시받은 기관명을 작성 * 실시방식이 '기술(직접)실시' 인 경우, 기술실시 기관은 수행기관(성과소유기관)
기술실시기관 사업자번호	O	기술을 실시받은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기술실시기관 영문 약어		기술을 실시받은 기관명의 영문 약어를 입력
기술실시기관 유형	O	기술을 실시받은 기관의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외국기업, 대학, 초중고교 등)을 선택
담당자 정보	O	기술실시 담당자의 이름,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기술료 사용 실적 내용		해당 기술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실적 내용 입력
기술 내용	O	해당 기술실시와 관련된 기술 내용 입력
지식재산권 종류 내용		해당 기술실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관련 내용 입력
관련 특허 내용		해당 기술실시와 관련된 특허 내용을 입력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실제 기술료 징수일(납부일)을 선택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공개/비공개	O	기술실시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8) 기술실시(이전) 성과 등록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기술실시(이전)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기술실시(이전)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상세 Guide

①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료 납부유형, 기술내용 등의 성과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과발생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7절 시험제품 제작

시험제품 제작 성과
• 수행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제품의 실용화 및 상용화 여부 검증을 위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성과(사업화 성과 미해당)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시험제품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시험제품명과 증빙자료 상 명칭이 일치하는지 확인

▌출시/제작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시험제품 출시/제작일자와 증빙자료 상 출시/제작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시험제품명, 출시/제작일자 등

▌증빙자료 종류

- ① 시험제품 사진, ② 시험제품 정보 확인용 자료(명세서, 검수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모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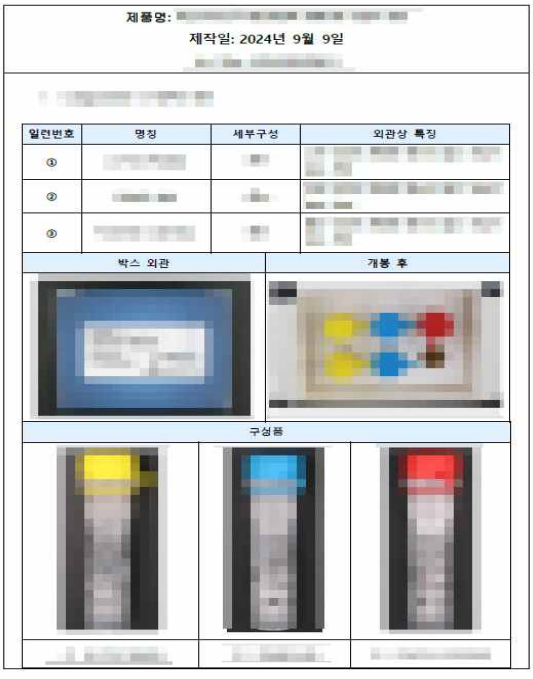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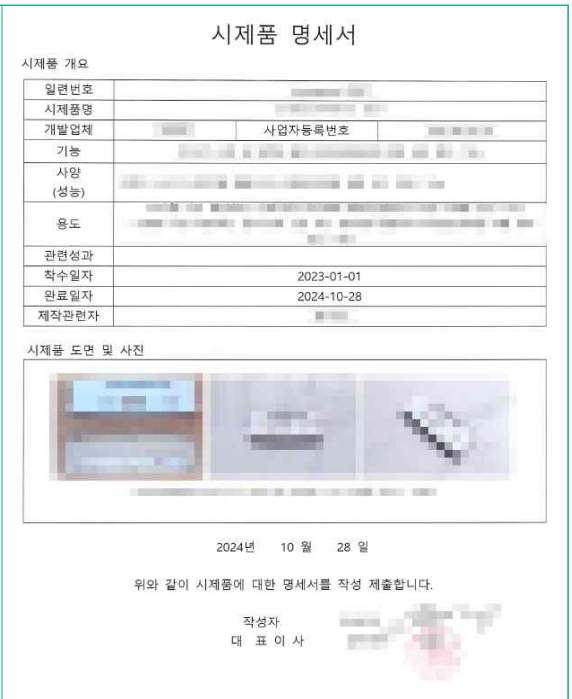

시험제품 인정 증빙 예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시험제품이 실제 출시/제작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제조예정일, 매출 발생일 등을 입력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이루어진 시험제품 제작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실제 제작된 시험제품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시험제품명, 출시/제작일자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시험제품 출시/제작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시험제품 출시/제작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시험제품 제작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시험제품명	O	시험제품명을 입력
설치장소	O	시험제품을 설치한 장소를 입력
이용 분야 내용	O	시험제품이 이용되는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출시/제작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시험제품의 출시일자 또는 제작일자를 선택
사업화 소요기간(개월)	O	사업화에 소요된 기간을 월 단위로 입력
인증 일자		시험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입력
제작금액(원)	O	시험제품의 제작비용을 입력
제작국가	O	시험제품을 제작한 국가를 선택
제작업체명	O	시험제품의 제작업체명을 입력
인증기관		시험제품이 인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인증기관명을 입력
시험제품 TRL 단계	O	TRL 5~8단계 또는 해당없음 중 선택
현장활용도(%)		시험제품의 현장활용도를 % 단위로 입력 * 현장적용 건수가 1건일 경우 100%, 현장적용 건수가 2건일 경우 200%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공개/비공개	O	시험제품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7) 시험제품제작 성과 등록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시험제품 제작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시험제품 제작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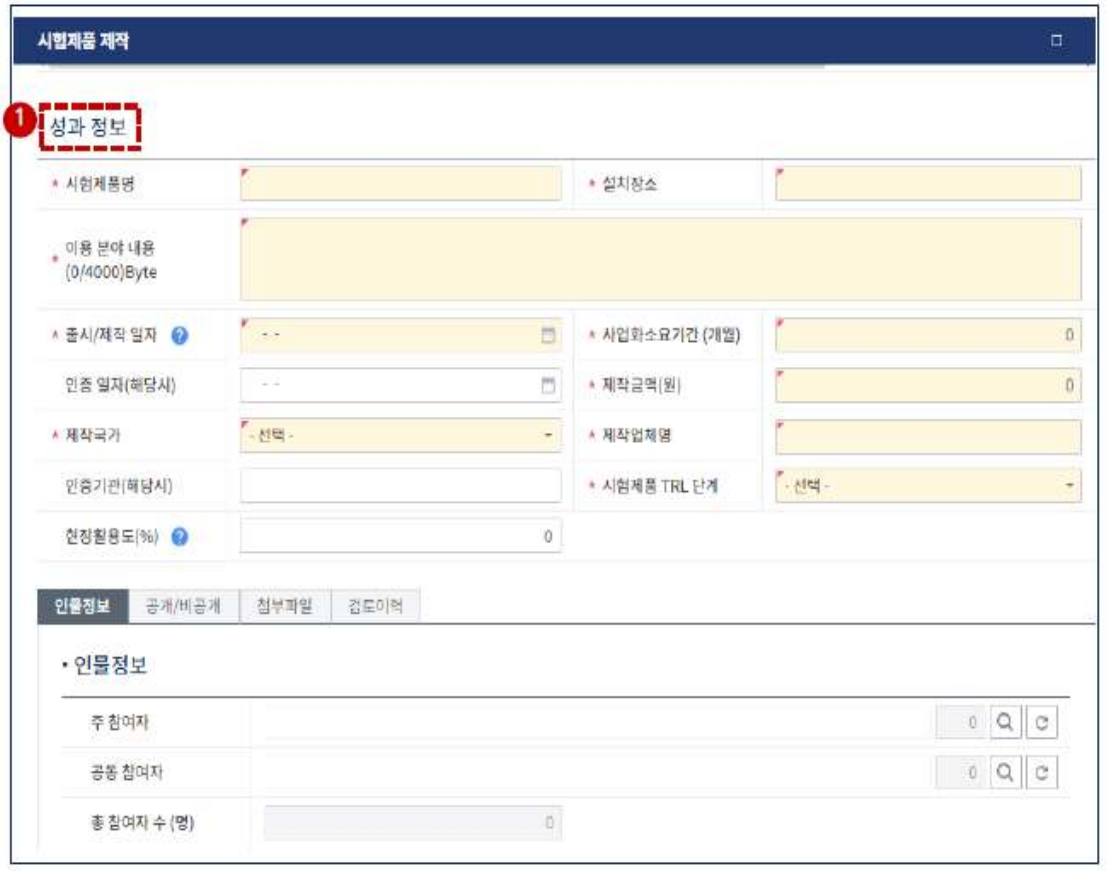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시험제품명, 이용분야내용, 설치장소 등을 입력합니다.

※ 출시/제작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8절 고용창출

고용창출 성과

- 수행과제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연구직, 생산직 등 인력을 신규 고용한 성과
  - (기업 등 영리기관) 기업-개인 간 고용계약에 의해 채용된 경우
  - (대학 등 비영리기관) 연구보조원, 연구지원인력, 행정인력, 연구교원, Post-doc 등 해당(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제외)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채용인력명, 생년월일, 성별, 학위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신규 인력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고용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고용일자와 증빙자료 상 고용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채용구분, 고용형태, 재직상태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채용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신규 인력명, 고용일자 등

▌증빙자료 종류

- 신규 인력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공식 자료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발급일시	2023-12-01 08:44	사업장 관리번호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1 / 2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자격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				2021.04.01	2021.04.01	2021.04.01
2				2019.10.10		
3			2019.10.10	2019.10.10	2020.08.01	2020.08.01
4			2022.06.02	2022.06.02	2022.06.02	2022.06.02
5			2021.11.01	2021.11.01	2021.11.01	2021.11.01
6			2022.01.04	2022.01.04	2022.01.04	2022.01.04
7			2021.11.01	2021.11.01	2021.11.01	2021.11.01
8				2019.10.10		
9				2019.10.10		
10			2021.10.18	2021.10.18	2021.10.18	2021.10.18
11			2020.10.26	2020.10.26	2020.10.26	2020.10.26
12			2021.08.02	2021.08.02	2021.08.02	2021.08.02
13			2020.10.20	2020.10.20	2020.10.20	2020.10.20
14			2021.02.01	2021.02.01	2021.02.01	2021.02.01
15			2020.03.01	2020.03.01	2020.03.01	2020.03.01
16			2020.11.02	2021.09.01	2020.11.02	2020.11.02
17			2022.03.07	2022.03.07	2022.03.07	2022.03.07
18			2020.08.18	2020.08.18	2020.08.18	2020.08.18
19			2023.02.06	2023.02.06	2023.02.06	2023.02.06
20			2022.02.03	2022.02.03	2022.02.03	2022.02.03

▷ 위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며 발급시점 이후나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사회보험 포탈사이트(www.4insure.or.kr)의 [발급사실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연계서비스, 4대 사회보험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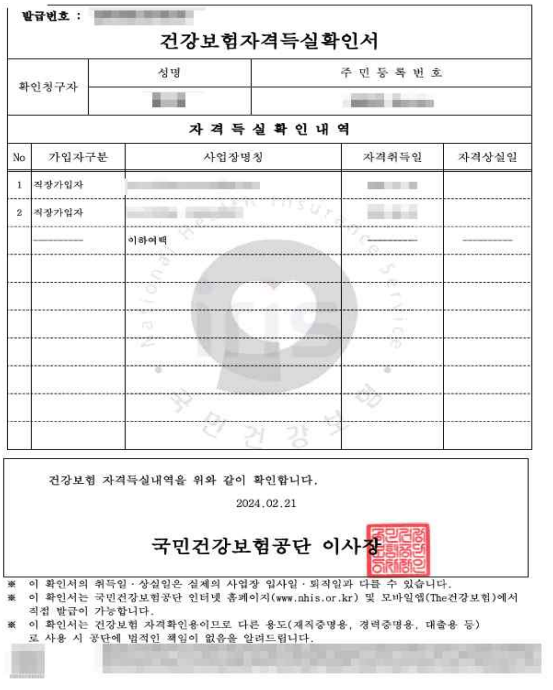

발급번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청구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1	직장가입자			
2	직장가입자			
	———	이하여백	———	———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02.2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이 확인서의 취득일 · 상실일은 실제의 사업장 입사일 · 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다른 용도(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로 사용 시 공단에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창출 인정 증빙 예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신규 인력 고용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 인력 고용연도가 성과조사 대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고용된 인력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인력명, 고용일자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 주요 검증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구분(신입/경력), 고용 형태(계약직/무기계약직/정규직/기타), 재직 상태(재직/휴직/퇴직)는 연구기관이 입력한 정보를 우선 인정하되,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하여 검증 진행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고용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고용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고용창출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채용 인력 명	O	신규 고용한 인력의 성명을 작성
생년월일	O	신규 고용한 인력의 생년월일을 작성
성별	O	신규 고용한 인력의 성별을 선택
학위	O	신규 고용한 인력의 최종 학위를 선택
채용구분	O	'신입', '경력' 중 선택
고용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신규 고용일자를 선택
고용형태	O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기타' 중 선택
퇴사일자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신규 고용인력의 퇴사일자를 선택
재직 상태 구분	O	'재직', '휴직', '퇴직' 중 선택
채용 특성 구분		'청년고용친화용 R&D정책적용 인력',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인력', '비수도권 지역 인재 인력' 중 선택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기술이전	O	기술이전 유형, 사업화 업체명, 기술이전 계약액 등 입력
공개/비공개	O	사업화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13) 고용창출 성과 등록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고용창출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고용창출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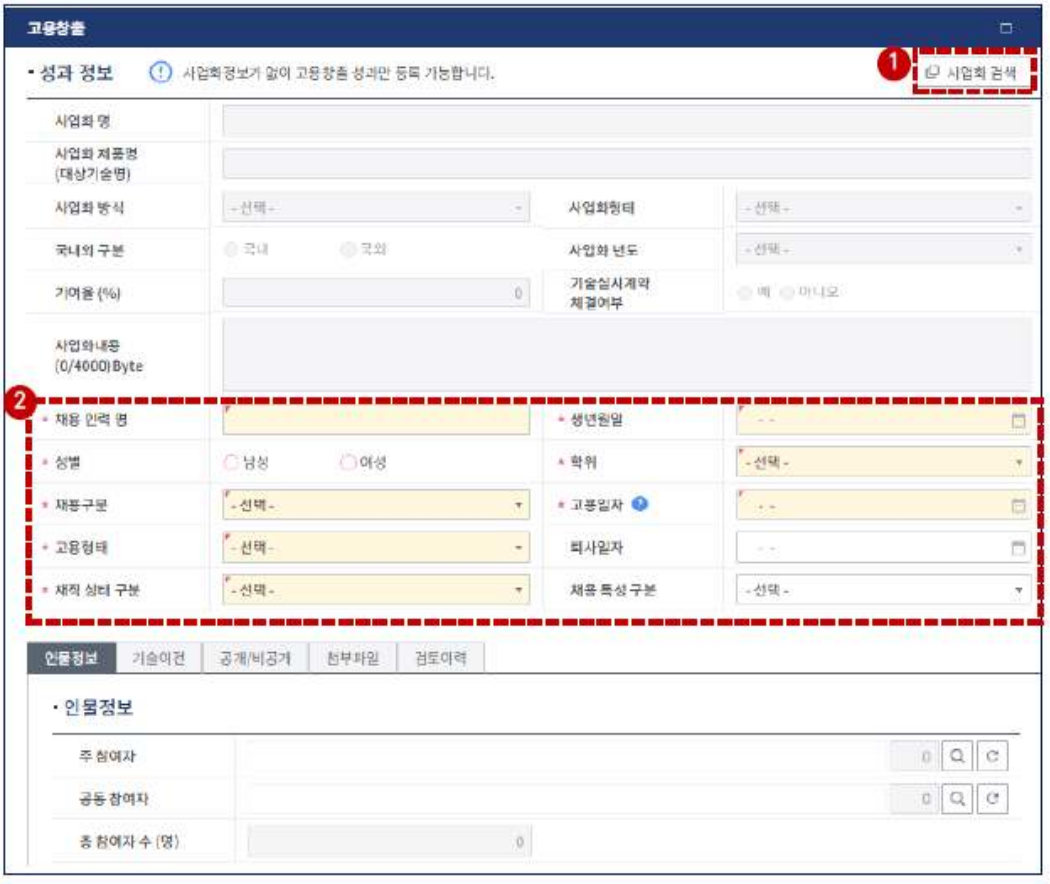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사업화로 발생한 고용창출 성과의 경우 사업화 검색을 통해 IRIS에 기 등록된 사업화현황을 선택 후 등록합니다.

사업화 외로 발생한 고용창출의 경우 ②의 정보만 등록 합니다(사업화정보 없이 고용창출 성과만 등록 가능합니다).

① 채용인력명, 생년월일, 고용형태 등의 성과정보를 입력합니다.

※ 고용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연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 과제 수행 전 고용한 사람도 등록 가능합니다.

제9절 교육훈련/연수/교류

교육훈련/연수/교류 성과
• 수행과제 관련하여 학술연구 또는 산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연수, 연구원 파견·교환학생 등을 지원한 성과 – (학술연수) 학술 및 연구 목적의 연수 – (기술연수) 산업 현장의 신기술 및 첨단 의료기술 습득 목적의 연수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연수명, 연수자 이름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연수명 및 연수자 이름과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성과발생일자, 연수시작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연수일자와 증빙자료 상 연수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연수구분, 연수목적, 연수대상국가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연수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 연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 2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로 구분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연수명, 연수자 이름, 연수 시작일자 등

▌증빙자료 종류

- 연수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공식 자료 제출
  – 연수기관 공식 발행 자료(수료증, 인증서, 초청장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공문 등



KDRA 바이오헬스 인재개발센터

KDRA 바이오헬스 인재개발센터
KDRA Bio Heal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수 료 증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이 2023년 3월 29일, 30일 총 2일간(16시간) 실시한 2023년도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전략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30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 사 장 홍 성 한

문서확인번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발급번호 (Serial No.)		발급일 (Date of Issuance)	2024.09.04	쪽수 (Page Count)	1/1
대상자 (Person to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남 (M)	
	국적 (Nationality)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출입국 일자 (Date of Entry / Departure)	출국 (Departure)	입국 (Entry)	출국 (Departure)	입국 (Entry)
	2023.09.14	2024.09.01	이하빈칸(The End)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 2023.09.01 부터 (from) 2024.09.03 까지 (to)

용도(Purpose) :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급일 (Date of Issuance) 2024 년 (Year) 09 월 (Month) 04 일 (Day)

발급 담당자 (Officer in Charge) 전화번호 (Phone No.)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인

Chief of SEOUL IMMIGRATION OFFIC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연수/교류 인정 증빙 예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연수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연수 시작연도가 성과조사 대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시작된 연수는 성과로 불인정
- (성과 미해당) 단순한 학술대회·학회 참석은 성과로 불인정함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연수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각 연수 대상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으면 성과로 불인정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연수명, 연수자 이름, 연수 시작일자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연수 시작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연수 시작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교육훈련/연수/교류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연수명	O	연수명을 입력
논문건수		연수 지원을 통해 발간된 논문 건수를 입력
연수지원금액(원)	O	연수 지원에 투입된 금액을 입력
연수내용	O	연수의 세부 교육 내용을 입력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연수 시작일자를 선택
대상자 정보	O	연수 대상자의 세부 정보를 입력 * 연수구분 : 장기(2개월 이상), 단기(2개월 미만)로 구분되며, 연수시작/종료일자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 * 연수목적 : '학술연수', '기술연수' 중 선택 * 이름 : 연수자 이름을 입력 * 연수시작/종료일자 :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연수시작/종료일자를 선택 * 연수대상국가 : 연수를 실시한 국가를 선택 * 연수기관명 : 연수를 실시한 기관명을 선택 * 전공 : 연수자 전공을 선택 * 학위 : 연수자 학위를 선택 * 지원금액 : 연수지원금액을 입력
공개/비공개	O	연수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27) 교육훈련/연수/교류 성과 등록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교육훈련/연수/교류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교육훈련/연수/교류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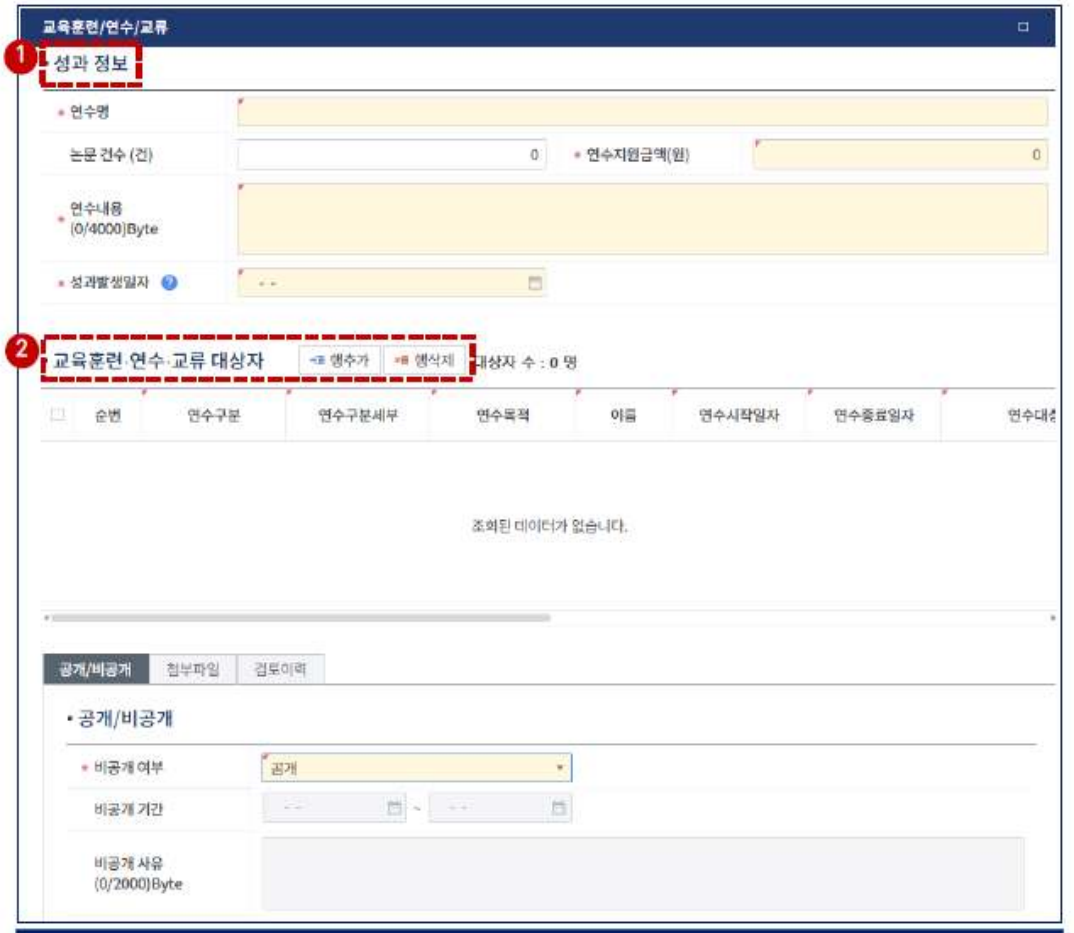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연수명, 논문건수, 연구내용 등의 성과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교육훈련/연수/교류 대상자를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성과발생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0절 인력양성

인력양성 성과
• 수행과제 관련하여 연구 인력 및 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한 성과 – (전문연구인력양성)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지원 –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1.1. 전문연구인력양성(학위배출)

▌인력양성명, 대상자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인력 성명과 증빙자료 상 인력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학위, 성별, 전공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인력의 학위, 성별, 전공과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학위취득일자, 성과발생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학위취득일자와 증빙자료 상 학위취득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1.2. 산업기술인력양성

▌양성 프로그램명, 교육기관명, 총 교육인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성과발생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교육 개최일자와 증빙자료 상 교육 개최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2.1. 전문연구인력양성(학위배출)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인력명, 취득 학위, 성별, 전공, 학위취득일 등

▌증빙자료 종류

- 학위증명서 or 졸업증명서



박사 제 [redacted] 호

학 위 기

[redacted]

위 사람은 본 대학 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으므로 공학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2023년 8월 11일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장 이학박사 반 창 [redacted]

위의 인정에 의하여 공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23년 8월 11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김 무 [redacted]

학위등록번호 : [redacted]



제 [redacted] 호

졸 업 증 명

성 명 : [redacted]

생 년 월 일 : [redacted]

대 학 : 보건과학대학(M)

학 과 : 의용생체공학과(M) (공학사)

학 번 : [redacted]

입 학 일 자 : 2019.03.04

졸 업 일 자 : 2023.02.16

복 수 전 공 : 전자공학과 (공학사)

학 위 번 호 : [redacted]

입 학 대 학 : 가천대학교

졸 업 대 학 : 가천대학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년 6월 4일

가 천 대 학 교 교 무 처 장

전문연구인력양성 인정 증빙 예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학위 취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학위 취득연도가 성과조사 대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취득한 학위는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논문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2.2. 산업기술인력양성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교육 프로그램명, 교육기관명, 총 교육인원, 교육 개최일 등

▌증빙자료 종류

- 교육 수료증, 이수증, 공문(+참석자 명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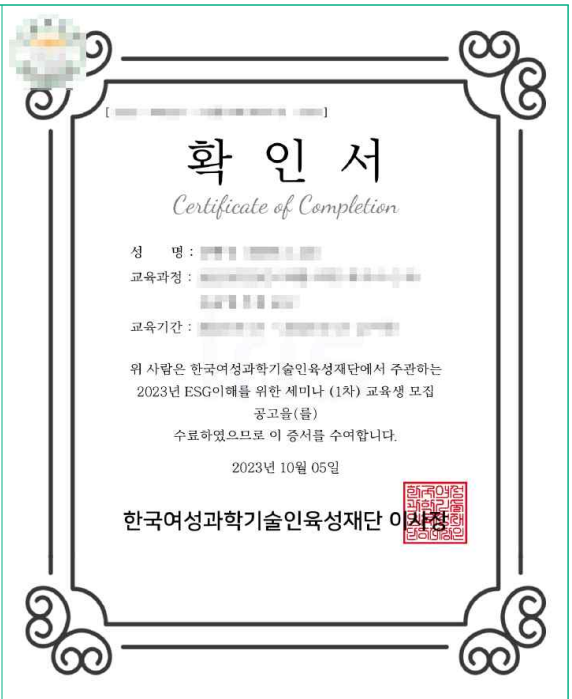

산업기술인력양성 인정 증빙 예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교육 개최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 개최연도가 성과조사 대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개최한 교육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교육 프로그램 브로슈어, 교육 시스템 화면 사진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인력양성명, 인력양성 세부 정보, 성과발생일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학위 취득연도 or 교육 개최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학위 취득연도 or 교육 개최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전문연구인력양성(학위배출)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인력 양성 명	O	학위 취득인의 성명을 입력
대상자명	O	학위 취득인의 성명을 입력
연구자등록번호	O	학위 취득인의 연구자등록번호를 입력
학위	O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중 선택
성별	O	'남자', '여자' 중 선택
전공	O	학위 취득인의 전공 분야를 선택
학위취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학위 취득일자를 선택
학위논문명		학위 취득 논문의 제목을 입력
학과명	O	학위 취득인의 학과명을 입력
학위취득국가	O	학위 취득기관의 국가를 선택
학위취득 기관명	O	학위 취득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지역	O	학위 취득인의 학위 취득 지역을 선택
인력양성 지원기간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학위 취득인에 대한 지원기간을 입력
학위전념 구분	O	'학업전념', '직장병행' 중 선택
진로 및 취업 정보	O	진로구분, 취업형태, 전공분야 취업여부 선택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학위 취득일자를 선택
인력양성내용	O	학위 취득 논문의 내용을 서술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공개/비공개	O	인력양성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양성 프로그램명	O	교육 프로그램명을 입력
교육기관명	O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을 입력
교육개최횟수	O	교육 프로그램 개최횟수를 입력
총교육시간	O	교육 프로그램의 총 교육시간을 입력
총교육인원	O	교육 프로그램의 총 참가자 수를 입력
양성 프로그램 내용	O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서술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교육 개최일자를 선택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공개/비공개	O	인력양성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록방법

21) 전문연구인력양성 성과 등록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전문연구인력양성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전문연구인력양성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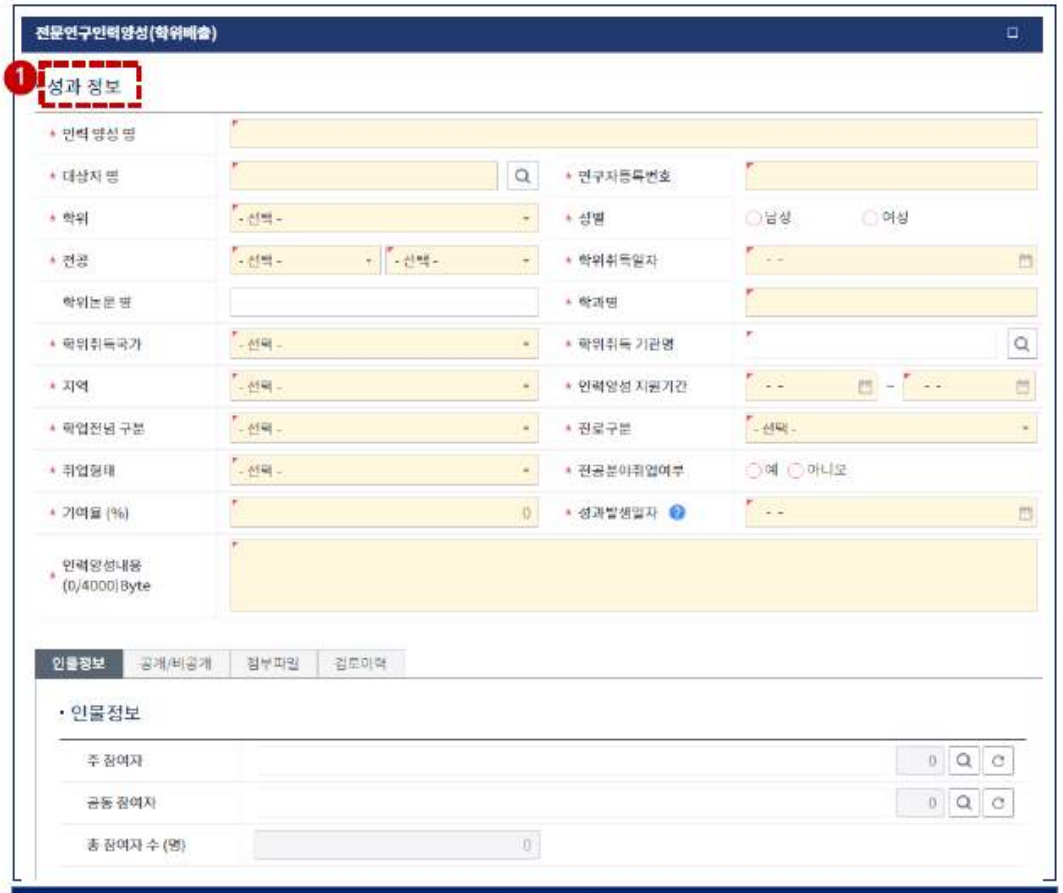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인력양성명, 대상자명, 연구자등록번호, 인력양성내용 등의 성과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과발생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22)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등록

- 통합업무포털 〉 과제수행 〉 성과 〉 성과등록 〉 산업기술인력양성 팝업 페이지입니다.
- 연구자가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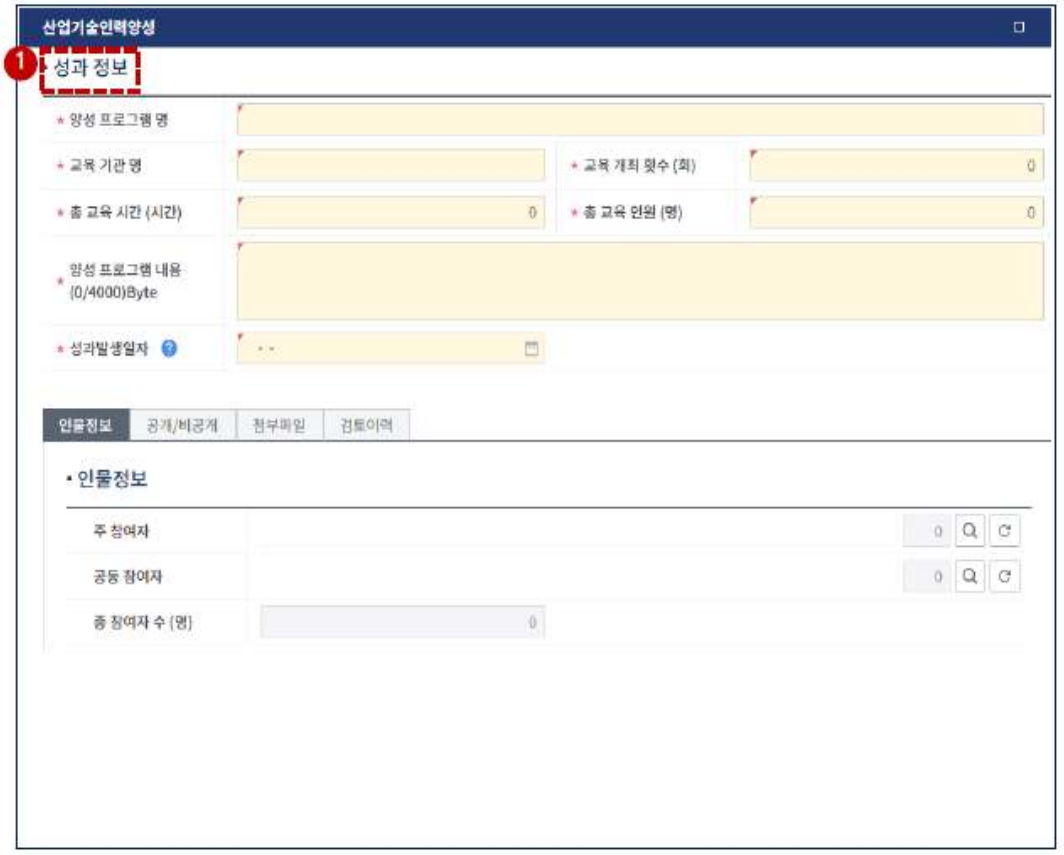

상세 Guide

① 양성 프로그램 명, 교육기관명, 양성 프로그램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 성과발생일자의 연도는 과제의 성과발생년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2장. 보건의료 고유성과

제1절 품목신고/인증/허가

품목신고/인증/허가 성과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럽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등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관련 신고/인증/허가 성과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허가내용, 품목명, 허가(신고/인증)번호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신고/인증/허가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허가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신고/인증/허가일자와 증빙자료 상 신고/인증/허가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기관, 국가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신고/인증/허가기관 및 국가와 증빙자료 상 신고/인증/허가기관 및 국가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품목명, 신고/인증/허가번호, 일자, 기관명 등

▌증빙자료 종류

- 신고/인증/허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공식 자료 제출
  - (신고) 의료기기 제조 신고증,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신고증명서
  - (인증)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FDA Certification Letter 등
  - (허가)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FDA Certification Letter 등



제신 [redacted] 호

의료기기 제조 신고증

(업 허가번호 : 제 [redacted] 호)

구 분	[✔] 제조 / [ ] 수입	[✔] 품목 / [ ] 품목류	
명 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redacted]	분류번호(등급)	A58020.01(1)
모 양 및 구 조	별첨		
원 재 료	별첨		
성 능	해당없음		
사 용 목 적	별첨		
사 용 방 법	별첨		
사 용 시 주 의 사 항	별첨		
제조(수입)업자 정보	[redacted] 제조원 : 별첨		
허 가 조 건	없음		
소 재 지	별첨		
비 고	유효기간 (2021.01.15 ~ 2026.01.14), 일회용의료기기		

「의료기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2021 년 01 월 15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인)

의료기기 제조 신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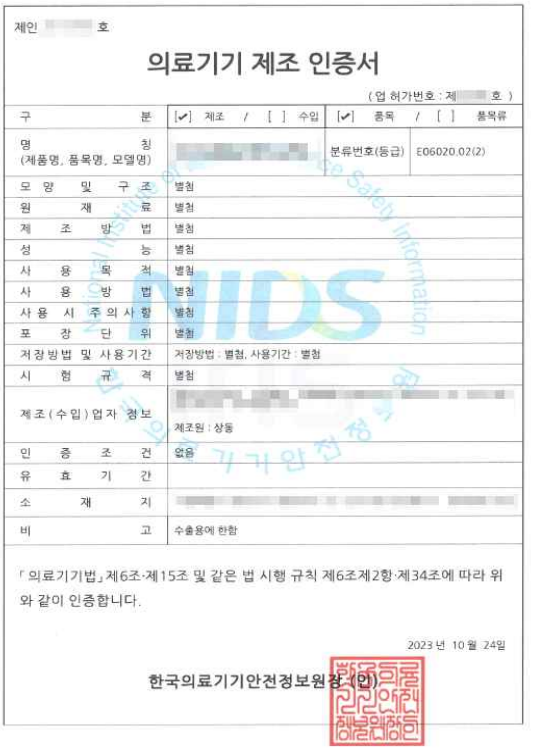

제인 [redacted] 호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업 허가번호 : 제 [redacted] 호)

구 분	[✔] 제조 / [ ] 수입	[✔] 품목 / [ ] 품목류	
명 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redacted]	분류번호(등급)	E06020.02(2)
모 양 및 구 조	별첨		
원 재 료	별첨		
제 조 방 법	별첨		
성 능	별첨		
사 용 목 적	별첨		
사 용 방 법	별첨		
사 용 시 주 의 사 항	별첨		
포 장 단 위	별첨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저장방법 : 별첨, 사용기간 : 별첨		
시 험 규 격	별첨		
제조(수입)업자 정보	[redacted] 제조원 : 상동		
인 증 조 건	없음		
유 효 기 간			
소 재 지	[redacted]		
비 고	수출용에 한함		

「의료기기법」제6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제2항·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2023 년 10 월 24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인)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제허 [redacted]호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업 허가번호 : 제 [redacted] 호)

구 분	[✔] 제조 / [ ] 수입	[✔] 품목 / [ ] 품목류
명 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redacted]	분류번호(등급) B07070.12(3)
모 양 및 구 조	별첨	
원 재 료	별첨	
제 조 방 법	별첨	
성 능	별첨	
사 용 목 적	별첨	
사 용 방 법	별첨	
사 용 시 주 의 사 항	별첨	
포 장 단 위	별첨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저장방법 : 별첨, 사용기간 : 별첨	
시 험 규 격	별첨	
제조(수입)업자 정보	[redacted] 제조원 : 상동	
허 가 조 건	없음	
유 효 기 간	2023.06.07 ~ 2028.06.06	
소 재 지	[redacted]	
비 고	임회용의료기기, [✓] 기술문서 심사 [ ] 임상자료 심사	

「 의료기기법」제6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23 년 06 월 07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인)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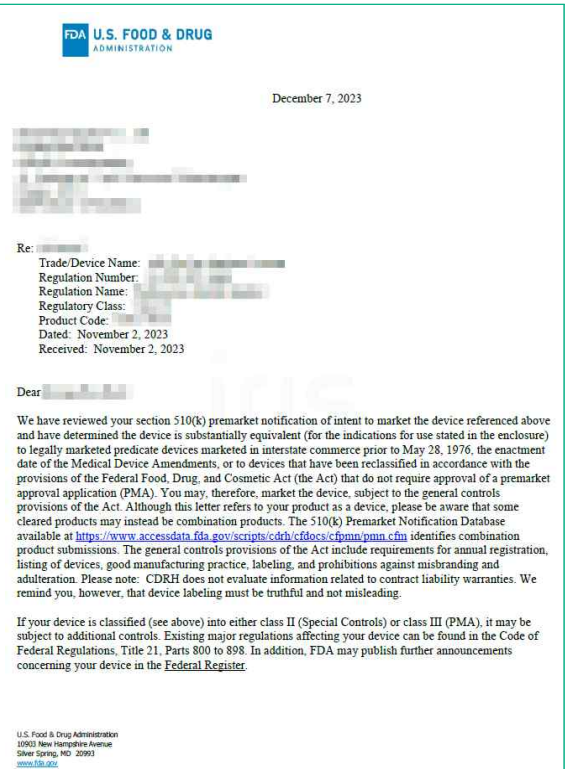

FDA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December 7, 2023

[redacted]

Re: [redacted]
Trade/Device Name: [redacted]
Regulation Number: [redacted]
Regulation Name: [redacted]
Regulatory Class: [redacted]
Product Code: [redacted]
Dated: November 2, 2023
Received: November 2, 2023

Dear [redacted]

We have reviewed your section 510(k) premarket notification of intent to market the device referenced above and have determined the device is substantially equivalent (for the indications for use stated in the enclosure) to legally marketed predicate devices marketed in interstate commerce prior to May 28, 1976, the enactment date of the Medical Device Amendments, or to devices that have been re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the Act) that do not require approval of a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 (PMA). You may, therefore, market the device, subject to the general controls provisions of the Act. Although this letter refers to your product as a device, please be aware that some cleared products may instead be combination products. The 510(k) Premarket Notification Database available at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pmn/pmn.cfm identifies combination product submissions. The general controls provisions of the Act include requirements for annual registration, listing of device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labeling, and prohibitions against misbranding and adulteration. Please note: CDRH does not evaluate information related to contract liability warranties. We remind you, however, that device labeling must be truthful and not misleading.

If your device is classified (see above) into either class II (Special Controls) or class III (PMA), it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controls. Existing major regulations affecting your device can be found in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s 800 to 898. In addition, FDA may publish further announcements concerning your device in the Federal Register.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10903 New Hampshire Avenue
Silver Spring, MD 20993
www.fda.gov

FDA Certification Letter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최초 신고/인증/허가 취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 신고/인증/허가 취득연도가 성과조사 대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단, 최초 취득 이후 품목 추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도의 성과로 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최초 취득한 신고/인증/허가는 성과로 불인정
- (성과 미해당) 품목에 대한 신고/인증/허가가 아닌 업에 대한 신고/인증/허가는 성과로 불인정함
  - (예)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 유통업 허가 등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거나 필수 정보(품목명, 신고/인증/허가번호, 일자, 기관명 등)를 IRIS 시스템 입력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품목명, 신고/인증/허가번호, 일자, 기관명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신고/인증/허가 취득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신고/인증/허가 취득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품목신고/인증/허가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허가내용	O	신고/인증/허가의 세부 내용을 입력
품목명	O	신고/인증/허가를 취득한 대상 제품명을 입력
구분	O	'신고', '인증', '허가' 중 선택
허가번호	O	신고/인증/허가 번호를 입력
허가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신고/인증/허가 취득일자를 선택
기관	O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타' 중 선택
품목 허가 발급 기관명		기관을 '기타'로 선택한 경우, 기관명을 직접 입력
국가	O	신고/인증/허가를 취득한 국가를 선택
국내외 구분		국내외 구분을 선택
공개/비공개	O	신고/인증/허가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2절 임상시험

임상시험 실시 성과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체 대상 임상시험 실시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성과 –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의약품 대상 임상시험 허가 신청 – (IDE,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의료기기 대상 임상시험 허가 신청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1.1. 임상시험 성과 개요

(1) 세부 성과 구분

▌IND 성과

- 의약품의 전임상 시험을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독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신청이 진행되며, 임상시험 허가 신청(IND :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을 진행함

▌IDE 성과

-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FDA에 시판 전 허가신청서(PMA :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나 시판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 의료기기 적용면제 승인 신청(IDE :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을 진행함

▌IRB 성과

-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이 필수이며, 인간 피험자가 참여하는 생물의학 연구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임

▌IRB 면제성과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따라야 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IRB 심의가 면제되지 않으나, 연구의 위험이 미미한 경우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연구 범주별로 IRB 심의를 면제함

(2) 임상시험 실시 절차

▌의약품 개발 진행 프로세스

-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최초 후보물질이 발견되면 동물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실적 연구를 수행함
- 이후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여러 단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임상연구(임상시험)라고 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 허가 및 상업화 과정을 거치게 됨



임상연구 진행 프로세스

구분	내용
연구자 임상시험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없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되어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임
제1상 임상시험	제1상 시험은 의약품 후보 물질의 전임상 동물실험에 의해 얻은 독성, 흡수, 대사, 배설 및 약리작용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된(통상 20~80명, 때로 20명 이하) 인원의 건강인에게 신약을 투여하고 그 약물의 체내동태(pharmacokinetics), 인체에서의 약리작용, 부작용 및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내약량)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임
제2상 임상시험	제2상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효과의 확인, 적정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임 통상 면밀히 평가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한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행해지며, 대상 환자 수는 100~200명 내외이나, 향균제와 같이 다양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환자 수를 대상으로 진행됨
제3상 임상시험	제3상은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립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 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용량, 효과,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시험임 대상 환자 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1000의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가장 바람직함
제4상 임상시험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임 신약의 부작용 빈도에 대해 추가정보를 얻기 위한 시판 후 조사(post-marketing surveillance), 특수 약리작용 검색연구, 약물사용이 이환률 또는 사망률 등에 미치는 효과 검토를 위한 대규모 추적연구,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검토되지 못한 특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 새로운 적응증 탐색을 위한 시판 후 임상연구 등이 포함됨

임상시험계획 승인 프로세스

-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심사부, 바이오 생약심사부)와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승인을 신청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는 임상시험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제출자료가 적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에서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하여 의뢰자에게 승인서를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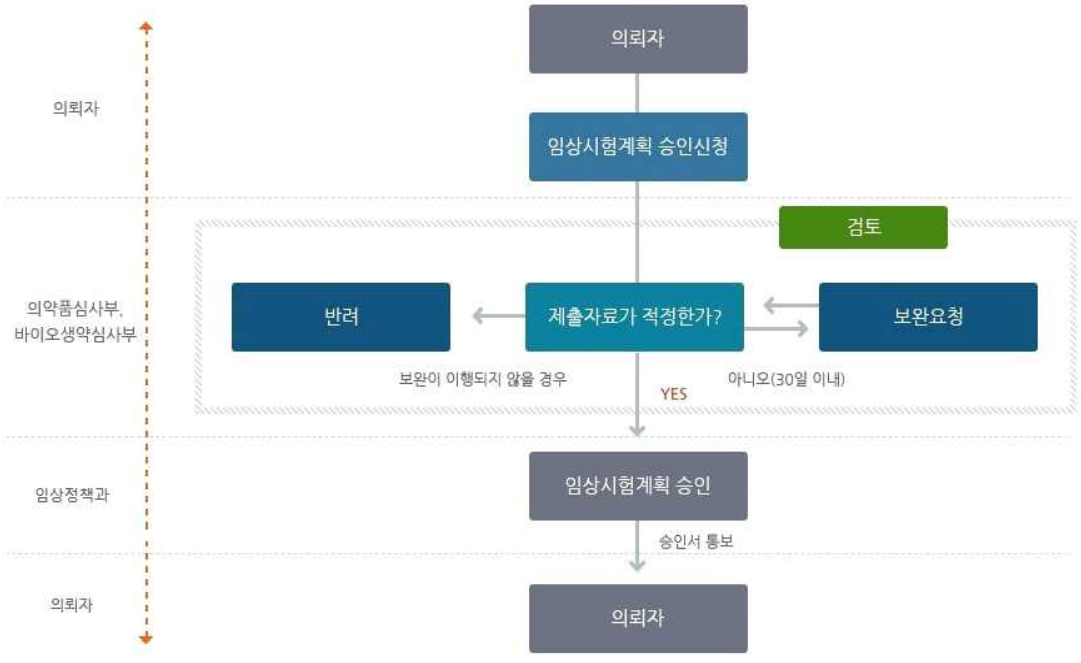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1)]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중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도

1.2. 성과 검증사항 (IND 및 IDE)

▌연구제목, 임상시험 구분, 신청승인 구분, 국가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임상시험 기본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연구종류, 연구목적, 임상시험단계, 연구모형, 임상시험계획 승인번호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임상시험 세부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임상시험 승인일자, 성과발생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임상시험 승인일자와 증빙자료 상 임상시험 승인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임상시험 연구제목, 임상시험단계, 승인번호, 승인일자 등
  - 최초 승인 이후 임상단계가 변경된 경우, 임상단계 변경 내역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 종류

- (IND) 임상시험계획승인서, FDA IND 승인서
- (IDE)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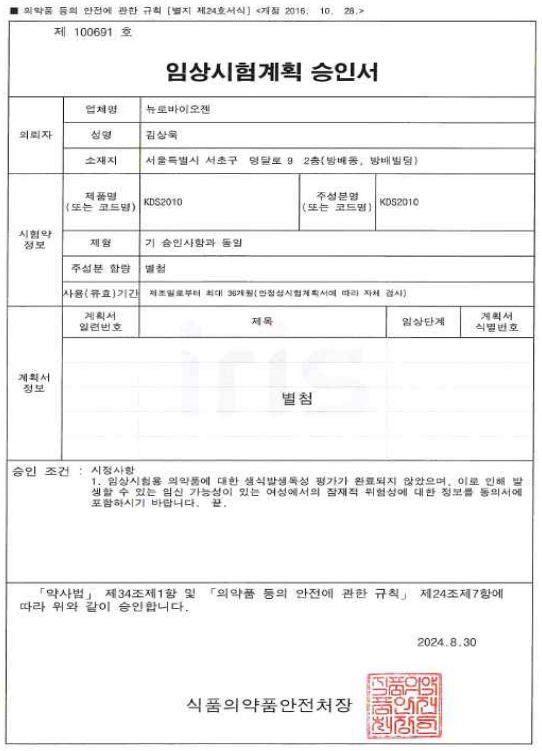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10. 28.>

제 100691 호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의뢰자	업체명	뉴로바이오젠		
	성명	김상욱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 2층(방배동, 방배빌딩)		
시험약 정보	제품명 (또는 코드명)	KDS2010	주성분명 (또는 코드명)	KDS2010
	제형	기 승인시험과 동일		
	주성분 함량	별첨		
	사용(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최대 36개월(안정성시험계획서에 따라 자체 검사)		

계획서 정보	계획서 일련번호	제목	임상단계	계획서 식별번호
		별첨		

승인 조건 : 시정사항
1.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생식발생독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동의서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끝.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24.8.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계획서 정보	계획서 일련번호	제목	임상단계	계획서 식별번호
	202200215	[redacted]	1상	[redacted]
	202400657	[redacted]	2a상	[redacted]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內 임상단계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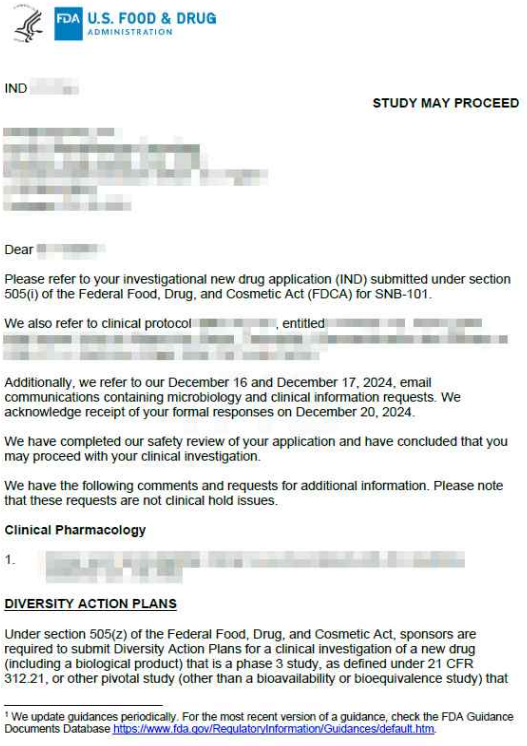

FDA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IND

STUDY MAY PROCEED

Dear

Please refer to your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submitted under section 505(i)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 for SNB-101.

We also refer to clinical protocol , entitled

Additionally, we refer to our December 16 and December 17, 2024, email communications containing microbiology and clinical information requests. We acknowledge receipt of your formal responses on December 20, 2024.

We have completed our safety review of your application and have concluded that you may proceed with your clinical investigation.

We have the following comments and reques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note that these requests are not clinical hold issues.

Clinical Pharmacology

1.

DIVERSITY ACTION PLANS

Under section 505(z)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ponsors are required to submit Diversity Action Plans for a clinical investigation of a new drug (including a biological product) that is a phase 3 study, as defined under 21 CFR 312.21, or other pivotal study (other than a bioavailability or bioequivalence study) that

[1] We update guidances periodically. For the most recent version of a guidance, check the FDA Guidance Documents Database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default.htm.

FDA IND 승인서



열람용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제조(수입) 업소	명칭(상호)		업허가번호	
	소재지			
제조원 (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	명칭(상호)		제조국	
	소재지			
임 상 시 험 개 요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분류번호 (등급)	
	임상시험계획 승인번호			
	임상시험의 제목			

「의료기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합니다.

※ 붙임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1부.

2024년 0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최초 임상시험 승인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상시험 승인연도가 성과조사 대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단, 최초 승인 이후 임상단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승인연도의 성과로 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최초 승인된 임상시험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거나 필수 정보(임상시험 연구제목, 임상시험단계, 승인번호, 승인일자 등)을 IRIS 시스템 입력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임상시험 연구제목, 임상시험단계, 승인번호, 승인일자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2차 검증(자체 증빙 보완)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자체 증빙 보완 및 2차 검증을 실시함

-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심책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https://emedi.mfds.go.kr)

(3)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임상시험 승인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임상시험 승인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4)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임상시험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임상시험구분		O	'IRB', 'IRB면제대상', '임상시험계획(식약처 등)' 중 선택
신청승인구분		O	'신청', '승인', '결과보고' 중 선택
CRIS등록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번호를 입력
연구제목		O	임상시험 연구제목을 입력
임상시험 내용 요약			임상시험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연구내용		O	임상시험 연구 내용을 서술
관련논문			임상시험 연구 내용 관련 논문을 입력
국가		O	임상시험을 실시한 국가 선택
IRB	승인번호		IRB 승인번호를 입력
	승인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IRB 승인일자를 선택
	위원회명		IRB 승인 담당 위원회명을 입력
	승인상태	O	'제출전', '제출후 심사중', '제출후 승인', '제출후 면제', '제출후 거부', '제출불필요' 중 선택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IRB 승인일자를 선택
IRB 면제 대상	연구종류	O	'중재연구', '관찰연구' 중 선택
	시험기관명		IRB 면제 시험을 시행한 기관명을 입력
	시험개시일자	O	IRB 면제 시험을 개시한 날짜를 선택
	시험종료일자	O	IRB 면제 시험을 종료한 날짜를 선택
	시험제품(시험물질)명		IRB 면제 시험에 사용된 제품(물질)의 이름을 입력
	면제 근거 및 사유		IRB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 및 사유를 서술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IRB 면제 시험 개시일자를 선택
임상시험계획(IND/IDE)	연구종류	O	'중재연구', '관찰연구' 중 선택
	연구목적	O	임상시험 연구 목적을 선택
	임상시험단계	O	임상시험 단계를 선택
	연구모형	O	임상시험 관찰 연구모형을 선택
	시험기관명		임상시험 신청 기관명을 입력
	임상시험계획 승인번호		임상시험계획 승인번호를 입력
	임상시험 승인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임상시험 승인일자를 선택
	임상시험계획 제품명		입상시험계획 대상 제품명을 입력
	임상시험계획 성분명		임상시험계획 대상 성분명을 입력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임상시험 승인일자를 선택
공개/비공개		O	임상시험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3절 진료지침개발

진료지침개발 성과
• 진료지침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추적 등 의사 및 환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입증된 최신 근거들을 토대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지칭 – 진료지침개발 성과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된 진료지침 개발 또는 기존 진료지침 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진료지침이 서적으로 출간된 경우 또는 학회를 통해 검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성과로 인정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진료지침명, 검증학회명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진료지침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진료지침 개발연도, 성과발생일자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진료지침 개발일자와 증빙자료 상 진료지침 개발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진료지침명, 검증학회명, 진료지침 개발일자 등

▌증빙자료 종류

- ① 진료지침서, ② 학회 인증서(인준서, 승인서 등) 모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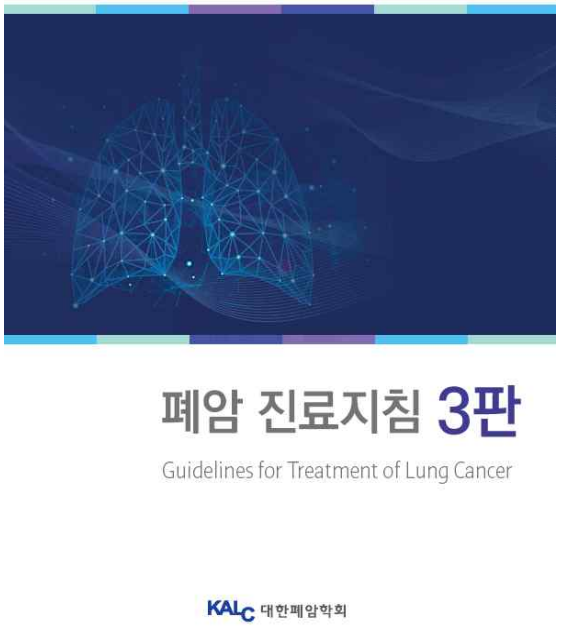

진료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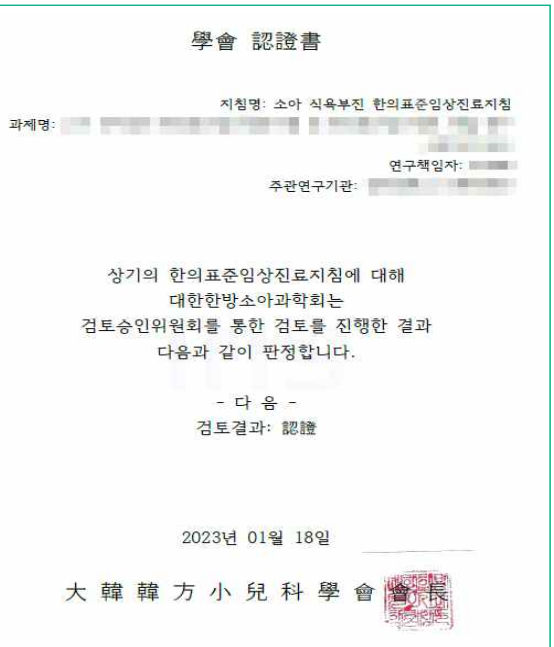

학회 인증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진료지침 출판연도(or 학회 검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진료지침 출판연도(or 학회 검증연도)가 성과조사 대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출판된 진료지침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진료지침명, 검증학회명, 진료지침 개발일자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진료지침 출판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진료지침 출판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진료지침개발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진료지침개발연도 (학회 검증연도 또는 지침서 등 출판연도)	O	진료지침 개발연도를 선택
진료지침명	O	진료지침명을 입력
검증학회명	O	학회검증여부가 '검증'인 경우, 검증학회명을 입력하며, '미검증'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
학회검증여부	O	'검증', '미검증' 중 선택
내용		진료지침의 주요 내용을 입력
성과발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진료지침 개발일자를 선택
공개/비공개	O	진료지침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4절 신의료기술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
•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 예방·진단·치료·재활 등 기술 대비 동등 이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증받은 의료기술로서, 새롭게 개발·증명된 기술 및 기존 기술의 개선 기술 모두 포함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의료기술개발명, 의료기술개발구분, 의료기술인증구분, 인증번호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신의료기술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의료연도, 신의료기술인증일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신의료기술 인증일자와 증빙자료 상 신의료기술 고시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신의료기술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등

▌증빙자료 종류

- ① 신의료기술 고시, ②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or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통보 공문) 모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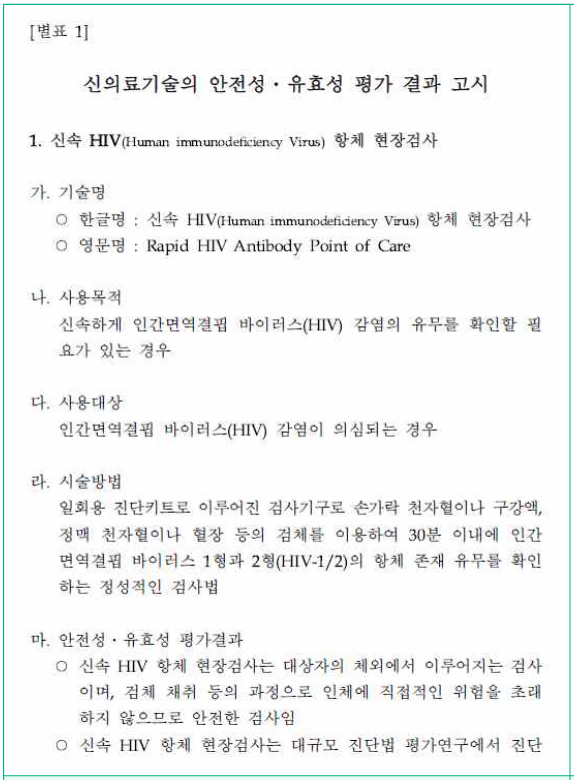

[별표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1. 신속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항체 현장검사

가. 기술명
○ 한글명 : 신속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항체 현장검사
○ 영문명 : Rapid HIV Antibody Point of Care

나. 사용목적
신속하게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사용대상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라. 시술방법
일회용 진단키트로 이루어진 검사기구로 손가락 천자혈이나 구강액, 정맥 천자혈이나 혈장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1형과 2형(HIV-1/2)의 항체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정성적인 검사법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는 대상자의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며, 검체 채취 등의 과정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안전한 검사임
○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는 대규모 진단법 평가연구에서 진단

신의료기술 고시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성과 불인정 기준

- (성과연도 오류) 성과 발생연도는 신의료기술 고시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의료기술 고시연도가 성과조사 대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 (예) 2025년 성과 조사 시, 2025년 이외의 연도(2024년, 2026년 등)에 고시된 신의료기술은 성과로 불인정
- (증빙 미비) 주요 검증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과로 불인정함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신의료기술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신의료기술 고시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신의료기술 고시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신의료기술개발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의료기술 개발명	O	신의료기술명을 입력
의료기술 개발구분	O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중 선택
의료연도	O	신의료기술 개발연도를 입력
시술방법 및 내용	O	신의료기술의 시술방법 및 내용을 입력
의료기술인증구분	O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술인증'을 선택하고, 이 외의 경우 인증명을 직접 입력
관련 논문명		신의료기술 관련 논문명을 입력
관련 특허명		신의료기술 관련 특허명을 입력
인증번호	O	신의료기술 인증기관이 부여한 인증번호(고시번호)를 입력
신의료기술인증일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신의료기술 고시일자를 선택
공개/비공개	O	신의료기술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3장. 기타성과

제1절 생명자원(생물자원/생명정보)

생명자원 성과

-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그 밖의 생물자원
  - 전담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https://kctc.kribb.re.kr)
- (생명정보) 염기서열·변이·변형 등 유전체 데이터, 유전자/단백질 발현, 유전자/화합물 스크리닝, 분자 결합정보 및 네트워크, 세포/조직 이미징 등 다양한 생명정보
  - 전담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https://kbds.re.kr)

※ 생명자원 성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각 성과 전담기관의 개별 시스템에 등록 및 기탁 가능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1.1. 생물자원

▌기탁번호, 기탁필증부여일자, 기탁자명, 생물자원명, 생물자원번호 등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생물자원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1.2. 생명정보

▌등록필증번호, 등록필증부여일자, 등록자명, 생명정보명, 생명정보 분류 구분 등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생명정보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1.1. 생물자원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기탁번호, 기탁필증부여일자, 기탁자명, 생물자원명, 생물자원번호 등

▌증빙자료 종류

- 기탁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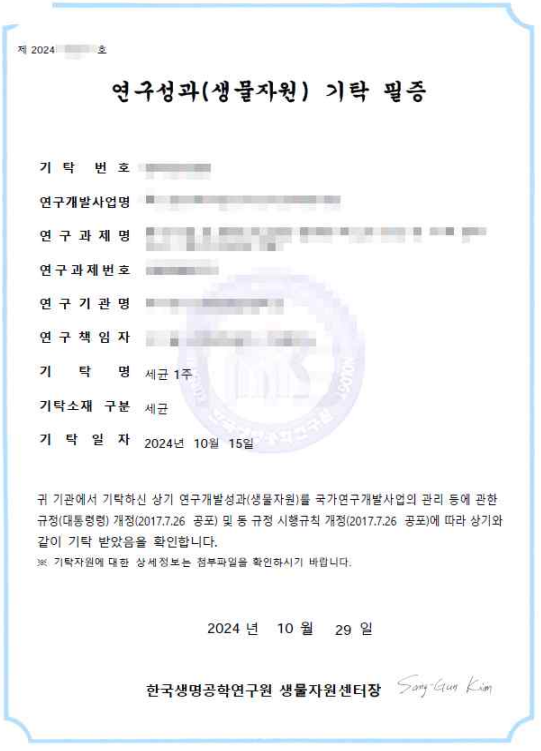

제 2024 호

연구성과(생물자원) 기탁 필증

기 탁 번 호
연구개발사업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과제번호
연 구 기 관 명
연 구 책 임 자
기 탁 명 세균 1주
기탁소재 구분 세균
기 탁 일 자 2024년 10월 15일

귀 기관에서 기탁하신 상기 연구개발성과(생물자원)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7.7.26 공포)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개정(2017.7.26 공포)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기탁자원에 대한 상세정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년 10 월 29 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장 Sang-Gu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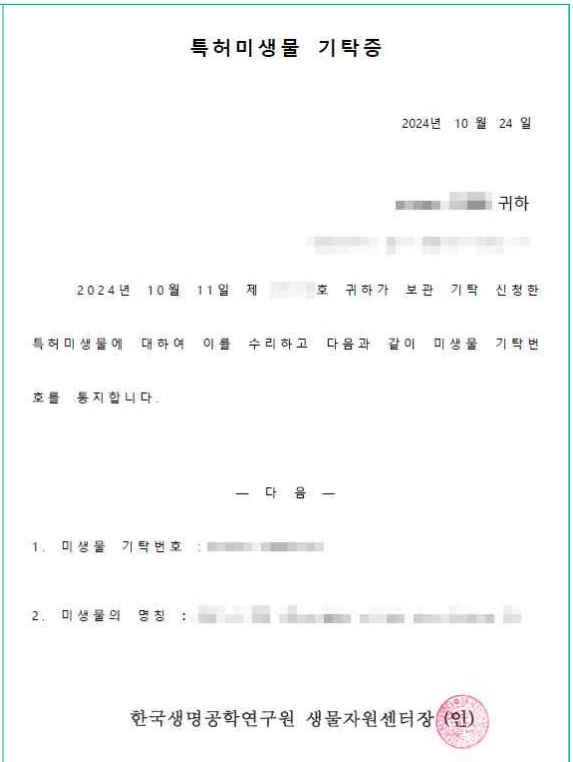

특허미생물 기탁증

2024년 10 월 24 일

귀하

2024년 10월 11일 제 호 귀하가 보관 기탁 신청한 특허미생물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미생물 기탁번호를 통지합니다.

— 다 음 —

1. 미생물 기탁번호 :
2. 미생물의 명칭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장 (인)

생물자원 인정 증빙 예시

1.2. 생명정보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등록필증번호, 등록필증부여일자, 등록자명, 생명정보명, 생명정보 분류 구분 등

▌증빙자료 종류

- 등록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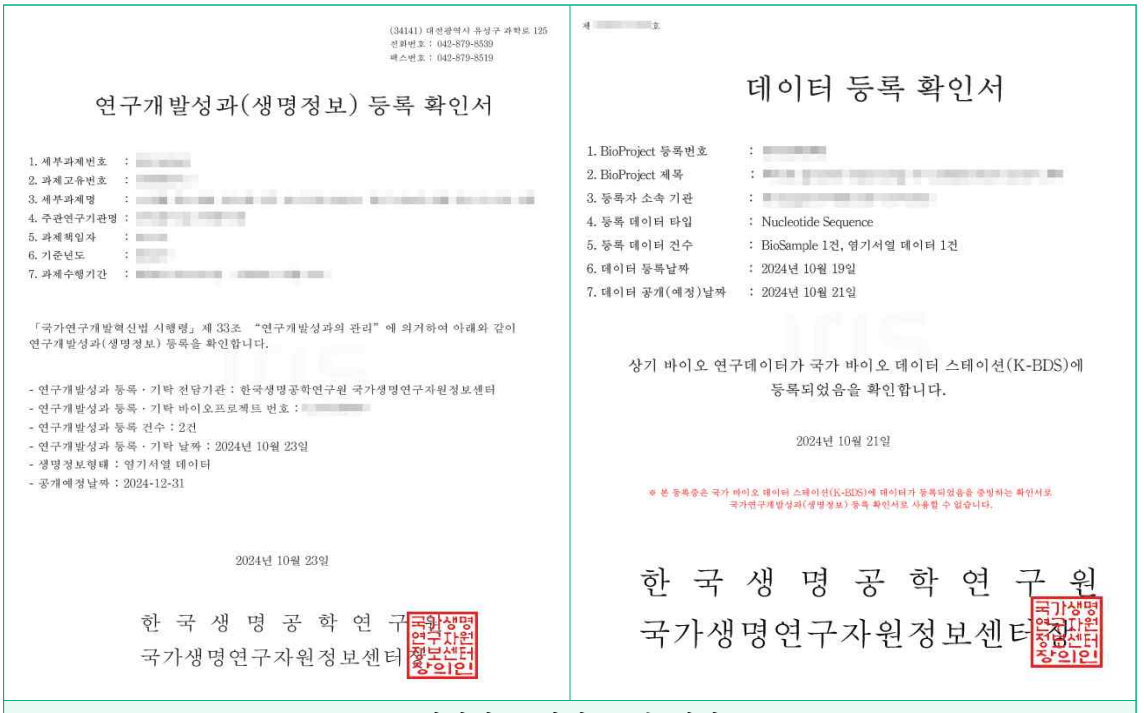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전화번호 : 042-879-8539
팩스번호 : 042-879-8519

연구개발성과(생명정보) 등록 확인서

1. 세부과제번호 :
2. 과제고유번호 :
3. 세부과제명 :
4. 주관연구기관명 :
5. 과제책임자 :
6. 기준년도 :
7. 과제수행기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생명정보) 등록을 확인합니다.

- 연구개발성과 등록 · 기탁 전담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 연구개발성과 등록 · 기탁 바이오프로젝트 번호 :
- 연구개발성과 등록 건수 : 2건
- 연구개발성과 등록 · 기탁 날짜 : 2024년 10월 23일
- 생명정보형태 : 염기서열 데이터
- 공개예정날짜 : 2024-12-31

2024년 10월 23일

한 국 생 명 공 학 연 구 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

제 호

데이터 등록 확인서

1. BioProject 등록번호 :
2. BioProject 제목 :
3. 등록자 소속 기관 :
4. 등록 데이터 타입 : Nucleotide Sequence
5. 등록 데이터 건수 : BioSample 1건, 염기서열 데이터 1건
6. 데이터 등록날짜 : 2024년 10월 19일
7. 데이터 공개(예정)날짜 : 2024년 10월 21일

상기 바이오 연구데이터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 본 등록증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에 데이터가 등록되었음을 증빙하는 확인서로 국가연구개발성과(생명정보) 등록 확인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국 생 명 공 학 연 구 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

생명정보 인정 증빙 예시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생명자원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일자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생명자원 등록·기탁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생명자원 등록·기탁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생명자원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생물자원	입력방법	O	'직접입력', '검색입력', '추가등록' 중 선택
	기탁번호	O	– 직접입력인 경우 BioProduct 시스템에 기탁된 성과의 기탁번호를 정확히 입력 – 검색입력인 경우 BioProduct 검색 버튼을 통해 기탁번호가 자동 등록 – 추가등록인 경우 기탁번호는 '–'로 입력(추후 BioProduct 시스템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부여)
	기탁필증부여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기탁필증 부여일자를 선택
	생물자원분류	O	생물자원의 분류 구분을 선택
	기탁자명	O	생물자원의 기탁자명을 입력
	생물자원 명	O	생물자원명을 입력
	생물자원번호	O	생물자원번호를 입력
	기여율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키워드	O	생물자원 주요 내용을 키워드로 표시 * 키워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
생명정보	입력방법	O	'직접입력', '검색입력' 중 선택
	등록필증번호	O	생명정보의 등록필증번호를 입력
	등록자명	O	생명정보의 등록자명을 입력
	등록필증부여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등록필증 부여일자를 선택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생명정보명	O	생명정보명을 입력
	생명정보 분류 구분	O	생명정보 분류 구분을 선택 * 구 생명 정보 분류 또는 신규 생명 정보 분류 구분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신규 생명정보분류 구분	O	
	생명정보 형태	O	생명정보 형태를 입력
	키워드	O	생명정보 주요 내용을 키워드로 표시 * 키워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
	외부등록번호		생명정보의 외부등록번호를 입력
	총건수	O	등록완료된 생명정보 성과의 총건수를 기입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공개/비공개		O	생명자원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2절 화합물

화합물 성과

• 화합물은 유기합성 화합물 및 단일성분 천연물을 의미하며, 최종 화합물 뿐만 아니라 합성 중간체도 포함
- 전담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https://chembank.org)
- 기탁 거절 화합물 :
  * 상온에서 불안정한 화합물
  * 물 또는 빛에 불안정한 화합물
  * DMSO에 녹지 않거나 DMSO와 반응하는 화합물
  * 무기물, 고분자 물질, 유기금속 화합물, Oxygen-Silicon 화합물
  * 분자량 150 이하 또는 1,000 이상 화합물

※ 화합물 성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성과 전담기관의 개별 시스템에 등록 및 기탁 가능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기탁번호, 기탁필증발급일자, 기탁자명, 화합물명 등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화합물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기탁번호, 기탁필증발급일자, 기탁자명, 화합물명 등

▌증빙자료 종류

- 기탁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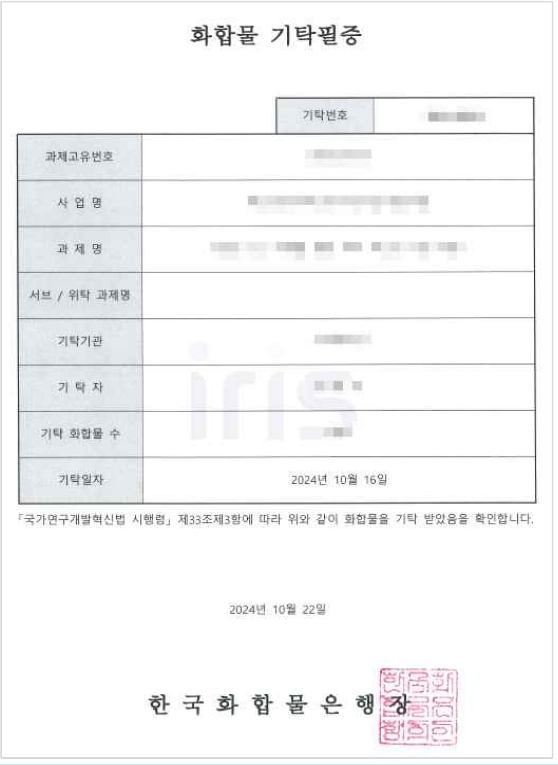

화합물 기탁필증

화합물 기탁필증

기탁번호	
과제고유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서브 / 위탁 과제명	
기탁기관	
기 탁 자	
기탁 화합물 수	
기탁일자	2024년 10월 16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합물을 기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한 국 화 합 물 은 행 장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기탁번호, 기탁필증발급일자, 기탁자명, 화합물명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화합물 기탁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화합물 기탁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화합물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입력방법	O	'직접입력', '검색입력', '추가등록' 중 선택
기탁번호	O	– 직접입력인 경우 KCB(한국화합물은행) 시스템에 기탁된 성과의 기탁번호를 정확히 입력 – 검색입력인 경우 화합물 검색 버튼을 통해 선택된 성과의 기탁번호가 자동 등록 – 추가등록인 경우 기탁번호는'-'로 입력(추후 KCB 시스템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부여)
기탁필증발급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기탁필증 발급일자를 선택
기탁자명	O	화합물의 기탁자명을 입력
화합물명	O	화합물명을 입력
분자식	O	화합물의 분자식을 입력
분자량	O	화합물의 분자량을 입력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키워드		화합물 주요 내용을 한글 또는 영문 키워드로 표시 * 키워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
작용점 내용		화합물의 작용점에 대해 서술
공개/비공개	O	화합물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3절 저작권(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성과

-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
  - 전담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ros.or.kr)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https://www.swbank.kr)

※ 소프트웨어 성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각 성과 전담기관의 개별 시스템에 등록 및 기탁 가능

※ 주의사항 : 과제수행 및 성과등록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금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확인사항

▌소프트웨어명, 등록번호, 등록자명, 등록일자 등

- 연구자가 IRIS 시스템에 등록한 소프트웨어 정보와 증빙자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성과 증빙자료

▌증빙자료 내 필수 기재항목

- 소프트웨어명, 등록번호, 등록자명, 등록일자 등

▌증빙자료 종류

- 등록증



제 [redacted] 호

저작권 등록증

1. 저작물의 제호(명칭)	[redacted]
2. 저작물의 종류	[redacted]
3. 저작자 성명(법인명)	[redacted]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redacted]
6. 창작연월일	2023년03월01일
6. 공표연월일	-
7. 등록연월일	2024년01월03일
8. 등록사항	[redacted] 창작 : 2023.03.01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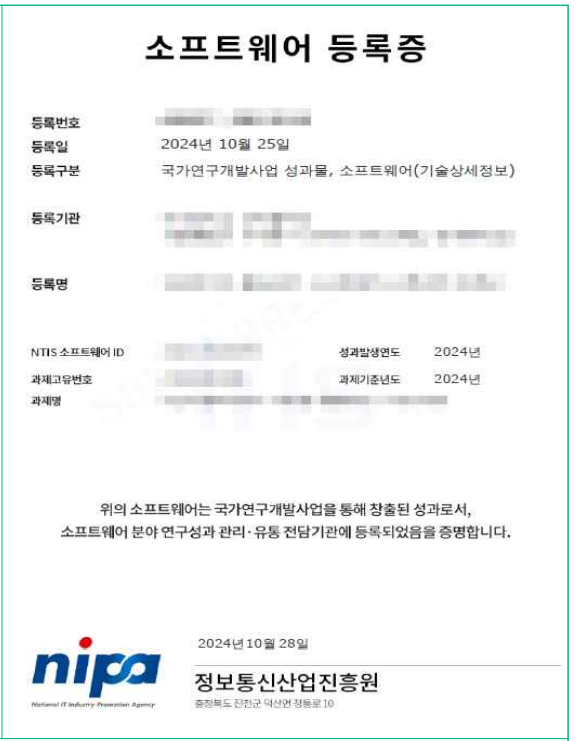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등록증

등록번호	[redacted]
등록일	2024년 10월 25일
등록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등록기관	[redacted]
등록명	[redacted]
NTIS 소프트웨어 ID	[redacted] 성과발생연도 2024년
과제고유번호	[redacted] 과제기준년도 2024년
과제명	[redacted]

위의 소프트웨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로서,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nipa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저작권(소프트웨어) 인정 증빙 예시

3. 검증절차

(1) 1차 검증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검증항목에 대한 1차 검증을 실시함

- 소프트웨어명, 등록번호, 등록자명, 등록일자 등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함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부 오입력 또는 입력 누락된 항목은 별도 안내 없이 증빙자료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검증을 진행함

(2) 보완자료 요청

▌검증 실패로 반려 처리된 성과 중 보완이 가능한 성과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함

- 보완 가능 성과 예시
  -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미비로 주요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 필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보완 불가 성과 예시
  - 소프트웨어 등록연도와 IRIS 성과 발생연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입력 성과 삭제 후, 소프트웨어 등록연도와 일치하는 IRIS 성과 발생연도 탭에 성과 재입력
  - 동일 과제에 동일 성과가 중복 입력된 경우 : 성과 1건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입력 건 모두 삭제

(3) 최종 검증

▌추가 제출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함

▌입력항목 및 내용

▌저작권(소프트웨어) 성과의 입력항목 및 내용▐

항목	필수여부	입력항목 설명
입력방법	O	'직접입력', '검색입력' 중 선택
소프트웨어 등록번호	O	소프트웨어의 등록번호를 입력
소프트웨어 등록자명	O	소프트웨어의 등록자명(기관명)을 입력
소프트웨어 등록일자	O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소프트웨어의 등록일자를 입력
적용분야		소프트웨어의 적용분야를 기재
소프트웨어명	O	소프트웨어명을 입력
저작자	O	소프트웨어의 저작자명(기관명)을 입력
기여율	O	기여율을 0 ~ 100% 사이의 숫자로 입력
소프트웨어 종류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선택
개발기간		소프트웨어의 개발기간을 입력
창작일자	O	소프트웨어의 창작일자를 입력
소요공수	O	소프트웨어의 소요 공수를 입력
창작참여자	O	소프트웨어의 창작에 참여한 인력명을 입력
활용형태	O	소프트웨어의 활용 형태를 선택
기술개요		소프트웨어의 관련 기술을 서술
활용도(%)		소프트웨어의 활용도를 입력
활용만족도(점)		소프트웨어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만족도 점수를 입력
소프트웨어 특징		소프트웨어의 세부 정보를 서술
개발목표		
주요기능		
적용표준		
복제물형태		'소스파일', '오브젝트파일', '실행파일' 중 선택
판매구분코드		'상업용', '비상업용' 중 선택
인물정보		주 참여자 및 공동 참여자 등의 정보를 입력
인증정보	O	사용OS 등 소프트웨어 인증 관련 정보를 입력
공개/비공개	O	소프트웨어 성과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기간, 비공개 사유 입력
첨부파일	O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필수여부에 'O' 표시된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부록

1. 주요국 특허번호 체계

▌주요국 특허번호 체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내 특허

- 출원번호 : [유형(2자리)+'-'+출원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형태로 숫자와 '-'문자를 포함하여 공백없이 15자리로 입력
- 등록번호 : [유형(2자리)+'-'+일련번호(7자리)+'-'+'0000'] 형태로 숫자와 '-'문자를 포함하여 공백없이 15자리로 입력

※ 유형 식별코드 : 10(특허), 20(실용신안), 30(디자인), 40~45(상표)

▌국내 특허 출원·등록번호 입력 형식▐

출원번호	번호형식	1	0	-	2	0	2	5	-	1	2	3	4	5	6	7
	의미	유형		출원연도						일련번호						
등록번호	번호형식	1	0	-	1	2	3	4	5	6	7	-	0	0	0	0
	의미	유형		일련번호												

② PCT 특허

- 출원번호 : 「'PCT'+'/'+국가코드(영문2자리)+출원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형태로 공백없이 17자리로 입력

※ 국가코드는 출원국에 따라 한국(KR), 미국(US), 일본(JP), 국제사무국(IB) 등으로 달라짐

▌PCT 특허 출원번호 입력 형식▐

번호형식	P	C	T	/	K	R	2	0	2	5	/	1	2	3	4	5	6
의미	PCT출원		/	국가코드		출원연도					/	일련번호					

③ 미국 특허

- 출원번호 : 「시리즈코드(2자리)+'/'+일련번호(6자리)」 형태로 숫자와 '/'문자를 포함하여 공백 없이 9자리로 입력

  ※ 시리즈코드 : 특허('18년 6월 이후 출원은 '16'), 가출원('15년 이후 출원은 '62'), 디자인('92년 이후 출원은 '29')

- 등록번호 : 「일련번호(7~8자리)」 입력

  ※ 재발행특허(RE*****), 식물특허(PP*****)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성과로 인정되며, 앞 두자리가 알파벳임에 유의

미국 특허 출원·등록번호 입력 형식

출원번호	변호형식	1	2	/	1	2	3	4	5	6
	의미	시리즈코드		/	일련번호					
등록번호	번호형식	1	2	3	4	5	6	7		
	의미	일련번호(7~8자리)								

④ 유럽 특허

- 출원번호 : 「출원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체크숫자(1자리)」 형태로 공백 없이 10자리로 입력
- 등록번호 : 「일련번호(7자리)」 입력

유럽 특허 출원·등록번호 입력 형식

출원번호	변호형식	2	5	1	2	3	4	5	6	.	*
	의미	출원연도		일련번호						.	체크숫자
등록번호	번호형식	1	2	3	4	5	6	7			
	의미	일련번호									

⑤ 일본 특허

- 출원번호 : 「출원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형태로 숫자와 '-'문자를 포함하여 공백 없이 11자리로 입력
- 등록번호 : 「일련번호(7자리)」 입력

일본 특허 출원·등록번호 입력 형식

출원번호	변호형식	2	0	2	5	-	1	2	3	4	5	6
	의미	출원연도				-	일련번호					
등록번호	번호형식	1	2	3	4	5	6	7				
	의미	일련번호										

⑥ 중국 특허

- 출원번호 : 「출원연도(4자리)+유형(1자리)+일련번호(7자리)+'.'+체크숫자(1자리)」 형태로 공백 없이 14자리로 입력
  ※ 유형 식별코드 : 1(특허), 2(실용신안), 3(디자인), 8(PCT를 통한 특허 출원), 9(PCT를 통한 실용신안 출원)
  ※ 체크숫자에는 숫자 0~9 또는 알파벳 X가 올 수 있음
- 등록번호 : 「'ZL'+출원번호(14자리)」 형태로 공백 없이 16자리로 입력

중국 특허 출원·등록번호 입력 형식

출원번호	변호형식	2	0	2	5	1	1	2	3	4	5	6	7	.	*
	의미	출원연도				유형	일련번호							.	체크숫자
등록번호	번호형식	Z	L	2	0	2	5	1	1	2	3	4	5	6	7	.	*
	의미	전리	출원연도				유형	일련번호							.	체크숫자	

2. 개인명의 특허 성과 사후 조치

특허성과 명의변경 방법

- 국내 특허의 명의변경 방법

  – (신청유형) 특허의 권리상태(출원, 등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변경 신청

권리상태 구분	명령사항
출원 (출원~설정등록 이전)	출원인 변경 신청('출원인' 변경)
등록 (설정등록 이후~)	권리이전 등록 신청('특허권자' 변경)

  – (세부사항)

구분	출원인 변경 신청	권리이전 등록 신청
접수기관	특허청	좌동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좌동
신청서	권리관계변경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20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5호 서식)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특허사무소)	좌동
수수료	(전자문서) 매건 11,000원 / (서면) 매건 13,000원	등록번호당 53,000원
구비서류	• 권리관계변경신고서 • 출원인 변경의 원인 증명서류(양도증 등)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증에 양도인의 특허고객번호 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 활용 시, 위임장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권리이전 등록의 원인 증명서류(양도증 등) • 신청인(등록의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인(등록의무자) 주민등록 등·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 활용 시, 위임장
문의처	특허청 상담센터 1544-8080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 해외 특허의 명의변경 방법

  –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관할하고, 국가별 처리절차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전문 대리인(특허 사무소 등)을 통한 변경 처리

  ※ 국가별 명의변경 평균 소요기간 : 한국·미국(1~2주), 일본·중국(2~3개월), PCT(3개월)

  ※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 해당 특허청 관납료 외 대리인 수수료 별도

기타 조치 방법

- 연구기관이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 성과의 명의자를 상대로 환원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인) 법인이 존속(등기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해산(등기말소)한 경우에는 최후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 성과의 명의자를 상대로 환원조치를 할 수 있음

- 수행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 성과를 연구기관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특허권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연구기관은 상속인에게 환원 조치를 할 수 있음(단, 형사적인 조치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불가능함)
  -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하게 됨(특허법 제124조)
  - 다만,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특허권의 이전등록청구를 할 수 있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의 포기

적용 대상

-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가 승인신청 대상임
- 출원하기 이전의 단계는 적용 대상이 아님
- 공동명의로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공유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 두절 등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함
  - 공동명의로 등록한 기관 간 별도의 협약을 통해 등록과 유지, 비용부담 등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관리 권한이 있는 대표기관이 포기 신청
  - 단, 공동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를 포기하더라도 공유자인 주관연구기관이 유지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님
- 전용·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의 신청 가능. 단 실시기간의 종료 및 추가 실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부터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가 실시되는 등 이미 활용된 점, 승인 신청 의무는 혁신법 상의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부과되는 의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음

재원 구분

- 포기 승인 신청 대상인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국내·외 등록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국내 민간이나 해외 등의 자금지원을 받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부 재원과 민간의 재원 등이 서로 혼재해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해당된다면 포기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 양식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예시)를 참고 및 활용 가능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의 신청양식 (예시)

1.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연구개발과제

발명의 명칭			
등록권자			발명자
등록 국가	등록일		등록번호
과제고유번호 (NTIS)	중앙부처명		관리기관명 (전문기관 등)
연구사업명 (기여율)	주관연구기관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연구기간	

※ 포기를 신청하려는 지식재산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등의 전자파일 형태로도 처리 가능

2.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체크 리스트)	해당 여부 (∨ 표시)	
1	• 기술성과 사업성 등이 낮아서 향후에도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2	• 포기하더라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3	• 법령과 연구과제협약서 등에 의해 포기의 제한이 없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4	• 제3자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5	• 기술 수명주기(Life Cycle)가 쇠퇴되었거나 낙후된 지식재산권 *ex) 특허의 등록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특허 건을 양도·포기가 가능한 특허로 분류(최초 등록시점 기준으로 3년 경과 이후에는 기술이전율이 현저히 급감함을 고려)	예	아니오
6	•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가능성을 검토 결과 양수의사자나 기관이 없는 등 양도가 불가한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7	• (해당 시에만 체크) 공동권리자 모두가 포기를 동의한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8	• (해당 시에만 체크) 공동권리자가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예	아니오

※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연구개발소유성과기관의 장이 상기 점검항목의 해당 여부(∨) 표시

상기 지식재산권의 포기와 관련된 점검항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 해당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 귀하
(사업 관리기관(전문기관)장 귀하)

– 양식은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방식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시 (예시)를 토대로 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로도 처리 가능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예시)에 따라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포기 승인 신청 시 출처를 명확히 기재[2]하여야 함

  –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 내부 특허발명자(연구자)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을 통한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또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여 해당 출처를 기재하여야 함

신청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하려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소멸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하고, 소멸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포기하려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3]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포기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창출된 경우에는 그 중 기여율이 가장 큰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기여율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서 맨 처음 우선 출처기재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

2) 출처기재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특허를 출원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정보 기록(사사표기, Acknowledgement)을 말함

3) 특허법 상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관한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유지됨. 이 6개월의 연차료 추가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연차료의 만료기간 다음날로 소급해서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소멸됨

4.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28.>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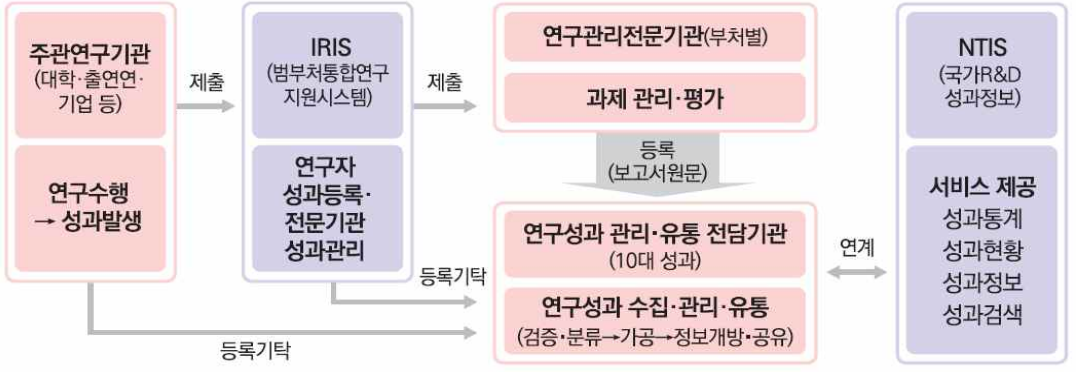

※ 과제관리·평가 등의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중복 등록·기탁할 필요 없음

▌주요 내용

- 주관연구기관(연구자 또는 성과관리부서)은 연구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해야 함
  - (등록대상 연구성과)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정보, 표준
  - (기탁대상 연구성과) 화합물, 생물자원, 신품종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paper.kisti.re.kr)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ripis.or.kr)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 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nrms.kisti.re.kr)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ttp://www.zeu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ntb.kr)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www.kbds.re.kr)	염기서열·변이·변형 등 유전체 데이터, 유전자/단백질 발현, 유전자/화합물 스크리닝, 분자 결합정보 및 네트워크, 세포/조직 이미징 등 다양한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swbank.kr)	기술, 개발, 품질 및 제품정보 등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표준	한국표준협회 (www.rndstandard.or.kr)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rnd.tta.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	(측정표준) 교정 및 측정능력(CMC), 인증표준물질(CRM) (참조표준) 국가참조표준체계를 통해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참조표준
기탁	생명자원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s://biorp.kribb.re.kr)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https://chembank.org)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http://genebank.rda.go.kr)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가능

일러두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연구수행기관

유한회사 일신회계법인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LNSTITUTE

2025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